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1호



2023. 7.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1호

2023. 7.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기후변화와 조세동향

I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대응과 조세 / 3

1. 기후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3
가. 배경	3
나. 최근의 상황	4
다. 국제적 대응	7
라. 우리나라의 대응	11
2.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조세정책 논의	14
가. OECD와 IMF의 조세정책과 기후변화	14
나. UN의 개도국에 대한 탄소세 권고	17
다. EU의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reen Taxation	20

II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조세정책 / 23

1. 국가별 비교	23
가. 과세	23
나. 세제혜택	25
2. 주요국의 현황	29
가. 미국	29
나. 영국	32
다. 독일	36
라. 프랑스	38
마. 일본	41
바. 캐나다	45
사. 이탈리아	48
아. 호주	51
자. 스웨덴	55
차. 중국	59
카. 인도	6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67

1. 미국	67
가.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67
나.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68
다. 2024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69
라.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71
마. 국내 콘텐츠 보너스 지침 발표	73
바. 정부부채 한도 합의에 따른 국세청 예산 일부 감축	73
사. 저소득커뮤니티 에너지프로젝트 추가 세액공제 지침 발표	74
2. 캐나다	75
가. 재무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조치 발표	75
나.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UHT) 면제 지침	76
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77
라.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시행 관련 법안 발의	79

II 유럽 / 81

1. 영국	81
가. 이전가격 관련 자료 보관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81
나. 강제보고규정 의회 통과	82
다. 2023년 예산안 발표	82
라. 탄소국경제도 의견수렴 절차 진행	84
2. 독일	85
가. 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 감면 협의 체결	85

목 차

나. 「2022 연간세법」 최종 승인	86
다.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7
라. 연구기관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설립	88
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세대책 발표	88
바. 「미래금융법」(자본시장 강화·자금조달 법안) 초안 발표	89
사. EU 국가별 소득세 정보공개 지침 도입을 위한 법안 승인	91
3. 프랑스	92
가. DAC7 관련 시행령 입법 및 지침 발표	92
나.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 지침 발표	93
다. 조세회피 대응 신규 조치 발표	94
라. 일시적 초과이익세 지침 발표	95
4. 이탈리아	96
가. 미결 조세 채무 및 소송 해결을 위한 절차 도입	96
나. 코로나19 관련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98
5. 스페인	98
가. 「2023년 예산법」 제정	98
나. 암호화폐 보고의무 제정	101
6. 아일랜드	102
가.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에 대한 부가세 0%로 인하	102
나. 「2023년 재정법(Finance Act 2023)」 관보 게재	102
7. 포르투갈	103
가. 초과이익세 법안 승인	103
나. 생활비 상승 억제를 위해 필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발표	104
다. 2023년 하반기 적용되는 새로운 원천징수세율 발표	104
라.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개정 협상 타결	106
8. 벨기에	107
가. 초과이익세 시행	107
나. 부가가치세 절차 및 징수 현대화 법안 발표	108
다. 세법 개정안 발표	109
9. 룩셈부르크	111
가. 초과이익세 도입 법안 의회 제출	111
나. 개인소득세 관련 에너지 패키지 의회 제출	112

CONTENTS

다. 역혼성기업에 대한 소득 산정 지침 발표	112
10. 그리스	115
가. 통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 명시	115
나.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5% 배당세 부과 의결	116
다.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소급연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시	117
11. 네덜란드	117
가. 증여세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 발표	117
나. 「은행세법」 개정안 발표	118
다. PSP의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 이행 법안 채택	119
라. 증여세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 발표	120
마. 2023년 봄 각서 발표	121
바. 업데이트된 DAC6 가이드라인 발표	123
사. 국회 승인을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제출	125
12. 덴마크	125
가. 2023년 화석연료 부문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 제안	125
나.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인상	126
13. 핀란드	127
가.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에 관한 법률」 제정	127
나. MLI 유보 철회 및 자본이득 대상 소득 유형 확대 법안 비준	127
14. 노르웨이	128
가. 필라2 규정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28
나. 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채택	129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 130

1. 일본	130
가. 2023년 예산안 제출	130
나. 새로운 고물가 대책 추진	131
2. 중국	132
가.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감면정책 발표	132
나. 주식 관련 개인소득세 혜택 연장	133
다. 토지사용세 감면 및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공제 확대 발표	134

목 차

3. 인도	135
가. 2023/24 예산안 발표	135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강화 및 횡재세 조정	137
4. 인도네시아	138
가. 「소득세법」 시행 개정 규정 발표	138
나. 신수도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139
다. 전기자동차 판매 부가가치세 인하	140
5. 홍콩	141
가. 홍콩 입법회는 가족 소유 투자 지주회사(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s)의 이윤세 면제 법안 통과를 발표함	141
6. 호주	141
가. 거액 연금잔액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발표	141
나. 과소자본 규정 관련 법안 업데이트	142
다. 무형자산 지급액 비공제 관련 공개초안 발표	143
라. 2023/2024 예산안 발표	144
마. 급여신고제 면제 관련 법률 문서 시행	147
7. 싱가포르	147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147
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인상 발표	150
8. 뉴질랜드	151
가. 유류세 인하 3월 말까지 연장 후 종료 예정	151
나. 2022-23 조세법안 변경 사항 의회 제출	153
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관련 법률 초안 공개	154

IV

국제기구 / 156

1. OECD	156
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행정지침 발표	156
나.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및 APA 지침 발간	157
다. 채굴 영역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의견수렴 문서 발표	157
라. 2023 조세협력 경과보고서 발표	159

CONTENTS

2. EU	160
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잠정 합의	160
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의회 통과	161
다.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기본법(MiCA)」 시행 확정	161
라. 가상화폐 자산정보 공개 위한 DAC8 지침 승인	162

표목차

제1부

기후변화와 조세동향

〈표 1-I-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9
〈표 1-I-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11
〈표 1-I-3〉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13
〈표 1-II-1〉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조세정책 비교	26
〈표 1-II-2〉 탄소가격하한제(CPF)의 탄소 가격 지원 요율	33
〈표 1-II-3〉 기후변화부담금(CCL) 기본 요율	34
〈표 1-II-4〉 기후변화협약 참여 대상자의 기후변화부담금(CCL) 기본 부과 할인율	34
〈표 1-II-5〉 프랑스의 연도별 탄소세	39
〈표 1-II-6〉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	41
〈표 1-II-7〉 단계별 석유석탄세 세율 인상	42
〈표 1-II-8〉 호주의 폐기물 부담금 시행 주 현황	54
〈표 1-II-9〉 「환경보호세법」상 과세 대상 오염물질 및 과세기준	61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I-1〉 복원된 화학물질에 대한 부과 세액 중 일부 68

〈표 2-II-1〉 2023년 상반기 미혼가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일부) 105

〈표 2-II-2〉 2023년 상반기 기혼가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일부) 105

〈표 2-II-3〉 벨기에 개인소득세 세율구간별 순소득 기준 변동 110

〈표 2-II-4〉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변동(2023~2024) 113

〈표 2-II-5〉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및 에너지 세액공제 산출 방식 변동 ... 114

〈표 2-II-6〉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경제 세액공제 115

〈표 2-III-1〉 기존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136

〈표 2-III-2〉 2023년 개정된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136

〈표 2-III-3〉 개인의 부가세 136

〈표 2-III-4〉 전자송장 발행의무 매출액 및 적용 일자 변천 138

〈표 2-III-5〉 호주 메디케어 저소득층 소득액 기준 변경 사항 146

〈표 2-III-6〉 싱가포르 자동차 한계 추가등록비 최고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150

〈표 2-III-7〉 싱가포르 고가 주거 및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 세율
최고 구간 신설 150

〈표 2-III-8〉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세율 인상 151

그림목차

제1부

기후변화와 조세동향

[그림 1-I-1]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 손실 추이	5
[그림 1-I-2]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추이	7



제1부 기후변화와 조세동향



I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대응과 조세

1 기후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가. 배경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2차 평가보고서(1995)는 인류 활동으로 인해 지구 표면의 기온 상승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 1990년에는 지구온난화가 자연적 요인 및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지속해서 배출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지난 50년 동안 관측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영향이 가장 크며, 21세기에 대기 조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밝힘
 - ▶ IPCC 시나리오는 전 지구 평균온도와 해수면이 항상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며 인위적인 기후변화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될 것임을 언급함
- ▣ IPCC 제3차 평가보고서(2001)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가 자연적 요인보다 인류 활동으로 발생한 오염물질 등 주로 인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명시하였음

 - ▶ 지속해서 오염물질 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1만 년간 겪었던 기후변화보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발표함
 - ▶ 추후 해수면 상승, 지구 평균온도의 발전된 관측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발표하며 인류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함
- ▣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증가와 2020년 이후 지구온난화의 유례없는 가속도로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

- ▶ 유럽연합 산하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의 발표('23. 1.)에 의하면, 202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 대비 약 0.3℃,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2℃ 높아 1959년 이후 상위 5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8년(2015~2022년)이 가장 따뜻한 해로 분석됨¹⁾
-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영향에 의해 과거 2,000년 동안의 속도에 비해 최근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기후가 온난화되었음을 언급함²⁾
- ▶ 유엔(UN)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지구온난화 속도의 가속도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기준인 1.5℃ 돌파 가능성 상승을 언급함³⁾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년부터 향후 1년 안에 1.5℃ 기준점⁴⁾ 돌파 가능성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고, 2020년 당시 5년 안에 1.5℃ 기준점이 깨질 가능성이 20% 미만으로 예측되었으나, 2022년 50%, 2023년 66%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점을 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임

나. 최근의 상황

- ▣ 2022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평균보다 $1.15 \pm 0.13^\circ\text{C}$ 상승하여 지난 8년간 역대 최고 기온 상승을 기록함
 - ▶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각각 149%, 124% 증가하였고, 메탄은 262% 증가함
 - 2021년 메탄은 2020년 대비 18ppb 증가하여,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음
 - ▶ 지난 30년간 지구 해수면은 매년 약 $3.4 \pm 0.3\text{mm}$ 상승하였으며 전 세계 평균 해양 pH도 지속적으로 감소함(해양산성화)
- ▣ 해빙 및 빙상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린란드 빙상 및 유럽 알프스에서

1)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의 이해』, 2023. 7., p. 48.

2)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의 이해』, 2023. 7.,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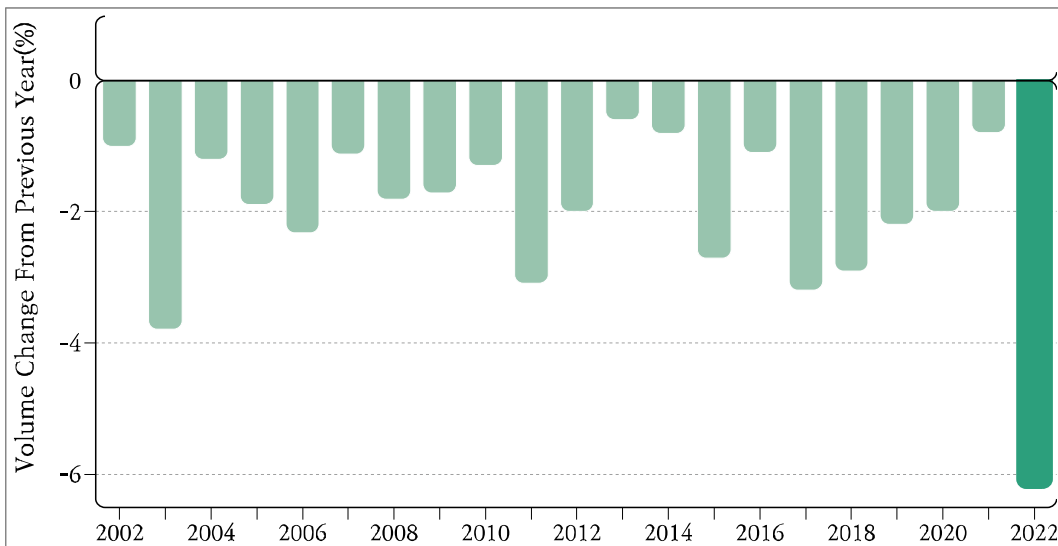
3) 『BBC NEWS 코리아』, 「사상 최초 '기후 재앙' 마지노선 1.5℃, 돌파 가능성 크다' 경고 나와」, 2023. 5. 1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k4p0yv723o>, 검색일자: 2023. 9. 25.

4) 1.5℃ 기준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정한 마지노선을 의미함

이상현상과 이례적인 빙하 손실이 발생함

- ▶ 북극 해빙 면적은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0.71만km² 작았으며, 2022년 위성 관측 사상 11번째로 낮은 월별 최소 해빙 면적을 기록함
- ▶ 남극 해빙 면적은 192만km²로 감소하여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약 100만km² 낮은 수치임
 - 남극 해빙의 총면적은 계속적으로 평균보다 감소하여 2022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 2022년 그린란드 빙상(Greenland Ice Sheet)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9월에 빙상이 녹는 현상과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함

[그림 1-1-1]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 손실 추이



자료: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2," <https://storymaps.arcgis.com/stories/6d9fcb0709f64904aee371eac09afbfd>; <https://public.wmo.int/en/our-mandate/climate/wmo-statement-state-of-global-climate>, 검색일자: 2023. 7. 24.

- ▶ 2022년 스위스 알프스 빙하의 면적 6%가 유실되는 극심한 빙하 손실 현상이 발생함
 - 2022년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알프스 상공을 덮으며 막대한 빙하 손실을 초래하여 빙하가 더 빨리 녹았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얼음이 축적되지 않았음
 - 또한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많은 양의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빙하 손실 현상을 가속함

- ▾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파 및 폭염이 발생하고, 특히 인도·파키스탄,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등에서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이 발생함

 - ▶ 2020년 말부터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⁵⁾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시리아는 2분기 연속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임
 - ▶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발생으로 파키스탄 면적의 약 9%가 침수되었고, 이 외에도 인도 및 방글라데시에서도 홍수가 발생함
 - ▶ 일본의 벚꽃 개화 시기는 기후변화 및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2021년 벚꽃 만개일은 1,20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만개일을 기록함

- ▾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산악·해양 등 생태계의 멸종위기종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기온이 2°C 상승한다면 30% 이상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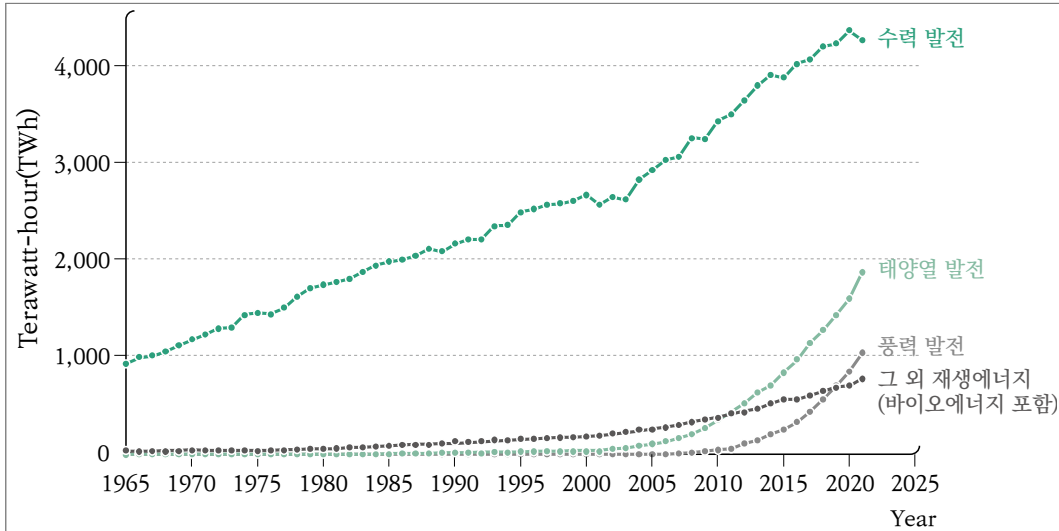
 - ▶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호초의 경우, 기온이 1.5°C 상승 시 산호초 면적의 최소 70%부터 최대 90%가 유실되며, 2°C 상승 시 99%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
 - ▶ 북극 생태계 또한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이 붕괴하여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됨

-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명시된 현재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함

 - ▶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없이 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필요함

5) 에티오피아·소말리아·지부티가 위치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임

[그림 1-1-2]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추이



자료: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2," <https://storymaps.arcgis.com/stories/6d9fcb0709f64904aee371eac09afbfd>; <https://public.wmo.int/en/our-mandate/climate/wmo-state-ment-state-of-global-climate>, 검색일자: 2023. 7. 24.

- ▶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며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 2022년 기준 풍력과 태양열의 경우 전 세계 전력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비용은 감소하였음

다. 국제적 대응

- ▣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⁶⁾
 - ▶ Annex I(부속서 1) 국가⁷⁾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6) 대한민국 외교부(MOFA), 「기후변화체제」,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자: 2023. 7. 24.

7) Annex I(부속서 1) 국가는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부

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

- ▶ Annex II(부속서 2)에 포함된 24개국⁸⁾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함

▣ UN은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글로벌 이행점검은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해야 함을 발표하였으며,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9), 10)}

- ▶ 또한 2023년 7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2025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공동으로 동원한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기후적응을 위한 재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조함
 - ▶ 7개 당사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기여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 ▶ 16개 당사국은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 ▶ 또한 화석연료를 퇴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JETPs)을 설립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7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85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G7 국가들은 추가로 인도네시아, 인도, 세네갈, 베트남 등 우선순위에 맞춰 지원할 계획임
- ▣ UN은 아프리카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속서 2 국가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 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함

- 8) Annex II(부속서 2)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임
- 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Governments Commit to Increase Climate Finance through 2025," 2023. 7. 13., <https://unfccc.int/news/governments-commit-to-increase-climate-finance-through-2025-0>, 검색일자: 2023. 7. 24.
- 10)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Global Stocktake "Must be the Turning Point" to Limit Warming," 2023. 7. 13., <https://unfccc.int/news/global-stocktake-must-be-the-turning-point-to-limit-warming> 검색일자: 2023. 7. 24.

함을 강조함¹¹⁾

- ▶ 아프리카 개도국 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REDD+)¹²⁾ 활동을 통해 삼림 벌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장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모잠비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태양열·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며 물 공급과 에너지소비가 적은 전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임
 - 니제르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태양에너지의 비중을 30%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함께 1만 5,000헥타르의 산림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튀니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표 1-1-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C 목표, 1.5°C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뿐 아닌 기술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포괄
감축의무 국가	선진국(38개국)	모든 당사국(195개)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 시 징벌 여부	징벌적	비징벌적
목표 설정 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 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시점이 있어 지속가능성 미흡	종료시점 미 규정으로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자료: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기후 관련 정책 - 파리협정」, http://www.climate.go.kr/home/03_policy/policy02_04.php, 검색일자: 2023. 7. 25.

▶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은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으로,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

11) United Nation Climate Change, “Four African Countries Ramp Up Ambition for Transition to a Low-Carbon Future,” 2023. 7. 25., <https://unfccc.int/news/four-african-countries-ramp-up-ambition-for-transition-to-a-low-carbon-future>, 검색일자: 2023. 7. 25.

12)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의 주요 목적은 ① 산림전용 및 ② 산림황폐화 방지, ③ 산림보전, ④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⑤ 탄소축적 능력 향상 등 개도국이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임(산림청,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REDD+)」,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14_02_04&cmsId=FC_003547, 검색일자: 2023. 7. 25.)

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한 합의 체제임¹³⁾

-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다자간 기후변화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협정으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은 의미가 있음
 -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맺은 협정으로서 개도국의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 배양을 지원함
- ▶ 5년마다 단계적 상향 목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협정 당사국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 알려진 국가 기후 행동 계획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개정 필요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음
 - 2023년 말까지 파리협정상 목표 온도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 2030년 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 중임
 - 장기적 전략을 위해 장기 온실가스 배출 개발 전략(Long 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T-LEDS)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각국에 요청함
-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원조를 목표로 강화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ETF)를 구축하여 각국의 기후 관련 역량 구축에 큰 중점을 두고 있음
 - ▶ 2024년부터 기후변화 완화, 적응 조치 및 제공되거나 받은 지원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제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국제 절차 및 지침(Modalities·Procedures·Guidelines: MPG)을 규정함
 - 2년마다 투명성 보고서(BTR1) 또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담은 독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보고서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 기한을 두고 있음
 - ▶ ETF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국제 현황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며 각국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국가 간 계획과 목표 비교를 목표로 함

13)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 What is the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라. 우리나라의 대응

- ▶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¹⁴⁾
- ▶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3차에 걸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12년), 배출권거래제(2015년)를 시행함
- ▶ 이 밖에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재정을 지원하고, UN 기후 정상회의의 ‘기후 재정(Cliamte Finance)’ 세션에서 멕시코와 공동 의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 ▶ 또한 2015년 6월에는 파리협정의 타결을 위해 각국이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내용이 포함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을 제출한 바 있음
 - 이 제출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대비 37%로 설정하고 있음
 - 이후 국가결정기여(NDC) 값은 꾸준히 갱신하여, 2021년 10월 현재 2030년까지 2018년 배출 전망 대비 40%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표 1-1-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연도	추진 내용
2009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대비 30% 감축 목표 제시
2010	○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2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20. 10.)
2014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UN 기후 정상회의 ‘기후 재정(Cliamte Finance)’ 세션 공동 의장('20. 9.)
2015	○ 배출권거래제 실시('15. 1.) ○ 국가별 기여방안(INDC) 제출('15. 6.)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15. 12.)

14)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자: 2023. 7. 11.

〈표 1-1-2〉 의 계속

연도	추진 내용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국내 비준 완료('16. 11.) 및 발효('16. 12.)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16. 12.)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6. 12.)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18. 7.)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후기금(GCF) 고위급 공여 회의 - 기금 재원 보충(2억달러) 기여('20.~'23.)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국가결정기여(NDC) 갱신안 제출('20. 12.) - NDC 환산을 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목표 제시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20. 12.)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NDC 상향안 발표('21. 10.) -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 상향 - 2021년 10월 COP26에서 발표하고, 12월 UN 제출

자료: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자: 2023. 7. 11.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및 보완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규모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허용되며, 배출권의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타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배출 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음¹⁵⁾

- ▶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배출권거래소의 운영 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함
 - 기본적으로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나,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중 직전 기간 할당 대상업체였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됨¹⁶⁾
 - 본 법률의 제22조 제2항은 배출권거래소의 회원, 거래방법, 청산 및 결제, 거래정보 공개, 시장 감시,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전술한 배출권거래소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5)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배출권시장 개요」, <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1/OPN01050401.jsp>, 검색일자: 2023. 7. 21.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표 1-1-3〉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배출권거래소 운영 규정 (제22조 제2항)	배출권거래소 업무(「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배출권거래소 회원	시장의 개설 및 운영
거래방법	배출권의 매매(경매 포함)
청산 및 결제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품목 및 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처리, 결제지시
거래정보 공개	매도·매수 우선호가, 시·고·저·종가, 현재가 등 실시간 공표
시장 감시	가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변동 등 이상 거래의 심리 및 감리
분쟁 조정	당사자 신청의 매매분쟁 조정 등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배출권시장 개요」, <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1/OPN01050401.jsp>, 검색일자: 2023. 7. 28.

- ▶ 2014년 1월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KRX)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 1월 거래시장이 개시됨
 - 2023년 배출권(KAU23)의 가격은 2021년 10월 2만 9,400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까지 3만 2,7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11월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7월 27일 현재 가격은 10,600원(종가 기준)임¹⁷⁾
- ▣ 우리나라는 이 밖에도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고 있음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및 유사 대체 유류로, 세율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 유류가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유사 대체 유류가 리터당 340원임¹⁸⁾
 - ▶ 이 밖에 LPG(부탄, 프로탄), 등유, 중유, LNG 및 유연탄과 같은 다른 화석연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17)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시세조회」, <https://ets.krx.co.kr/contents/ETS/03/03010000/ETS03010000.jsp>, 검색일자: 2023. 7. 28.

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2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조세정책 논의

가. OECD와 IMF의 조세정책과 기후변화

- ▣ OECD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향한 점진적인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1.5°~2°C로 제한하려면 생산 및 소비 패턴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기후정책 패키지가 필요함
- ▣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의 배출량 공약과 정책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함

 - ▶ 전 세계가 기후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₂) 및 기타 온실가스를 2019년 수준보다 4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여야 하나, 각국의 중간 배출 목표는 이러한 장기적인 배출 중립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려면 기존 정책에 더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톤당 가격이 약 75달러 이상으로 상승해야 하나, 현재까지 각국이 발표하거나 시행한 정책은 중간 배출량 목표 및 궁극적인 탄소 제로 배출량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의 최소한에 불과함
- ▣ 한편 세계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제는 탄소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가격과 암묵적인 가격의 부과를 통해 시행됨

 - ▶ 명시적인 탄소 가격 부과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를 통해, 암묵적인 탄소 가격 부과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일부 세금, 탄소 배출 억제 규제,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 기술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형성됨
 - ▶ 각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나 청정기술의 가용성 및 접근성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정책 조합을 달리하여 다양한 암묵적 및 명시적 가격 수단을 도입 중임
- ▣ 탄소세를 포함한 온실가스에 대한 명시적인 가격 책정이 경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경우 효율적인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됨

- ▶ 여러 탄소 배출 감축 수단 중 명시적 탄소 가격 책정은 탄소 감축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균형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임
 - 암묵적인 탄소 가격은 명시적인 가격보다 직관성이 저하되며, 배출 감소 단위당 더 높은 가격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 수입을 높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명시적 가격 책정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 산업, 운송, 건축 및 실질적인 배출원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기술이 개선되는 경우, 광산 채굴 등과 같은 각종 추출 과정과 토지 사용 변화, 농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원으로 탄소 가격 정책을 확대할 수 있음
- ▣ 명시적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한 수입을 신중하게 사용하면 기후정책을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 취약한 가계, 근로자, 기업, 지역에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탄소 가격 책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를 시행한다면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성공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적절한 세수 사용은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 현재 암묵적 탄소 가격 및 명시적 탄소 가격은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최근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명시적 가격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의 암묵적 가격을 분석한 결과, OECD 및 G20 국가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₂ 배출량의 약 60%가 암묵적, 명시적 탄소 가격 책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및 전력 부문에서 세율이 가장 낮으며, 화석연료 지원과 탄소 집약적 기술에 유리한 무료 허가 할당 규칙으로 인해 이러한 탄소세의 비과세 문제는 악화됨
 - ▶ 필요한 정책 조치의 증가 수준은 국가별 목표 수준, 에너지 믹스 상황 및 다양한 출발점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결정기여(NDC)에 정의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2030년까지 약 75달러/tCO₂ 이상의 명시적인 탄소 가격 인상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 ▣ 따라서 이러한 탄소 가격 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축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한 개선된 측정이 필요함

- ▶ 2020년 7월 9일 베니스에서 개최한 G20 고위급 조세 심포지엄에서 각국 장관들은 암묵적 탄소 가격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들 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비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명시적 탄소 가격은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지만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감축 정책의 현황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묵적 탄소 가격 또한 추정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차원에서 명시적 탄소 가격 책정을 확대하는 조치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의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함

- ▶ 각국의 기업 경쟁력, 탄소 누출(carbon leakage: 기업이 기후정책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배출 제한이 완화된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¹⁹⁾)에 대한 우려는 명시적 탄소 가격 정책의 시행을 억제하는 요인임

- ▶ 다른 국가들이 무임승차하여 충분한 감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 탄소 가격 및 감축 노력을 확대하려는 조치가 저하될 수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공조는 공평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명시적 및 암묵적 탄소 가격을 모두 고려한 감축 노력에 대해 보다 넓은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G20은 회원국 간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간 공조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보장할 수 있음

- ▶ G20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20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기후와 관련된 정책 과제의 인센티브, 재정, 국제 공조 측면을 공동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탄소와 관련한 가격 책정 및 지원 조치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탈탄소화 목표 간의 더 나은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음

- ▶ 따라서 G20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시행과 조정 속도를 통해 탄소 순배출 제로라는 궁극적인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19) European Commission, "Carbon leakage,"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free-allocation/carbon-leakage_en, 검색일자: 2023. 7. 21.

나. UN의 개도국에 대한 탄소세 권고

- ▾ 기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체제에서 벗어나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등 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됨
- ▾ UN은 개도국의 파리협정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세제(carbon taxation) 정책화 및 법제화에 필요한 교육 및 실무지침을 제공함²⁰⁾
 - ▶ 탄소세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임
 - ▶ UN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탄소세제 편람』을 통해 탄소세제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지침, 주요국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
- ▾ UN은 2021년 11월, 『탄소세제 편람』 중 조세위원회(UN Tax Committee)에서 승인한 일부²¹⁾를 다루는 ‘개도국 대상 탄소세제 편람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도국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²²⁾
 - ▶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탄소 가격제도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ETS) 등이 있음
 - 탄소세는 배출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므로 납세자의 탄소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높으나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출량이 정해지는 불확실성이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 의해 배출량이 정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높으나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가격이 형성되므로 탄소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움
 - ▶ 탄소세는 조세행정상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이는 개도국에 매력적인(attractive) 기능이 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배출거래 시장, 배출량, 배출권 거래수단, 배출원 등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비용이 높은 반면, 탄소세는 현행 조세행정시스템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²³⁾

20) UN, “Environmental Taxation,” <https://financing.desa.un.org/what-we-do/ECOSOC/tax-committee/thematic-areas/environmental-taxation>, 검색일자: 2023. 7. 14.

21) 『탄소세제 편람』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장, 3장 및 4장 일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

22) UN, “UN Virtual Workshop on the Handbook on Carbon Taxation,” <https://www.superperfect.com/events/un-virtual-workshop-handbook-carbon-taxation>, 검색일자: 2023. 7. 14.

23)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여 운영함

- ▶ UN은 2023년 6월, 2017년부터 조세위원회가 검토한 『탄소세제 편람』을 발간함²⁴⁾

 - ▶ 워크숍에서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한 최종본으로 각국의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 설계 및 관리옵션을 제공함

- ▶ 『탄소세제 편람』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탄소세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임
 - ▶ 개도국 정책입안자가 탄소세 설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국제 협약에 따른 4가지 원칙²⁵⁾을 반영하여야 함
 - 탄소세는 세율에 따라 산출되어 탄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율의 조정, 면세, 보조금 등 추가적인 사항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정 지원 체계는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탄소 누출(carbon leakage)²⁶⁾과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 국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 ▶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설명함
 - 국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아 탄소세를 시행하지 못한 사례²⁷⁾가 있으므로 국민의 수용성은 필수적임
 - 탄소세 세입 일부를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광범위한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 탄소세의 설계·과세권한, 성격, 조세부담, 이중과세 등 탄소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함
 - 대부분의 국가는 재무부에서 조세제도를 설계, 과세당국이 징수관리를 하지만 탄소세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 탄소세는 조세제도이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의무도 있으므로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도입하는 방식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음

24) UN, *UNITED NATIONS Handbook on Carbon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2021, <https://financing.desa.un.org/document/un-handbook-carbon-taxation-developing-countries-2021>, 검색일자: 2023. 7. 14.

25) 오염자 부담(the polluter pays principle), 예방(the principle of prevention), 사전주의 의무(the precautionary principle),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26) 기업들이 세금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나 장소로 이전하는 현상

27) 프랑스의 탄소세율 인상 실패 등

- 탄소세는 간접세(indirect tax)로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므로 면세, 저세율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개도국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의 이중과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 탄소세율은 제도 도입 시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추세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후완화 목표와 기후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함
- 탄소 배출과 경제 발전은 상충되고 개도국의 연료제품 가격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므로 개도국의 낮은 탄소세율은 정당화될 수 있음
- 또한 도입을 연기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로 우선 도입하고 차선의 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탄소세율을 인플레이션과 연동²⁸⁾하여 설정하는 것도 방법임
- ▶ 탄소세 설계방식은 연료접근법과 직접배출접근법이 있고, 국가별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설계하기를 권고함
- 연료접근법(Fuel Approach)은 널리 사용되는 접근법으로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설계하기 용이하지만, 이산화탄소(CO₂) 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대한 제재는 어려움
- 직접배출접근법(Direct Emissions Approach)은 배출량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배출권거래제(ETS)로 전환이 용이하지만 제도 설계 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제도 운영 시 부수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함
- ▶ 탄소세 도입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경감, 리베이트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층화된 과세구조, 세율 인하, 면제 등 탄소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정액요금제, 탄소세 이외의 세금감면, 리베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탄소세 도입으로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과 더불어 상당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함
- 탄소세 도입으로 악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 관련 세출 확대 등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집행방안을 권고함
- ▶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조세제도나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

28)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은 탄소 및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함

다. EU의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reen Taxation

- ▣ EU는 환경세(Green Tax)의 목표가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원이자 팬데믹으로부터의 경기회복 지원임을 공고함

 - ▶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각 국가의 환경세는 특정 환경문제 해결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EU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EU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함
 - ▶ 2019년 발표한 EU의 그린딜(Green Deal)은 EU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하며 휘발유, 경유와 같이 운송에 사용하는 에너지 제품 및 전기와 난방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환경세(Green Tax)로 정의하고 있음

- ▣ EU의 중장기 대응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를 이용하여 환경세의 범위와 사용을 확장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공정한 과정을 강조함

 - ▶ EU는 각 회원국이 국가 복구 노력의 일환으로 필요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세를 개정함에 있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함
 - ▶ 사회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효과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회 주체들이 크게 체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 투자 병행을 권고함
 - ▶ 에너지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 가계에 이전 시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난방 관련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 제품 및 가전제품에 대한 자금조달 투자를 통해 녹색 전환을 지원하여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역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언급함²⁹⁾

29) EUR-Lex,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restructuring the Union framework for the taxation of energy products and electricity (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563>, 검색일자: 2023. 7. 21.

- ▶ EU는 팬데믹 회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저소득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공정성 고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 ▣ 2003년 발표된 EU의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과세 지침 평가 보고서가 2019년도에 발표된 후, 위원회는 EU의 기후 목표 반영을 위해 면세 규정 등을 재점검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2021년 7월 14일 발표함³⁰⁾
 - ▶ EU의 에너지 과세 지침은 자동차 연료, 난방 연료 및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세 규칙을 의미하며, 지침이 발표된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 미반영 사실 등이 지적된 바 있음
 - 개정 필요성이 언급된 사항으로는 현재 EU 시장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 제품 구성의 미반영 및 연료의 최저세율에 에너지 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미반영 등이었음
 - ▶ EU가 에너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EU의 기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면세 규정을 개정함
 - 구체적으로, 연료에 대한 최저세율 개정과 특정 화석연료 및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한 실질적 면세혜택 등을 제거하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의 투자 및 기술투자를 지원함
 - ▶ 2021년 7월 발표한 'Fit For 55' 패키지는 회원국의 배출량 감축 목표, EU의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세 지침 개정 제안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에너지 제품 및 전기세에 대한 'Fit for 55'의 이사회 지침 개정은 가장 오염이 심한 연료인 석탄·석유·가스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미래를 목표로 함³¹⁾
 - 환경세는 EU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과세에 대한 공통 규칙의 필요성을 언급함
 - ▶ 개정된 지침은 다양한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기업이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자, 사용자 및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30) European Commission, "Energy taxation," https://energy.ec.europa.eu/topics/markets-and-consumers/energy-taxation_en, 검색일자: 2023. 7. 21.

31)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 "Fit for 5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green-deal/fit-for-55-the-eu-plan-for-a-green-transition/>, 검색일자: 2023. 7. 21.

- 2022년 6월 EU 재무장관들은 경제재정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세 지침(ETD) 개정 경과 보고를 주목한 바 있음³²⁾
- ▶ EU의 에너지 규제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항공 및 해운업에서 사용하는 등유 및 중유에 대한 최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가능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료의 경우 최저세율을 0으로 적용하여 보급 촉진을 계획함
- 문제로 지적되었던 실시간 물가 반영의 미흡 보완을 위해 최소 요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소비자물가 수치에 따라 매년 조정할 예정임을 공고함³³⁾

32)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 "Infographic - Fit for 55: how the EU plans to revise energy taxat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fit-for-55-energy-taxation/>, 검색일자: 2023. 7. 21.

33) 상동

II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조세정책

1 국가별 비교

가. 과세

- ▶ 미국은 환경세로 슈퍼펀드 화학세와 오존파괴 화학제품세가 있고 주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운영함
 - 슈퍼펀드 화학세는 개별소비세로, 석유세, 화학물질세, 유해물질세가 있음
 - 탄소세는 하와이에서 부과하고 있고, 배출권거래제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 ▶ 영국은 에너지 효율 자산 구매에 대한 소득공제를 비롯하여, 탄소가격하한제와 배출권거래제 외에 다양한 환경 관련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탄소가격하한제(CPF)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대체하는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를 운영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기후변화부담금(CCL), 쓰레기매립세(LFT), 플라스틱 포장세(PPT)와 같은 환경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 캐나다는 ‘국가 탄소가격제(GGPPA)’를 도입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함
- ▶ 일본은 탄소세 명목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도입하여 화석연료에 대해 CO₂ 배출량 1톤당 289엔을 부담하도록 설정함
- ▶ 인도는 탄소세를 대신하여 석탄에 톤당 400루피의 상품 및 서비스세를 부과함
- ▶ 프랑스는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
 - EU ETS를 보완할 목적으로 프랑스는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2018년 탄소세를 44.6유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로 재생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환경분담금(1kg당 0.47유로)을 부과하고 있음

- ▶ 이탈리아는 환경세로서 플라스틱세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임
 - 202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재료 1kg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할 예정임
- ▶ 호주는 환경 보전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소득세 관련 공제를 비롯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몇 가지 환경 관련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토지보존계약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액이나 중소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비용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 및 저탄소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법인세 감면 세율을 적용함
 -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였던 탄소가격제에 이어 2015년 8월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음
 - 이 밖에도 석유자원 임대세(PRRT), 폐기물 부담금(Waste Levy), 승객이동 부과금(PMC) 등 환경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 스웨덴은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
 -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연소 시 배출되는 예상 CO₂ 배출량(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을 기반으로 하는 추정)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2023년 이산화탄소 1톤당 1,330크로나(122유로)로 인상되었음
 - 스웨덴은 환경세로 유황세(SO₂ tax)와 질소산화물세(NO_x fee)를 도입하였는데 유황세는 고체연료의 경우 30크로나/kg(2016년 11월 기준), 유류에 포함된 황 함량의 1,000분의 1당 27크로나/kg(2016년 11월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세는 모든 연료에 대해 NO_x 배출 시 50크로나/kg를 부과함
 - 스웨덴은 환경세로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표준 플라스틱 봉투당 0.5크로나, 작은 플라스틱 봉투당 0.05크로나로 감면될 예정임
 -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CO₂ 배출량이 많은 휘발유 및 디젤 구동 자가용, 버스에 처음 3년 동안 더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
- ▶ 독일은 운송 및 난방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2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nEHS)를 시행하며 탄소세(탄소배출비)를 부과하여 가정용 난방 및 화석연료 사용에 톤당 25유로를 부과하여 매년 5유로씩 인상함(2023년 기준 1톤당 30유로)

나. 세제혜택

- ▶ 미국은 친환경 세제혜택으로 친환경차 및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재산세 면제,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음
- ▶ 영국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에 차량소비세(VED) 영세율 혹은 감면 세율을 적용함
- ▶ 캐나다는 친환경 세제혜택으로 법인세율 인하, 청정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제도, 환기비용세액공제, 무공해 차량 구매 보조금이 있음
- ▶ 일본은 친환경 세제혜택으로 친환경 사업자의 관련 설비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속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도입했으며, 개인의 주택에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도입함
- ▶ 인도는 친환경 세제혜택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설비 가속상각,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자원 회수 관련 기업의 이익 면세, 전기차 구입 대출 이자 비용 공제를 도입함
- ▶ 프랑스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 배출량 환경점수를 산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이탈리아는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인 2023 Superbonus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호주는 전기차에 복리후생세(FBT)를 면제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 스웨덴은 2022년 11월 8일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을 주문하였거나 소유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함
- ▶ 독일은 주거용 건물에 한정해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는 경우 비용의 20% 세액공제 혜택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입·설치 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1-11-1〉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조세정책 비교

국가	직·간접세	탄소세	환경세	세제혜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친환경차 및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재생가능한 자원 투자세액공제, 재생가능한 자원의 전력 생산세액공제,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등 주세: 청정수소세액공제, 태양열장 치세액공제, 콘크리트세액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세: 하와이주 - 배출권거래제: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탄소국경세: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펀드 화학세(화학물질세, 유해물질세, 석유세) 오존파괴 화학제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저속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재산세를 면제함 보조금: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주정부별로 재정지원이 상이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효율 자산 구매에 대한 소득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가격하한제(CPF) 운영 UK ETS(영국 배출권거래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부담금(CCL) 쓰레기매립세(LFT) 플라스틱 포장세(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공해 차량에 대한 차량서비스(VED) 경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입 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19%에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세(탄소배출비): 가정용 난방, 휘발유 등 CO₂ 배출량 1톤당 25유로 부과 국가 배출권거래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주거용 부동산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물로 개조(리모델링) 시 20%(최대 4만유로) 세액공제 보조금: (대)학생 대상 에너지보조금 200유로 지급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 1톤당 44.6유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세: 재생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 1kg당 0.47유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및 친환경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행 보조금: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 1톤당 지구온난화 대책세 289엔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업 자산 특별상각, 세액공제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약공사 특별 세액공제

<표 1-11-1> 의 계속

국가	직·간접세	탄소세	환경세	세제혜택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법인세를 인하, 청정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제도 • 소득세: 환기비용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탄소가격제(GGPPA):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공해 차량 보조금: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함 •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발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세액공제: 친환경 건물로 개조한 경우 세액공제 • 보조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이탈리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제조·수입업체는 1kg당 0.45유로의 세금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에 대한 복리후생세(FBT) 면제 • 소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환경)보존계약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액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자선 사용 비용 소득공제 • 농업 및 저탄소 기술 분야 관련 법인세 감면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15년) 탄소세(탄소가격제) • (2015년 8월-) 배출권거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자원 임대세(PRRT) • 폐기물 부담금(Waste Lev) • 승객이동 부과금(PMC)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CO₂ 배출량 1톤당 1,330크로나(122유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황세: 고체연료의 경우 유황 kg당 30크로나, 유류에 포함된 황 함량의 1,000분의 1당 27크로나/kg 부과 • 질소산화물세: NOx 배출 kg당 50크로나/kg • 플라스틱세: 표준 플라스틱 봉투당 3크로나,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최대 용량이 7리터인 자은 플라스틱 봉투의 경우 한 장당 0.3크로나 부과 •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린 차량의 경우 연간 360크로나의 기본부과금에 CO₂ 배출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요금 부과 - 디젤 차량의 경우 기본부과금 및 이산화탄소 요금에 더불어 환경 추가부담금과 유류추가요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2022년 11월 8일 이전까지 기후보너스 지급 대상 차량을 주문하였거나 소유한 경우, 보조금 지급

〈표 1-11-1〉의 계속

국가	직·간접세	탄소세	환경세	세제혜택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장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 오염방지, 환경보호, 청정개발체제 • 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법인세 면제 • 친환경 풍력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세 도입은 논의 중 •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호세법」을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절약, 신에너지 차량 및 선박 구매, 자원의 종합적인 재활용 유도 등의 친환경 대상에 각종 구매세, 소비세 등을 면제함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에 정정에너지세 톤당 400루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설비 가속 상각 • 폐기를 처리, 재활용 및 자원 회수 관련 기업 면세 • 전기차 구입 대출 이자 비용 공제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주요국의 현황

가. 미국

-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
고³⁴⁾, ³⁵⁾ 2022년 8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표함
 - ▶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공제항목을 신설하는 등 탄소, 연
료, 발전, 친환경차 등 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음

1) 직·간접세

- ▾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조세제도를 정비함³⁶⁾
 - ▶ (법인세 및 소득세) 친환경차(clean vehicle) 및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관련 세액
공제(credit)를 신설하고 기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연장 및 확대함
 - 신규 또는 중고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청정수소·전력·연료 등과 관련하여 투
자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에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재생가능한 자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대
체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등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범위를 확대함
 - ▶ (개별소비세) 석탄·광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종료하고 1995년 12월에 만
료된 슈퍼펀드화확세 중 하나인 석유세(Petroleum Superfund tax)를 복원함³⁷⁾

34)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가입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탈퇴를 선언함

35) The White House, "Paris Climate Agreement," 2021. 1.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1/20/paris-climat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18.

3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Provis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2022. 10. 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7262>, 검색일자: 2023. 7. 21.

37) KPMG, "Third Reinstated "Superfund" Tax Adds Complexity," 2023. 1. 25.,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s/pdf/2023/01/tnf-wnit-superfund-jan25-2023.pdf>, 검색일자: 2023. 7. 21.

- ▾ 또한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정부 차원의 주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함
 - ▶ (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일리노이주는 청정수소 사용자에게 최대 1,000만달러 세액공제를 하는 청정수소세액공제 제도(Clean Hydrogen Tax Credits)를 제정함³⁸⁾
 - 애리조나주는 주거용 주택의 태양열 장치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제도(Credit for Solar Energy Devices)를 발표함³⁹⁾
 - 뉴저지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콘크리트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정함⁴⁰⁾

2) 탄소세

- ▾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는 논의 중임
 - ▶ (탄소세) 2014년 하와이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연방정부의 상원 및 하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하였지만 논의 중임⁴¹⁾
 - ▶ (배출권거래제)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온타리오, 오리건 등 주정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시장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의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⁴²⁾와 북동부⁴³⁾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⁴⁴⁾ 등이 있음
 - ▶ (탄소국경세) 관세인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임

38) IBFD, "Illinois Enacts Clean Hydrogen Tax Credits," 2023. 7.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28_us_2.html, 검색일자: 2023. 7. 28.

39) IBFD, "Arizona Department of Revenue Publishes Solar Energy Individual Tax Credit Guidance," 2022. 3.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01_us_3.html, 검색일자: 2023. 7. 24.

40) IBFD, "New Jersey Enacts Tax Incentives to Lower Carbon Emissions in Concrete Industry," 2023. 2.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1_us_4.html, 검색일자: 2023. 7. 24.

41) IBFD, "US Senators Propose Carbon Tax, Incentives for Decarbonization," 2022. 6.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4_us_1.html, 검색일자: 2023. 7. 24.

42) WCI, <https://wci-inc.org/our-work/approach>, 검색일자: 2023. 7. 24.

43)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44) RGGI, <https://www.rggi.org/program-overview-and-design/elements>, 검색일자: 2023. 7. 24.

3) 환경세

- ▾ 미국의 환경세는 슈퍼펀드 화학세(Superfund Chemical Taxes)와 오존파괴 화학제품세(Ozone-depleting chemicals excise tax)가 있음
 - ▶ (슈퍼펀드 화학세) 2022년 7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의해 화학물질(the Chemicals Superfund Tax) 및 유해물질(the Hazardous Substances Tax)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인 슈퍼펀드 화학세가 복원됨⁴⁵⁾
 - ▶ (오존파괴 화학제품세) 생산자나 수입자가 오존파괴물질(ODC)을 판매 혹은 사용할 때 또는 수입될 때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세함⁴⁶⁾

4) 세제혜택

- ▾ 지속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친환경차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 ▶ (재산세) 지속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재산세를 면제함
 - 미시간주는 태양광 설비(solar energy facilities)에 대한 재산세를 20년 동안 면제함⁴⁷⁾
 - 워싱턴주는 재생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생산하는 설비의 재산세를 면제함⁴⁸⁾
 - 버지니아주는 태양에너지 설비(solar energy equipment)의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함⁴⁹⁾
 - ▶ (보조금)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은 주정부별로 상이함
 -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함
 - 뉴욕주는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함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최대 2,500달러를 지원함

45) KPMG, "Reinstatement of Superfund excise taxes," <https://tax.kpmg.us/services/excise-tax/superfund-excise-tax.html>, 검색일자: 2023. 7. 24.

46) 미국 「내국세법」(Title 26) § 52.4681(1992)

47) ibfd, "michigan exempts solar energy facilities from property taxes for 20 yea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1_us_1.html

48) IBFD, "Washington Enacts Personal Property Tax Exemptions for Renewable Energy Producers," 2023.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9_us_4.html, 검색일자: 2023. 7. 24.

49) IBFD, "Virginia Enacts State-wide Solar Facility Tax Exemption," 2022. 5.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05_us_7.html, 검색일자: 2023. 7. 24.

나. 영국

1) 직·간접세

- ▣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저탄소 또는 무탄소 기술이 적용된 자산 구매 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50), 51)}
 - ▶ 적격 자산 구입 시 세전 소득에서 전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적격 자산으로는 무공해 자동차 및 화물 차량, 가스 충전소용 플랜트 및 기계류, 바이오가스 및 수소 충전 장비, 전기차 충전소 장비 등이 있음
 - ▶ 이때 장비 임대 목적, 임대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

2) 탄소세

- ▣ 2013년 4월 1일 영국은 저탄소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 가격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 이하 'CPF')를 도입한 바 있음⁵²⁾
 - ▶ 발전소를 소유한 자나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EU ETS 가격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의 탄소 하한 가격 목표에 따라 설정한 탄소 가격 지원 요율을 납부함

50) GOV.UK, "Environmental taxes, reliefs and schemes for businesses," <https://www.gov.uk/green-taxes-and-reliefs/capital-allowances-on-energyefficient-items>, 검색일자: 2023. 7. 27.

51) GOV.UK, "Claim capital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first-year-allowances>, 검색일자: 2023. 7. 27.

52) UK Parliament, "Carbon Price Floor (CPF) and the price support mechanism," Briefing Paper, Number 05927, 2018. 1. 8.,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927/#:~:text=The%20Carbon%20Price%20Floor%20\(CPF,What%20is%20the%20CPF%3F](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927/#:~:text=The%20Carbon%20Price%20Floor%20(CPF,What%20is%20the%20CPF%3F), 검색일자: 2023. 7. 27.

〈표 1-11-2〉 탄소가격하한제(CPF)의 탄소 가격 지원 요율

(단위: £/kWh, £/kg, £/GJ)

구분	가스 (£/kWh)	LPG 또는 기타 기체 탄화수소 (£/kg)	석탄 및 기타 고체 화석연료 (£/GJ(발열량))
2016. 4. 1.~2025. 3. 31.	0.00331	0.0528	1.5479

자료: 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https://www.gov.uk/guidance/climate-change-levy-rates>, 검색일자: 2023. 7. 27.

- ▣ 또한 정부의 정책에 보다 친화적이면서 대상 기업에 연속성을 제공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대체하는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를 도입함⁵³⁾

 - ▶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부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에 상한선이 설정되고 이 상한선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일반적인 배출권 거래의 원칙에 따라 작동함
 - 참여자는 설정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경매 또는 2차 시장에서 잉여의 배출 허용량을 보유한 다른 참여자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 ▶ UK ETS의 규제기관은 영국 환경청(EA), 스코틀랜드 환경보호국(SEPA), 웨일스 천연자원부(NRW), 북아일랜드 환경청(NIEA), 해양 석유 규제기관(OPRED) 등이며, 이들은 배출 계획 준수 보장과 함께 UK ETS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
 - 다만 북아일랜드 발전소의 경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EU ETS를 따름
 - ▶ 항공사 및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설비가 UK ETS의 적용 대상이 됨
 - 항공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 국내선, 영국과 유럽경제지역 혹은 지브롤터 해협 구간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임
 - 설비는 1차 목적이 유해 폐기물 또는 도시 폐기물 소각인 시설을 제외한, 총 정격 열 입력이 20MW를 초과하는 연소 장치가 작동되는 현장에서 연료 연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됨
 - ▶ 2023년 7월 배출권은 2021년 5월 210.76파운드에서 거래가 시작되어 2023년 7월 기준 54.77 파운드로 거래가 종료됨⁵⁴⁾

53) GOV.UK, "Guidance - Participating in the UK E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articipating-in-the-uk-ets/participating-in-the-uk-ets>, 검색일자: 2023. 7. 27.

54) GOV.UK, "Guidance: Taking part in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markets - 6-month monitoring period - CCM trigger prices and monthly average pric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king-part-in-the-uk-emissions-trading-scheme-markets/taking-part-in-the-uk-emissions-trading-scheme-markets>, 검색일자: 2023. 7. 27.

3) 환경세⁵⁵⁾

- ▣ 영국은 산업, 상업, 농업, 공공 행정 및 기타서비스와 같은 부문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조명, 난방 및 전력용 과세 상품에 대해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이하 'CCL')을 부과함

 - ▶ 납세 대상자는 에너지 공급업체나 발전소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이며,⁵⁶⁾ 자선단체나 기타 소비자가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과세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과세 대상에는 전기, 가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가스, 석탄과 갈탄, 코크스(석유 코크스, 세미 코크스 포함) 등이 포함됨
 - ▶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업체에는 기본 부과율이 적용되며,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경우 할인된 요율이 적용됨

〈표 1-11-3〉 기후변화부담금(CCL) 기본 요율

(단위: £/kWh, £/kg)

과세 대상 상품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4. 1.~	2024. 4. 1.~
전기(£/kWh)	0.00811	0.00775	0.00775	0.00775	0.00775
가스(£/kWh)	0.00406	0.00465	0.00568	0.00672	0.00775
LPG(£/kg)	0.02175	0.02175	0.02175	0.02175	0.02175
기타 과세 대상 물품 (£/kg)	0.03174	0.0364	0.04449	0.05258	0.06064

자료: 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https://www.gov.uk/guidance/climate-change-levy-rates>, 검색일자: 2023. 7. 27.

〈표 1-11-4〉 기후변화협약 참여 대상자의 기후변화부담금(CCL) 기본 부과 할인율

(단위: %)

과세 대상 상품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4. 1.~	2024. 4. 1.~
전기	92	92	92	92	92
가스	81	83	86	88	89
LPG	77	77	77	77	77
기타 과세 대상 물품	81	83	86	88	89

자료: 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https://www.gov.uk/guidance/climate-change-levy-rates>, 검색일자: 2023. 7. 27.

55) GOV.UK, "Environmental Taxes Bulletin commentary (June 2023),"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vironmental-taxes-bulletin/environmental-taxes-bulletin-commentary-june-2022#:~:text=With%20effect%20from%201%20April,rate%3A%20%2%A3102.10%20per%20tonne>, 검색일자: 2023. 7. 26.

56) 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https://www.gov.uk/guidance/climate-change-levy-rates>, 검색일자: 2023. 7. 26.

- ▼ 또한 영국은 매립지에 물질 폐기 시 매립지 운영자 및 관리자가 지방 과세당국에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를 납부하며, 세액은 무게에 따라 결정됨
 - ▶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를 비롯한 모든 과세 대상 물질에 톤당 102.1파운드가 부과됨
 - 다만 위험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 가능성이 적은 물질에는 톤당 3.25파운드의 감면 세율이 적용됨
 - ▶ 다만 준설, 채광 및 채석 폐기물, 반려동물 공동묘지, 채석장 매립 및 외국 방문부대로 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됨

- ▼ 이 밖에도 2022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ing Tax: PPT)를 도입함⁵⁷⁾
 - ▶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을 직전 12개월 동안 10톤 이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됨
 - ▶ 2022년 4월 1일부터 1년간은 톤당 200파운드를 부과하였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톤당 210.82파운드를 부과하고 있음

4) 세제혜택

- ▼ 영국은 자동차에 도로세 개념의 차량소비세(Vehicle Excise Duty: VED)를 과세하나, 2021년 4월 6일 이후 등록된 친환경 차량에는 영세율 혹은 감면 세율을 적용함⁵⁸⁾
 - ▶ 온실가스 배출이 전무한 배터리 전기자동차(BEV)는 영세율 대상이 되며, 4만파운드 이상의 차량에 5년간 적용되는 할증 요율 대상에서도 제외됨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첫해에는 0~110파운드를 과세하며, 이후 연도부터는 모두 연 155파운드를 부과함
 - ▶ 다만 이러한 영세율 및 할인된 세율은 2025년부터 변경 예정에 있음⁵⁹⁾

57) GOV.UK, "Guidance: Plastic Packaging Tax: steps to take,"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register-for-plastic-packaging-tax>, 검색일자: 2023. 7. 26.

58) Pod Point, "Road Tax on Electric Cars," <https://pod-point.com/guides/driver/road-tax-on-electric-cars>, 검색일자: 2023. 7. 26.

59) HM Revenue & Customs, "Introduction of Vehicle Excise Duty for zero emission cars, vans and motorcycles from 2025," Policy Paper, 2022. 11.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vehicle-excise-duty-for-zero-emission-cars-vans-and-motorcycles-from-2025/introduction-of-vehicle-excise-duty-for-zero-emission-cars-vans-and-motorcycles-from-2025>, 검색일자: 2023. 7. 26.

다. 독일

- ▶ 독일 연방의회는 2019년 11월 29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기후보호를 위해 「화석 연료배출권거래법(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 BEhG)」 승인과 도입으로, 202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nEHS)⁶⁰⁾를 시행하며 2021년 1월부터 운송 및 난방 분야에 탄소세(또는 탄소배출비, CO₂-Preis)를 부과하고 있음⁶¹⁾

1) 직·간접세

- ▶ 독일 연방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62), 63)}
 - ▶ 총출력이 30kW 이하인 개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입·설치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부여함

2) 탄소세

- ▶ 연방정부는 가정용 난방, 휘발유 등 화석연료에 톤당 25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5유로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55유로, 2026년에는 최소 55유로부터 최대 65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음⁶⁴⁾
 - ▶ 2023년 1월 1일부터 1톤당 5유로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의 제3차 구호패키지(Drittes Entlastungspaket)를 통해 예정된 탄소세 인상을 1년 연기하면서, 차후

60)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DEHSt)), "Nationaler Emissionshandel," https://www.dehst.de/DE/Nationaler-Emissionshandel/nationaler-emissionshandel_node.html, 검색일자: 2023. 7. 21.

61)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CO₂-Bepreisung," 2019. 12. 1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klimaschutz/co2-bepreisung-1673008>, 검색일자: 2023. 7. 21.

62)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Jahressteuergesetz 202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jahressteuergesetz-2022-2125578>, 검색일자: 2023. 7. 23.

63)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Kurz erklärt: steuerliche Förderung für energetische Gebäudesanierung im Eigenheim," <https://www.energiewechsel.de/KAENEFF/Redaktion/DE/Foerderprogramme/steuerliche-foerderung-fuer-energetische-gebaeudesanierung.html>, 검색일자: 2023. 7. 21.

64)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Gebäude und Verkehr beim Klimaschutz stärker in der Pflicht," 2023. 4.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klimaschutz/eu-emissionshandel-1684508>, 검색일자: 2023. 7. 22.

연도별 인상액 또한 1년씩 연기됨^{65), 66)}

- ▶ 2024년부터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EU 배출권거래제 개혁으로 해운업이 EU 배출권 거래에 포함될 예정임
- ▶ 2027년부터 화석연료 사용하는 운송 및 건물 등 특정 산업 부문까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할 예정임

▾ 2022년 11월 연방정부는 기후보호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임대차 간 탄소세 분담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가정 난방을 위한 탄소세(CO₂-Preis)는 임차인만 단독 납부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 상태에 따라 임대인도 탄소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⁶⁷⁾

- ▶ 임대인이 건물에 친환경 난방시스템 설치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 임대인의 비용 부담률이 조정됨
 - 건물 대비 주거 공간 면적 또는 건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함
 -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도시와 지역은 제외
- ▶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 초기에 탄소세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2025년까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입할 예정임

3) 세제혜택

▾ 2020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건물 개조(리모델링) 시 비용의 20%(최대 4만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대상의 부동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거용 부동산이 최소 10년 이상 건축된 건물
- 공제는 3년에 걸쳐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최대 7%(각 최대 1만 4,000유로), 세 번째 해에는 최대 6%(최대 1만 2,000유로)까지 가능

▾ 이 외 연방정부의 3,000억유로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국

65)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Drittes Entlastungspaket, Detuschland steht in einer schwierigen Zeit zusammen," 2022. 7.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drittes-entlastungspaket-2082584>, 검색일자: 2023. 7. 21.

66) 2023년 기준 1톤당 30유로임(2022년 동일)

67)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Faire Aufteilung der CO₂-Kosten," 2023. 1. 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aufteilung-co2-kosten-2043728>, 검색일자: 2023. 7. 24.

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혜택을 부여함⁶⁸⁾

- ▶ 발표된 에너지 경감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세제 지원안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7%로 인하
 - 2023년부터 EEG 부과금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해당 부담금 면제
- ▶ 2022년 근로소득자 에너지보조금 300유로 등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금 200유로를 지급함

라. 프랑스⁶⁹⁾

1) 탄소세

- ▣ 프랑스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소비세(taxes interieures sur la consommation des produits energetiques)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되었음⁷⁰⁾
 - ▶ 2014년부터 유류소비세, 천연가스소비세, 석탄소비세 세율에 탄소세율이 포함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EU ETS 대상 기업과 에너지 집약형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만 적용함⁷¹⁾
 - ▶ EU ETS를 보완할 목적으로 프랑스는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적용 대상은 주로 수송 및 가정 부문임
 - 2014년 탄소세 도입 당시 CO₂ 1톤당 7유로로 책정하였으나 2015년 14.5유로, 2016년 22유로, 2017년 30.5유로, 2018년 44.6유로로 인상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세율의 인상을 통해 CO₂ 1톤당 86.2유로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노란조끼 시위로 인해 탄소세 인상 계획이 철회되었음
 - 이에 2018년 기준 탄소세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68)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Wir entlasten Deutschland,"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 검색일자: 2023. 7. 21.

69) KOTRA, 「프랑스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2. 1. 1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3038, 검색일자: 2023. 7. 18.

70) 정재현·정다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1) 이동규,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세제 발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2. 3.

〈표 1-11-5〉 프랑스의 연도별 탄소세

(단위: 유로/1CO₂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탄소세율	7.0	14.5	22.0	30.5	44.6	44.6	44.6	44.6

자료: 이동규,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세계 발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2. 3.

▣ 2022년부터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가 인상되었음

- ▶ 프랑스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WLTP)을 도입하여 측정된 CO₂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 왔음
 - 2020년까지 138g/km에서 2021년부터 133g/km로 변경된 탄소세 부과 최소 배출량 기준이 2022년에는 128g/km로 엄격해짐
- ▶ 탄소세는 최소 50유로부터 시작하여 223g/km일 경우 최대 4만유로까지 부과됨
- ▶ 2022년부터 중형차 규제를 목적으로 자동차 무게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함
 - 무게 1.8톤 이상부터 kg당 10유로가 부과되고 최대 4만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음

2) 환경세

▣ 2020년 발표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에 의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⁷²⁾

- ▶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은 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도입에 관한 법임
- ▶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로 진행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규제 1단계가 시행되고 있음
 - 1단계 규제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 수지 상자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금지 등에 관한 규제가 시행 중임
- ▶ 재생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환경분담금을 부과(1kg당 0.47유로)함⁷³⁾

72) KOTRA,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1-032, 2021. 10.

73) 『한국일보』, 「프랑스는 플라스틱 줄인 기업에 혜택. 한국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 2022. 5. 2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417220000797>, 검색일자: 2023. 7. 18.

3) 세제혜택

- ▶ (친환경기술 세액공제) 프랑스 정부는 2023. 5. 19.에 2030년까지 친환경기술에 200억 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함⁷⁴⁾

 - ▶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표명함
 - 풍력,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여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임

- ▶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프랑스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⁷⁵⁾

 - ▶ 프랑스는 CO₂ 배출량 기반 보너스말러스 시스템(bonus-malus system)을 통해 산출된 세액을 자동차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보너스말러스는 CO₂ 배출량 및 WLTP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CO₂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한 최대 부과금은 4만유로 수준임
 - ▶ 보너스말러스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BEV, FCEV, PHEV(주행거리 50km 초과) 차량을 제외하고 있음
 - ▶ 프랑스는 2023년 기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Bonus Ecologique)을 지급하고 있음

74) KITA,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2023. 1. 6.,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o=1829939&searchReqType=DETAIL>, 검색일자: 2023. 7. 18.

75) KOTRA, 「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 1. 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NttSn=199825, 검색일자: 2023. 7. 18.

〈표 1-11-6〉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

(단위: 유로)

구분			보조금(유로)	
			개인	법인
신차	승용차	47,000유로 이하(법인: 45,000유로 이하)	5,000~7,000	4,000
		47,000~60,000유로(법인: 45,000~60,000유로)	2,000	2,000
트럭			7,000	5,000
50,000유로 미만 하이브리드 신차 50km 이상 주행가능			1,000	1,000

자료: KOTRA, 「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 1. 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9825, 검색일자: 2023. 7. 18.

- ▶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 배출량 환경점수(Score Environnemental)를 산출하여 최소 점수 이상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⁷⁶⁾
 - 2023년까지는 차량 운행 중의 탄소 배출량만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모든 단계를 환경점수로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강철, 알루미늄, 기타 원재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부터 차량의 중간 가공 및 조립, 배터리 생산, 조립 장소에서 프랑스 유통사까지의 운송 과정 중 배출된 탄소량 전부를 계산함
 - 2024년부터는 전기차일지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일본

1) 탄소세

▣ 일본은 2012년 10월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도입하여 탄소세를 시행 중임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이라는 별도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76) KOTRA, 「프랑스 정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4982

- 「석유석탄세법」상 원유 및 석유제품, 가스상 탄화수소(LPG, LNG), 석탄의 킬로리터 및 톤당 세액을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증액하여 규정함
 - 기존 「석유석탄세법」상 연료별 세율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1킬로리터당 2,040엔, 가스상 탄화수소 1톤당 1,080엔, 석탄 1톤당 700엔임⁷⁷⁾
 - ▶ 「조세특별조치법」상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석유석탄세 세율의 특례에 따른 연료별 세율은 석유제품의 경우 1킬로리터당 2,800엔, 가스상 탄화수소 1톤당 1,860엔, 석탄 1톤당 1,370엔임⁷⁸⁾
 - ▶ 「조세특별조치법」상 연료별 증액된 세액은 화석연료당 CO₂ 배출원 단위를 이용하여 연료별 과세 단위별로 CO₂ 배출량 1톤당 289엔을 부담하도록 설정함
 - ▶ 예컨대 원유, 석유제품의 경우 「조세특별조치법」과 「석유석탄세법」상 세율이 760엔 차이인데, 이는 원유, 석유제품 2.62kg이 1ℓ의 CO₂를 배출한다고 가정하여 CO₂ 톤당 배출액 289엔을 곱한 값임
- ▣ 2012년 시행 이후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3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인상함

〈표 1-11-7〉 단계별 석유석탄세 세율 인상

(단위: 엔)

과세물건	「석유석탄세법」상 세율	「조세특별조치법」상 세율		
		2012년 10. 1.~	2014년 4. 1.~	2016년 4. 1.~
원유, 석유제품(1ℓ당)	2,040	2,290	2,540	2,800
가스상 탄화수소(1t당)	1,080	1,340	1,600	1,860
석탄(1t당)	700	920	1,140	1,370

자료: 일본 환경성, 「地球温暖化対策のための税」について, <https://www.env.go.jp/policy/tax/faq.html>, 검색 일자: 2023. 7. 14., 저자 수정

- ▣ 석유석탄세 과세가 끝난 석유제품 또는 특정용도 석유제품을 201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각각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조자, 채취자, 보세지역 인수자에게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율 특례’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석유석탄세법」에 따른 본칙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함⁷⁹⁾

77) 「석유석탄세법(石油石炭税法)」 제9조

78)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90조의3의2

79)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90조의3의4

- ▶ 환급 대상 석유제품은 다음과 같음
 - 석유석탄세 과세가 끝난 원유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석유제품
 - 채취장에서 이출된 석유석탄세 과세가 끝난 가스상 탄화수소
 -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석유석탄세 과세가 끝난 석유제품
 - 내항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중유
 - 일반여객 정기항로사업용(유람용을 제외)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중유
 - 철도사업용(철도용 차량 동력원의 용도 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우
 - 국내 정기항공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항공기연료
 - 농림어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
 - 가성소다 제조에 사용하는 전기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공급하는 중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⁸⁰⁾
- ▣ 일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석탄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려는 자가 201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세지역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할 때는 인수와 관련된 석유석탄세에 대해 「석유석탄세법」에 따른 본칙세율을 적용함⁸¹⁾
- ▶ 「석유석탄세법상」 세율을 적용받는 용도의 석탄이란 가성소다 제조업에서 가성소다 제조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자가발전용으로 제공하는 석탄 및 이온교환막법에 의한 소금 제조업에서 소금 제조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자가발전용으로 제공하는 석탄을 의미함

2) 세제혜택

가) 탄소중립을 향한 투자 촉진 세제(법인세)⁸²⁾

- ▣ 청색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중 인정 에너지 이용 환경부하 저감사업 적응 사업자인 법인이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일정 설비를 취득, 제작, 건설하고 사업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80) 해당 용도의 경우 2017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급한 부분에 한해 환급함

81) 「조세특별조치법(租稅特別措置法)」 제90조의3의3

82) 일본 국세청, 「No.5925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投資促進税制(生産工程効率化等設備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税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925.htm>, 검색일자: 2023. 7. 17.

- ▶ 인정 에너지 이용 환경부하 저감사업 적응 사업자 법인이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 21조의16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 적응 사업자 중 인정 에너지 이용 환경부하 저감사업 적응 계획상 에너지 이용 환경부하 저감사업 적응 조치로 생산공정 효율화 설비 등의 도입이 있는 법인을 의미함
- ▶ 특별상각 대상 일정 설비란 인정 에너지 이용 환경부하 저감사업 적응 계획에 기재된 효과적인 탈탄소화 효과를 가지는 제품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 등의 탈탄소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양립하는 설비 등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는 화합물 반도체, EV 또는 PHEV용 리튬이온 축전지, 설치용 리튬이온 축전지, 연료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전문 부품 등이 해당됨⁸³⁾
- ▣ 사업 적응 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이 가능함
 - ▶ 탄소생산성이 3년 이내에 7% 이상 향상된 경우 세액공제 5% 또는 특별상각 50%를 적용하며, 탄소생산성이 3년 이내에 10% 이상 향상된 경우 세액공제 10% 또는 특별상각 50%를 적용함
 - 탄소생산성이란 대상 법인의 부가가치액(영업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을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나) 주택 특정 개수 특별 세액공제(소득세)⁸⁴⁾

- ▣ 개인이 자가 소유하는 거주용 가옥에 대해 2014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반 단열 개수공사 등을 실시하고 그 개인이 거주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음
- ▣ 개인이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한 경우, 주택 특정 개수 특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및 일정 면적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함
 - ▶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란 거실 창의 개수공사, 또는 그 공사와 아울러 실시하는 바닥 등의 단열공사, 천장의 단열공사 혹은 벽의 단열공사로, 그 개수 부위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 2016년 기준의 상당 이상이 되는 공사를 의미함

83) 경제산업성 환경경제실, 「エネルギー利用環境負荷低減事業適応計画」, 2022. 4., p. 3.

84) 일본 국세청, 「No.1219 省エネ改修工事をした場合(住宅特定改修特別税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19.htm>, 검색일자: 2023. 7. 18.

- 이러한 공사와 관련한 일정 태양열 이용 냉온열 장치 등 설비의 교체 및 설치에 관한 공사, 태양광 발전 장치 등 설비의 교체 또는 설치에 관한 공사 또한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에 포함됨

▶ 주택 특정 개수 특별 세액공제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자기가 소유하는 가옥에 대해서,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거주용에 제공하고 있을 것
-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일부 6개월 이내에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
- 특별공제 대상 납세자의 합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 공사한 후 주택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이며, 또한,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독점적으로 자기 거주용으로 제공할 것
-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거주용으로 제공한다고 인정되는 주택일 것
-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에 관련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것
- 공사비용의 1/2 이상의 금액이 자기 거주용 부분의 공사비용일 것

▣ 주택 특정 개수 특별 세액공제액은 지출한 비용과 한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

- ▶ 구체적인 공제액은 A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 비용의 10%와 B 1)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 비용 금액 중 1,000만원에서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와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와 아울러 실시하는 증축, 개축 그 외의 일정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과 2)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의 비용 중 작은 금액의 5%를 합한 금액임
- 단, 공사의 비용에 관해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등의 액수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함
- A의 금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 250만원(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350만원)을 한도로 함

바. 캐나다

▣ 파리협정 의무 이행을 위해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협의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임

- ▶ 연방 및 주정부는 세율 인하,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독자적으로 혹

은 연계하여 시행함

1) 직·간접세

▣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청정기술 투자 등 산업 변환을 통해 탈탄소화를 지향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세제도는 아래와 같음

- ▶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 청정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제도 등이 있음^{85), 86)}
 - 무공해 기술을 제조하는 업체(zero-emission technology manufacturers)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함
 - 석유, 가스 및 석탄에 대한 FTSs(flow-through shares) 제도⁸⁷⁾를 폐지함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4가지 방식의 감가상각 제도를 제공함
 - 청정에너지 설비의 자본비용에 대한 즉시상각(immediate expensing)을 허용함
- ▶ (소득세) 사업장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환기비용(ventilation expenses)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음⁸⁸⁾

2) 탄소세

▣ 캐나다는 「온실가스 오염 부담금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에 의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가격(탄소세, 배출권거래제)을 부과하는 국가 탄소가격제를 도입함⁸⁹⁾

85) CRA, "What's new for corporations," 2023. 7. 28.,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whats-new-corporations.html>, 검색일자: 2023. 7. 28.

86) 입법 전이지만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세액공제 제도(청정에너지 및 기술 부문 지원을 위해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제조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 등)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

87) 특정 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FTS를 발행할 수 있고 FTS를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함

88) Government of Canada, "Line 47557 - Air quality improvement tax credit," 2023. 1. 2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7557-air-quality-improvement-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3. 7. 24.

89) Government of Canada, "Update to the Pan-Canadian Approach to Carbon Pollution Pricing 2023-2030," 2021. 8. 5.,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carbon-pollution-pricing-federal-benchmark-information/federal-benchmark-2023-2030.html>, 검색일자: 2023. 7. 21.

- ▶ (탄소세-연료부과금) 휘발유, 경유 등 연료에 생산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함
 - 2023년 탄소세는 1톤당 65캐나다달러이고, 2030년까지 1톤당 170캐나다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탄소세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은 환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이나 투자재원 등으로 사용함
 - 공인된 탄소 가격 시스템(federal carbon pricing backstop)을 운영 중임
- ▶ (배출권거래제) 2030년 배출량을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30% 이상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
 - 퀘벡주가 2013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계하여 연합거래(joint auction)를 시행하기도 함
 - 2023년 3월 31일 현재, 연방정부의 배출권거래제(Canada federal OBPS) 외 일부 주⁹⁰⁾ 정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임

3) 세제혜택

- ▣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⁹¹⁾에 대한 보조금(incentives)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주정부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 (보조금) 연방정부는 2019년 5월부터 iZEV 제도를 통해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최대 5,000캐나다달러(중대형의 경우 200,000캐나다달러)를 보조함⁹²⁾
 - BC주는 CleanBC Go Electric 제도를 통해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최대 4,000캐나다달러를 지원함⁹³⁾
 - 퀘벡주는 The Roulez vert 제도를 통해 무공해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7,000캐나다달러를 지원함⁹⁴⁾
 - 온타리오주는 2018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중단함

90) Alberta,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Quebec, Saskatchewan(THE WORLD BANK,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91)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FCEV)

92) Government of Canada, "Zero-emission vehicles," 2022. 7. 11., <https://tc.canada.ca/en/road-transportation/innovative-technologies/zero-emission-vehicles#/find/nearest?country=CA>, 검색일자: 2023. 7. 21.

93) British Columbia, "Passenger vehicle rebates," <https://goelectricbc.gov.bc.ca/personal-rebate-offers/passenger-vehicle-rebates/>, 검색일자: 2023. 7. 21.

94) Quebec, "Amount of the financial assistance for a new electric vehicle," 2023. 7. 11., <https://www.quebec.ca/en/transport/electric-transportation/financial-assistance-electric-vehicle/new-vehicle/amount-financial-assistance>, 검색일자: 2023. 7. 21.

- ▣ 또한 연방정부는 2023년 7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함⁹⁵⁾
 -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⁹⁶⁾을 폐지하여 배출량 감소와 청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사. 이탈리아

1) 환경세

- ▣ 202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Manufatti Con Singolo Impiego: MACSI)의 소비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할 예정임^{97), 98)}
 - ▶ 이탈리아는 EU 지침의 이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행할 계획임
 - EU 회원국은 일회용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EU에 보고해야 함

95)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delivers on key climate commitment to phase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2023. 7. 24.,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3/07/government-of-canada-delivers-on-key-climate-commitment-to-phase-out-inefficient-fossil-fuel-subsidies.html?fbclid=IwAR0aWBnplFuHVepEy19RDIN9BgLFZ4Fv9aY8fP1m4nhSXXaZQPA-EasO-Fg>, 검색일자: 2023. 7. 25.

96)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함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
 - 청정에너지, 청정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
 - 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 비상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
 - 화석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
 - CCUS과 같이 감소한 공정 또는 넷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 지원

97) *Bloomberg Tax*, "Country Guides, Italy, 9. Other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QP18?criteria_id=394f7d9a1a9f0bb30df77487f5ab69ed&navCriteriaId=2398d94da75a9db41f760dd5c7e6dc00&searchGuid=a2045e49-f488-4971-9891-1dc4e8ebf83f&search32=f_aKOQtLxvpYRlXtZ6AXfQ%3D%3DsDB6hVfEmi1LwB3yAQgNZ5lf-pVXBLXzyyBha6GSPr4bn3TU7yFGbHpw-YzGGfmAfQdUWpZ2T_Jumoyc5_IWidcQlhvLTmZPfnUzu3s7GXQCps6kDrJ50_PgpwKBvAS0S1Swpy_9R002K1yKBjfbYU4lqe_WUghhToFNoeVXjDiidm6Di7Lk0POjgD94OHEbrKNvMn82gz7wwCvyvJ7zboSv3yXcUGJcFHLAdEv2NNTjZ44_XsqbSv_w4DYmTnoscYKoTFEe0eI-Nf-V8Nf1KZih02BEiWf0JoKx5edyiO1iOh1zWaVpWLuj0ip9Fl_2, 검색일자: 2023. 8. 18.

98) IBFD, "Italy - European Union Own Resources and Post-Covid Sustainability: The Italian Plastic Tax in the European Context," 2021. 8. 5.,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t/html/et_2021_09_e2_1.html, 검색일자: 2023. 7. 18.

- 플라스틱세는 이탈리아 2020년 예산안⁹⁹⁾을 통해 도입된 세금으로, 플라스틱세 발효일은 2020년 1월 2일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뒤 2024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되었음
- ▶ 플라스틱세 부과 목적은 과세 수단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일반적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촉진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함임
- ▣ 플라스틱세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제조·수입 업체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임^{100), 101)}
 - ▶ 부과되는 세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재료 1kg당 0.45유로임
 -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퇴비가 가능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의약제제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의로기기 및 포장재, 수출 목적으로 자국 영토를 떠나는 플라스틱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 플라스틱세는 상품 또는 식품의 밀폐, 보호에 플라스틱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적용됨
 - 음료용 컵, PET병, 복합 포장재, 플라스틱 재질의 세제용기, 비닐봉지, 버블랩(완충재), 플라스틱 필름 등에 적용됨
 - ▶ 플라스틱 제품 생산지에 따라 플라스틱세의 납부 대상이 구분됨
 - 이탈리아 자국에서 제조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플라스틱세 납부 대상은 제조업자 또는 국내에 소재한 공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임
 - 제품이 EU 국가에서 온 경우 세금에 대한 책임은 제품 공급 시점의 양도인임
 - 제품이 제3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플라스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내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사람임
 - ▶ 플라스틱세를 미납한 경우 25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납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

99) 「2020년 예산법」 제1조 제634-658항

100) KOTRA,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1-032, 2021. 10.

101) *Bloomberg Tax*, "Country Guides, Italy, 9. Other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QP18?criteria_id=394f7d9a1a9f0bb30df77487f5ab69ed&navCriteriaId=2398d94da75a9db41f760dd5c7e6dc00&searchGuid=a2045e49-f488-4971-9891-1dc4e8ebf83f&search32=f_aKOQTLxvpYRLIXtZ6AXfQ%3D%3DsDB6hVfEmi1LwB3yAQgNZ5lf-pVXBLXzzyBha6GSPr4bn3TU7yFGbHpw-YzGGfAfQdUWpZ2T_Jumoyc5_IWidcQlhvLTmZPfnUzu3s7GXQCps6kDrJ50_PgpwKBvAS0S1Swpy_9R002K1yKBJfbYU4lqe_WUghhToFNoeVXjDiidm6Di7Lk0POjgD94OHEbrKNvMn82gz7wwCvyyJ7zboSv3yXcUGJcFHLAdEv2NNtjZ44_XsqbSv_w4DYmTnoscYKofTEe0eI-Nf-V8Nf1KZih02BEiWf0JoKx5edyi01iOh1zWaVpWLuj0i p9Fl_2, 검색일자: 2023. 7. 17.

- 플라스틱세 납부가 연체된 경우 15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금의 25%가 부과됨

2) 세제혜택

- ▶ 주택 소유자가 친환경 건물로 개조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제도인 2023 Superbonus(Superbonus 90%이라고도 함)가 시행 중임^{102), 103)}
 - ▶ 2020년 도입한 주택 개조 비용의 11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Ecobonus 110%로 인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자 「2023년 예산법」을 통해 공제혜택을 90%로 축소한 2023 Superbonus를 시행함
 - 노후된 주택과 오래된 건물이 많은 이탈리아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친환경 정책임
 - ▶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개조공사를 하여 건물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든 경우 주택개조 비용의 9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조 대상인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함
 - 개조 대상 주택 소유자의 연 소득이 1만 5,000유로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다음 구성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 공제 신청자가 개조 대상 주택의 사용권을 보유하여야 함
 - ▶ 2023 Superbonus에 의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단순 설비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당국인 ENEA 심사를 통해 전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두 단계 이상 개선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함
 - 공제 대상 시공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 설치, 배터리 구동용 차량 충전소 설치 등이 해당함
- ▶ 2023년 기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량 유형에 따라 2,000유로에서 7,500유로까지 지급됨¹⁰⁴⁾

102) ECEEE, "Italy overturns 'superbonus' scheme for housing renovation," 2023. 2. 23., <https://www.eceee.org/all-news/news/italy-overturns-superbonus-scheme-for-housing-renovation/>, 검색일자: 2023. 7. 17.

103) Ticonsiglio, "Superbonus 2023 da 110 a 90%: guida con novità cessione e sconto in fattura," 2023. 7. 12., <https://www.ticonsiglio.com/superbonus-2023/>, 검색일자: 2023. 7. 17.

104) Microsoft Start, "Electric car incentives Italy 2023," <https://www.msn.com/en-ie/money/other/electric-car-incentives-italy-2023/ar-AA13G8CS?li=BBBr5KbJ>, 검색일자: 2023. 7. 17.

- ▶ 전기차의 경우 노후차량 폐차 시 7,500유로가 지급되고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 4,500유로가 지급됨
- ▶ 플러그인 차량(CO₂ 배출량 21~60g/km)의 경우 노후차량 폐차 시 6,000유로가 지급되고 폐차하지 않는 경우 3,000유로가 지급됨
- ▶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차량(CO₂ 배출량 61~135g/km)의 경우 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2,000유로가 지급됨
- ▶ 다만 소득이 3만유로를 초과하는 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노후차량 폐차 시 5,000유로가 지급되고 폐차하지 않는 경우 3,000유로가 지급됨
 - 플러그인 차량(CO₂ 배출량 60g/km 이하)의 경우 노후차량 폐차 시 4,000유로가 지급되고 폐차하지 않는 경우 2,000유로가 지급됨

아. 호주

1) 직·간접세

- ▣ 호주 「소득세법」 Division 30-60 및 31-5에 근거하여,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토지 보존계약(conservation covenant)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⁰⁵⁾
 - ▶ 기부금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호주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환경보전 단체¹⁰⁶⁾임
 - ▶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특정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보존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5천호주달러 이상의 시장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분산하여 공제 가능함¹⁰⁷⁾
 - 보존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순 자본 이득의 50%를 공제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됨

105)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Tax incentives for conservation," <https://www.dcceew.gov.au/environment/biodiversity/publications/tax-incentives-for-conservation>, 검색일자: 2023. 7. 11.

106)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30-55(2)의 표 내 6.2.1, 6.2.12, 6.2.22에 명시된 단체임

107)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nservation covenant tax concess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In-detail/Fundraising/Claiming-conservation-covenant-concessions>, 검색일자: 2023. 7. 11.

- ▶ 이 밖에도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하여 공제 및 감면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함
 - ▶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적격 자산 비용의 20%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⁰⁸⁾
 - ▶ 농업 및 저탄소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29일 이후 승인되거나 발행된 특허에 대해 기존 30%에서 17%의 법인세 감면 세율이 적용됨¹⁰⁹⁾

2) 탄소세

- ▶ 호주는 「Clean Energy Act 2011」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 산업을 포함하는 약 500여 개의 대규모 탄소 배출원에 탄소가격제를 운영한 바 있음¹¹⁰⁾
 - ▶ 탄소가격제 대상 기업은 각 회계연도에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1톤마다 1개의 탄소 유닛 제출 의무가 주어짐
 - ▶ 탄소 유닛의 판매는 청정에너지 규제청(Clean Energy Regulator)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가격은 2012~13년 회기에는 유닛당 23호주달러, 2013~14 회기에는 24.15호주달러로, 고정가격으로 형성됨
- ▶ 탄소가격제 종료 후 호주 청정에너지 규제청은 2015년 8월부터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해 거래가 가능한 호주 탄소 배출권 유닛(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이하 'ACCU') 발행을 시작함¹¹¹⁾
 - ▶ 적격 개인이 사업을 통해 저장하거나 발생을 억제한 이산화탄소 1톤당 1개의 ACCU를 발행함
 - 교토 프로젝트 관련 탄소 저감사업의 경우 교토 ACCU가, 사업이 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교토 프로젝트의 경우 비교토 ACCU가 발행됨

108) 호주 연방정부, *Budget Paper No. 2: Budget Measures 2023-24*, 2023. 5. 9., <https://budget.gov.au/content/bp2/index.htm>, 검색일자: 2023. 7. 11.

109) IBFD, "Australia Announces Tax Breaks and Expansion of Patent Box Regime in Federal Budget for 2022/23," 2022. 3.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30_a_u_1.html,-, 검색일자: 2023. 7. 11.

110) Australian Government - Clean Energy Regulator, "Carbon Pricing Mechanism: About the Mechanism," <https://www.cleanenergyregulator.gov.au/Infohub/CPM/Pages/About-the-mechanism.aspx>, 검색일자: 2023. 7. 11.

111) Australian Government - Clean Energy Regulator, "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https://www.cleanenergyregulator.gov.au/OSR/ANREU/types-of-emissions-units/australian-carbon-credit-units>, 검색일자: 2023. 7. 11.

- ACCU의 발급은 호주 국가 배출 유닛 등록부(Australian National Registry of Emissions Units) 내에 등록된 개인 계정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 ACCU는 개인의 재산이자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며, 호주 등록부 내 계정 간 양도가 허용됨
- 교토 ACCU의 경우, 영연방 국가 내 규제기관과의 탄소 저감 계약을 통해 영연방에 간접적인 판매도 가능함

3) 환경세

- ▣ 호주 국세청은 판매용 상품(Marketable Petroleum Commodities: MPC)의 판매로 이익이 발생하는 자에 대해 석유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를 부과함¹¹²⁾
 - ▶ 원유, 판매용 가스, 액체 탄화수소(condensate), 액화석유가스, 에탄 가스, 셰일 오일 등을 비롯한 판매용 석유상품(MPC)으로 규정된 기타 제품들이 석유자원 임대세 과세 대상이 됨
 - ▶ 현재 공동 사업을 제외한 해상 석유탐사 사업에 적용되며, 육상 석유탐사 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 후 대상에서 제외됨
- ▣ 또한 호주는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적법 폐기물 시설이 수령한 폐기물에 대해 1톤 단위로 지불하는 폐기물 부담금(Waste Levy)을 다수의 주에서 부과하고 있음¹¹³⁾
 - ▶ 폐기물 부과금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및 ACT에서 부과하며, 폐기물의 유형과 관할 구역에 따라 금액이 다양함
 - ▶ 퀸즈랜드와 노던 준주는 폐기물 부과금이 없으며, 테즈메이니아주는 일부 지역에서 톤당 0~5호주달러의 자발적 부과금을 채택하고 있음
 - 다만 퀸즈랜드의 경우 2018년 6월 ‘퀸즈랜드 재활용 및 폐기물 산업 전환(Transforming Queensland’s Recycling and Waste Industry)’ 지침서를 통해 퀸즈랜드의 77개 지방 정부 중 38개 지역에서 톤당 70~150달러 가량의 폐기물 부과금 적용 계획이 있음을 밝힘

112) Australian Taxation Office, “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 <https://www.ato.gov.au/business/petroleum-resource-rent-tax>, 검색일자: 2023. 7. 11.

113) Parliament of Australia, “Waste levies,”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nvironment_and_Communications/WasteandRecycling/Report/c04, 검색일자: 2023. 7. 11.

〈표 1-11-8〉 호주의 폐기물 부담금 시행 주 현황

주	분류	부과금
ACT	도시형 생활 폐기물	90.55AUD/ton
	C&I(건설 및 산업) 폐기물	146.20AUD/ton
	혼합 C&I 폐기물 (재활용 가능 물질 50% 미만)	199.20AUD/ton
뉴사우스웨일스 ¹⁾	대도시 지역	138.20AUD/ton
	소도시 지역	79.60AUD/ton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²⁾	수도권	87AUD/ton
	비수도권	38AUD/ton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³⁾	부패성 폐기물	65AUD/ton
	비활성 폐기물	90AUD/m ³

주: 1) 천연 물질, 분쇄물, 액체 폐기물, 석탄 세척 폐기물 등과 같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율을 적용함
 2) 석면 및 파쇄기 분쇄물에는 할인된 부과금을 적용함
 3) 퍼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퍼스 또는 주 내 다른 지역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경우 부과함
 자료: Parliament of Australia, "Waste levies,"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nvironment_and_Communications/WasteandRecycling/Report/c04, 검색일자: 2023. 7. 11., 내용 저자 정리

- ▣ 이 밖에도 호주에서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승객들은 항공세(Air Passenger Tax)와 유사한 형태의 승객이동 부과금(Passenger Movement Charge: PMC)을 지불해야 함¹¹⁴⁾
 - ▶ 승객이동 부과금은 출발세를 대체하여 1995년 7월 도입되었으며,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 출발 시 60호주달러가 부과됨
 - ▶ 항공의 경우 항공권 판매 시 함께 지불하며, 선박 및 소규모 비행의 경우 호주 국경수비대가 총 승객 수에 대해 항해마다 각 승객 혹은 대리인(선장 등)으로부터 직접 징수함
 - 운송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B700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승객이동 부과금을 직접 지불함

114) Australian Border Force, "Passenger Movement Charge (PMC),"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rossing-the-border/passenger-movement/passenger-movement-charge-\(pmc\)#:~:text=The%20Passenger%20Movement%20Charge%20\(PMC,the%20person%20returns%20to%20Australia](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rossing-the-border/passenger-movement/passenger-movement-charge-(pmc)#:~:text=The%20Passenger%20Movement%20Charge%20(PMC,the%20person%20returns%20to%20Australia), 검색일자: 2023. 7. 11.

4) 세제혜택

- ▶ 2022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배터리 혹은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s Tax: FBT)를 면제함¹¹⁵⁾
 - ▶ 1톤 미만의 화물과 9명 미만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LCT) 대상이 아닌 차량을 대상으로 함
 - ▶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2025년 4월 1일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 이 밖에도 태양광·풍력·수력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 및 소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일부 주¹¹⁶⁾에 마련되어 있음¹¹⁷⁾
 - ▶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적격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이 생산하는 재생 가능 전기량 혹은 감소하는 전기 소비량만큼 STCs(small-scale technology certificates)를 부여받을 수 있음
 - ▶ STCs는 시스템 설치 할인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 설치 업체 등 기관에 할당하거나, 공개 STCs 시장 또는 청산소를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자. 스웨덴

1) 탄소세

- ▶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세계 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ETR)을 단행한 바 있음^{118), 119), 120)}

115)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ic cars exemption," [https://www.ato.gov.au/Business/Fringe-benefit-s-tax/Types-of-fringe-benefits/fbt-on-cars,-other-vehicles,-parking-and-tolls/electric-cars-exemption/#:~:text=You%20do%20not%20pay%20FBT,associates%20\(such%20as%20family%20members\)](https://www.ato.gov.au/Business/Fringe-benefit-s-tax/Types-of-fringe-benefits/fbt-on-cars,-other-vehicles,-parking-and-tolls/electric-cars-exemption/#:~:text=You%20do%20not%20pay%20FBT,associates%20(such%20as%20family%20members)), 검색일자: 2023. 7. 20.

116) ACT, 뉴사우스웨일스, 노던 준주,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17) Energy.gov.au, "Renewable power incentives," <https://www.energy.gov.au/rebates/renewable-power-incentives>, 검색일자: 2023. 7. 11.

118) KOTRA, 「2022년 스웨덴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2. 2. 1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3193, 검색일자: 2023. 7. 21.

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12.

- ▶ 스웨덴 탄소세(Koldioxidsskatt)는 에너지세(skatt på energi)로, 탄소집약적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1991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난방원(석유, 석탄)에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탄소세는 대부분의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 비중이 낮은 가솔린 및 디젤 혼합물에 적용되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일반 가정에 부과되고 있음
- ▶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연소 시 배출되는 예상 CO₂ 배출량(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을 기반으로 하는 추정)을 기반으로 계산됨
 - 탄소세는 1991년 이산화탄소 1톤당 250크로나(25유로)의 세율로 도입된 후 2023년 1,330크로나(122유로)로 인상되었음¹²¹⁾

▾ 스웨덴은 탄소 가격 부과 수단으로 탄소세와 함께 EU ETS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¹²²⁾

- ▶ 스웨덴은 EU ETS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에 참여하는 산업 부문은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음
 -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비제조 부문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제외하고는 탄소세가 면제됨
 - EU ETS에 적용을 받는 화석연료는 산업 부문의 경우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열병합 발전과 지역난방용 연료에 대해서는 할인된 탄소세율이 적용됨
 - 다만 할인된 탄소세율을 적용받는 열병합 발전은 제외함
- ▶ 전력 부문은 산업 부문과 같이 EU ETS의 대상이므로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음
 -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는 비과세되며 전력 소비에 관하여는 1차 에너지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kWh당 전력소비세가 부과됨

2) 환경세

▾ 스웨덴은 탄소세(CO₂ tax) 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유황세(SO₂ tax)와 1992년 질소산화물세(NO_x fee)를 도입하였음

120) 스웨덴 국세청, "Lag (1994:1776) om skatt på energi," 2023. 6. 29.,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2785.html#h-7-kap-Avdrag>, 검색일자: 2023. 7. 21.

121) 스웨덴 정부, "Sweden's carbon tax,"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swedens-carbon-tax/swedens-carbon-tax/>, 검색일자: 2023. 7. 24.

122) 조성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연구: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6.

- ▶ 유황세의 도입 목적은 이탄, 석탄, 코크스, 기타 고체연료의 연소로 인한 SO₂ 배출을 줄이는 것임
 - 고체연료의 경우 유황 kg당 30크로나(2016년 11월 기준), 유류에 포함된 황 함량의 1,000분의 1당 27크로나/kg(2016년 11월 기준)의 세율이 부과되고, 세율은 도입 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황 함량이 중량 기준 0.05% 미만인 연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됨
 - 석회, 석재 및 시멘트 생산용 연료, 임업에서 소다를 회수하기 위해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 선박 및 철도에 사용하는 디젤 및 연료유, 항공연료 역시 과세가 면제됨
 - ▶ 질소산화물세는 고정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 부과를 통해 한계치 이상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임^{123), 124)}
 - 질소산화물세는 열 생산, 폐기물 소각, 금속 제조, 펄프 및 제지, 식품, 목재산업, 화학 생산 등과 같은 공간난방, 전력 생산, 산업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에 적용됨
 - 질소산화물세는 도입 초기 설비용량이 10MW 이상, 연간 50GWh/년 이상 생산하는 모든 연소 발전기에 적용되었으나 1996년부터 설비용량 기준을 폐지하고 40GWh/년 이상 생산하는 발전기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1997년에 기준을 25GWh/년으로 강화함
 - 세율은 모든 유형의 연료에 NO_x 배출 kg당 40크로나로 적용되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50크로나/kg로 인상되었음
 - ▶ 두 세목 모두 규제 대상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에너지 생산 단위당 적은 양의 SO₂ 또는 NO_x를 배출하는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에 따라 수혜를 받고 배출량이 큰 기업은 초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 ▣ 스웨덴은 2020년 5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함¹²⁵⁾
- ▶ 세율은 표준 플라스틱 봉투당 3크로나,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최대 용량이 7리터인 작은 플라스틱 봉투의 경우 봉투당 0.3크로나임

123) 외교부, 「스웨덴 질소세, 실질적 환경개선과 환경혁신 이끌어」, 2014. 1. 31.,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04815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6, 검색일자: 2023. 7. 21.

124) OECD, "The Swedish Tax on Nitrogen Oxide Emissions: Lessons in Environmental Policy Reform," OECD Environment Policy Paper, No. 2, 2013.

125) KPMG, "The new tax on plastic bags," 2020. 3. 4., <https://kpmg.com/se/sv/home/nyheter-rapporter/2020/03/se-news-the-new-tax-on-plastic-bags.html>, 검색일자: 2023. 7. 21.

- ▶ 플라스틱 봉투가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스웨덴으로 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함
 - 스웨덴에서 생산하거나 반입한 플라스틱 봉투의 수가 1회당 40개를 초과하지 않거나 개인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플라스틱 봉투를 스웨덴에 반입한 경우에는 면제됨
- ▶ 스웨덴 재무부는 2023년 4월 28일 플라스틱 봉투에 부과하는 플라스틱세의 감면을 제안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¹²⁶⁾
 - 제안된 세율은 표준 플라스틱 봉투당 0.5크로나, 작은 플라스틱 봉투당 0.05크로나임
- ▣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CO₂를 배출하는 차량에 보상을 주고, 상대적으로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차량에는 처음 3년간 더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bonus-malus system'을 운영해 왔음¹²⁷⁾
 - ▶ 그중 bonus(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2022년 11월 8일 종료되어 현재는 시스템의 malus 부분만 남아 있음
 - ▶ Malus 제도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휘발유 및 디젤 구동 자가용, 버스 등에 적용됨
 - 기본 부과금은 연간 360크로나이고, Malus가 적용되는 모든 차량에 부과됨
 - 2022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가솔린 차량의 경우, 차량이 1km당 75g 이상 125g 이하의 CO₂를 배출하는 경우 CO₂ 1g당 107크로나, 1km당 125g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경우 1g당 132크로나의 이산화탄소 요금이 부과됨
 - 디젤 차량의 경우 위 이산화탄소 요금뿐 아니라 매년 250크로나의 환경추가부담금 및 차량 운행 km당 총 CO₂ 배출량(g)에 13.52를 곱한 유류추가요금이 부과됨

3) 세제혜택

- ▣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 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 기후 보너스(Klimatbonus)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CO₂ 배출량에 따라 1만~7만 크로나 수준의 금액을 보조한 바 있음

126) IBFD,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Tax on Plastic Bags," 2023. 5.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01_se_4.html, 검색일자: 2023. 7. 21.

127) 스웨덴 교통국, "The bonus malus system," 2023. 6. 27. <https://www.transportstyrelsen.se/en/road/Vehicles/bonus-malus/>, 검색일자: 2023. 7. 21.

- ▶ 스웨덴은 기후 보너스(Klimatbonus)를 감축해 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 8일 기준으로 종료되었음
- 2022년 상반기 기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하는 차량의 가격이 70만크로나로 제한되고, 최대 보조금 지급액도 2만크로나로 감소되었으며 제공되는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을 설정하였음
- 2022년 11월 8일 이전까지 기후 보너스 지급 대상 차량을 주문하였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됨¹²⁸⁾

차. 중국

1) 직·간접세

- ▣ (법인세) 중국은 환경보호 관련 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면제혜택과 환경보호를 위한 장비 투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 오염 방지 및 통제 관련 환경보호 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5%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음¹²⁹⁾
 - ▶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실행 이후 최초 이익을 얻은 과세연도 1~3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4년 차부터는 법인소득세를 감면함
 - ▶ 환경보호를 위한 특수장비 구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법인세를 공제함¹³⁰⁾
 - ▶ 저탄소산업 발전 촉진 청정개발체제산업(CDM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배출 감소 이전 수입을 얻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며 4~6년 차까지 법인세를 절반 감면함¹³¹⁾

128) 스웨덴 교통국, "Bonus - till bilar med låg klimatpåverkan," 2023. 5. 17., <https://www.transportstyrelsen.se/sv/vagtrafik/Fordon/bonus-malus/berakna-din-preliminara-bonus/>, 검색일자: 2023. 7. 21.

129) The people's Government of Sichuan Province, 「世界环境保护日」, 2023. 6. 5., <https://www.sc.gov.cn/10462/10778/10876/2023/6/5/4d84ab8014b24435ae7b5633d64f35ee.shtml>, 검색일자: 2023. 7. 11.

130) 상동

131) 국가세무국 광둥성 세무국(国家税务总局广东省税务局), 「支持绿色发展税费优惠政策指引汇编」, 2022. 11. 25., https://guangdong.chinatax.gov.cn/gdsw/mmsw_yhssyshj2022_zcwj_lsss/2022-11/25/content_937fce816c36446ab46b41e9a4f8c205.shtml, 검색일자: 2023. 7. 11.

▶ (부가가치세) 친환경산업인 풍력산업 관련 제품 및 풍력 발전 구입 시 납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두고 있음

- ▶ 자체 생산 풍력 발전 제품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자가 생산 풍력 발전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전력제품 생산 부가가치세 징수 시 50% 환급정책을 두고 있으며 이는 풍력을 이용한 자체 생산 전력제품 판매를 조건으로 함

2) 탄소세

▶ 현재 중국의 탄소세 도입은 논의 중에 있으며 탄소 배출권거래제(CBAM)는 일부 시행 중임

- ▶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배출 규제 회사에 대한 시장 변동을 우려로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거래제(CBAM)의 경우에도 전력산업만 포함하여 시행 중임¹³²⁾
 - 탄소세 도입 시 세율 설정이 핵심 사안으로,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과정이 복잡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3) 환경세

▶ 201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세법률체계에 「환경보호세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 성격에서 세금으로 전환하여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 국가 정책을 강화함¹³³⁾

- ▶ 환경보호를 위해 수수료의 개념에서 세금으로 전환하여 재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18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됐음¹³⁴⁾
- ▶ 기존 하수도 부과 시스템에 불과하던 1979년 하수부담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환경보호 비용 및 세금 개혁 추진’, ‘엄격한 법률 시스템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8년 환경보호 부

1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중국사무소, 「중국환경산업 INSIGHT - 중국 탄소거래 시장현황 및 CBAM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2023. 7. 27., <https://www.ctis.re.kr/en/downloadBbsFile.do?atchmfnfNo=9686>, 검색일자: 2023. 7. 27.

133) 中国政府网运行中心, 「环境保护税法的目的是保护和改善环境」, 2018. 5. 9., https://www.gov.cn/wenzheng/2018-05/09/content_5289511.htm, 검색일자: 2023. 7. 10.

134)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1/n810906/c5157152/content.html>

담금 세제 개혁을 이행하였음¹³⁵⁾

- ▶ 기존 오염배출부과금 제도의 한계를 각계각층에서 지적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개혁은 필연적이었다고 평가됨
 - 이는 환경보호 부담금 성격인 하수도 요금에서 실질 세금의 부과로 환경을 더 보호하려는 영향력을 위함
- ▶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그리고 소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음

〈표 1-11-9〉 「환경보호세법」상 과세 대상 오염물질 및 과세기준

과세 대상 오염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
과세물건	과세 대상 대기오염 물질량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	과세 대상 고형폐기물 배출량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
과세기준	대기오염물질 오염당 3.9위안	오염 환산량 기준 2.8위안	고형폐기물 1톤당 5위안~1,000위안	월 350위안~11,200위안

자료: 四川省人民政府, 「世界环境保护日 | 关于环保的税收政策要点, 一起来看」, 2023. 6. 5., <https://www.sc.gov.cn/10462/10778/10876/2023/6/5/4d84ab8014b24435ae7b5633d64f35ee.shtml>, 검색일자: 2023. 7. 13., 저자 수정

- ▶ 중국의 「환경보호세법」상 납부자는 중국 내 영토와 중국의 관할 기타 해역에서 과세 대상 오염물질을 환경에 직접 배출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임
 - ▶ 오염물질 배출의 주체에게 환경보호세 납부를 부담하여 생활오수와 쓰레기를 배출하는 개인 주민에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 대부분의 생활하수 및 쓰레기의 경우 중앙에서 처리되어 환경으로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임

4) 세제혜택

- ▶ 「환경보호세법」상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물 절약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면세혜택, 신 에너지 차량 및 선박에 대한 세제혜택, 수자원 절약을 위한 세제혜택이 있음¹³⁶⁾
 - ▶ 주요 물 절약 프로젝트 건설 자금 관련 도시 유지 및 건설세 면제, 건설기금 관련 교육비 할증료 면제, 농지 점유세 감면 등의 물 절약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 중임

135) 상동

136)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支持绿色发展税费优惠政策指引」, 2022. 6. 1., https://www.gov.cn/xinwen/2022-06/01/content_5693350.htm, 검색일자: 2023. 7. 12.

- ▶ 신에너지 차량 및 선박의 경우 차량 및 선박세 면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2023년 6월 19일 중국 재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에너지 관련 차량의 경우 최대 3만위안¹³⁷⁾까지 차량 구매세 면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만 5,000위안¹³⁸⁾을 면제할 것을 공고함
 - 해당 감면정책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국세청은 ‘자동차 구매세 감면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음
- ▶ 수자원 절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세제혜택으로는 하수처리 및 재생수 이용에 대한 수자원세 면제, 양수 발전에 대한 수자원세 면제, 원유 생산 배수의 분리정화 후 폐쇄된 관로 재주입에 대한 수자원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 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을 유도 및 장려하기 위해 관련 소비세 면제, 양도세 면제, 환경보호세 면제의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폐동식물유에서 친환경 수송연료인 순수 바이오디젤 생산 시 소비세 면제, 폐광유로부터 생산된 산업용유에 대한 소비세 면제,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을 위해 황무지 및 척박한 해변 사용 시 양도세 면제,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고체 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세 면제 규정을 두어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카. 인도

1) 탄소세

- ▣ 인도는 별도로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대해 탄소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세(GST) 중 석탄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탄소세를 대신하고 있음¹³⁹⁾
- ▣ 인도는 2010년부터 청정에너지세(Clean energy cess)를 석탄에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석탄에 톤당 400루피만큼 상품 및 서비스세를 과세하고 있음¹⁴⁰⁾

137) 2023년 7월 19일 환율 기준 529만 3,800원

138) 2023년 7월 19일 환율 기준 264만 6,900원

139) *Mongabay*, “[Explainer] What is carbon pricing?,” 2022. 5. 18., <https://india.mongabay.com/2022/05/explainer-what-is-carbon-pricing/>, 검색일자: 2023. 7. 21.

140) IISD, “Stories from G20 Countries: Shifting public money out of fossil fuels - STORY 8 The Evolution of the Clean Energy Cess on Coal Production in India,” 2018. 11. 20.

- ▶ 2010년 청정에너지세 도입 당시에는 석탄 1톤당 50루피를 과세하였으나, 2015년 톤당 200루피로, 2016년에는 톤당 400루피로 석탄에 부과되는 청정에너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함
- 이후 2017년 인도 세법상 상품 및 용역세가 도입되면서 청정에너지세가 폐지되고, 청정에너지세에서 과세하던 세율 그대로 석탄에 상품 및 용역세를 과세함

2) 세제혜택

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설비 가속상각¹⁴¹⁾

- ▣ 인도 「소득세법」 Section 32A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존 감가상각률보다 더 높은 감가율로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음
- ▶ 해당 가속상각은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한 설비를 구입한 첫 해 80%의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존 관련 자산에 대한 표준 감가상각률은 20%임
- ▶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태양열 및 태양광 변환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펌프, 물 펌핑 및 기타 응용 분야를 위한 태양광 모듈 및 패널, 풍차 등이 포함됨

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자원 회수 관련 기업 면세¹⁴²⁾

- ▣ 인도 「소득세법」 Section 80JJA에 따라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운영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 전액을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함
- ▶ 해당 조항의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 등과 관련된 사업이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생물 방출성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사업 및 바이오 농축제, 바이오 탄화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제제를 생산하는 사업 등이 해당됨

141) Astrea Legal Associates LLP, "Tax liability for solar power business in India," <https://astrealegal.com/tax-liability-for-solar-power-business-in-india/>, 검색일자: 2023. 7. 21.

142) Taxguru, "Section 80JJA deduction in respect of profits & gains from busin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of bio-degradable waste," <https://taxguru.in/income-tax/section-80jja-deduction-respect-profits-gains-business-collecting-processing-bio-degradable-waste.html>, 2023. 1. 7., 검색일자: 2023. 7. 21.

다) 전기차 구입 대출이자 비용 공제¹⁴³⁾

- ▣ 인도 「소득세법」 Section 80EEB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 개인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 시 최대 15만루피의 공제가 가능함
- ▶ 개인용 또는 업무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출이자 모두 공제 대상이며, 업무용의 경우 15만루피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액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 해당 조항에서 전기자동차란 차량에 설치된 트랙션 배터리에 의해 트랙션 에너지가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전기 모터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고 제동 중에 차량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의미함

143) cleartax, "Section 80EEB of Income Tax Act: Electric Vehicle Tax Exemption, Benefits and Deduction," <https://cleartax.in/s/section-80eeb-deduction-purchase-electric-vehicle>, 2023. 7. 27., 검색일자: 2023. 7. 27.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1 미국

가.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1호]

- ▾ 미국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0일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신고 지침을 발표함¹⁴⁴⁾
 - ▶ 미국 내 원유 및 화학물질, 수입 석유 및 화학물질,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ODC)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및 재고에 대한 세금 부과 지침임
 - 지침은 각 화학물질(ODC 제외)에 대한 세율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는 「내국세법」에 새로 복원(reinstated)된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부과 정보가 제공됨
 - ▶ 2022년 7월 1일 발효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ODC를 제외한 화학물질에 대해 「내국세법」 섹션 4671의 세금을 복원하였음
 - 「내국세법」 섹션 4671은 섹션 4661에서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부과 세액을 준용하고 있음

144) IBFD, "IRS Releases Instructions for Filing Environmental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0_us_5.html, 검색일자: 2023. 1. 17.

〈표 2-1-1〉 복원된 화학물질에 대한 부과 세액 중 일부

화학물질 종류	톤당 부과 세액(USD)
아세틸렌	9.74
벤젠	9.74
에틸렌	9.74
메탄	6.88
염소	5.40
니켈	8.90

자료: 미국 「내국세법」 섹션 4661

- ▶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미국 정유소에서 받은 원유 및 소비·사용 또는 보관을 위해 미국에 반입된 석유제품에 대하여 「내국세법」 섹션 4611의 석유 슈퍼펀드 세율(petroleum Superfund tax rate)을 복원하였음
 - 석유 슈퍼펀드 세율은 유해물질 슈퍼펀드 자금 효율 및 기름유출 책임 신탁기금 조달 효율의 합계로 산출함
 - 위험물질 슈퍼펀드 자금 효율은 배럴당 16.4센트임
 - 기름유출 책임 신탁기금 조달 효율은 2017년 1월 1일 이전 반입된 경우는 배럴당 8센트, 2016년 12월 31일 이후 입고된 경우는 배럴당 9센트임
- ▶ ODC에 대한 「내국세법」 섹션 4681의 세율은 2023년 중 인상이 예고되어 있음

나.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조세동향 23-02호]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2월 7일 국정 연설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를 신설하고 기업주식 환매에 대한 세금을 4배 인상할 것을 제안함^{145), 146), 147)}

145) THE WHITE HOUSE,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 -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2023. 2. 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2/07/remarks-of-president-joe-biden-state-of-the-union-address-as-prepared-for-delivery/>, 검색일자: 2023. 2. 22.

146) IBFD, "President Biden Proposes Billionaire Minimum Tax, Quadrupling Corporate Stock Buyback Tax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23.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8_us_4.html, 검색일자: 2023. 2. 22.

147)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Biden Economic Plan Is Working," 2023. 2. 6.,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3/02/06/>

-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구가 그 외 근로 가구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세법 구조를 지적하며 억만장자 최저한세 제안에 대한 승인을 미 의회에 촉구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상위 400가구의 평균 연방 개인소득세율이 8.2%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71만 5,000가구에 대한 2021년 평균 연방 개인소득세율인 26%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함¹⁴⁸⁾
-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에서 4배 인상을 제안함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 생산에는 소액만을 투자하고, 대신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기업 주주들이 부를 축적한 점을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함
 -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는 경우 자사주 매입 금액에 1%의 특별소비세 부과가 포함되었음
-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번 연설에서 과세의 불공정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부과하는 최저한세의 역할을 강조함
 -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기업 중 55개가 비과세 및 각종 공제를 원인으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음¹⁴⁹⁾을 설명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15%의 최저한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음

다. 2024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3월 9일, 약 6조 8천억달러¹⁵⁰⁾ 규모의 2024회계연도(2023년

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2/06/fact-sheet-the-biden-economic-plan-is-working/, 검색일자: 2023. 2. 22.

148) THE WHITE HOUSE, "What Is the Averag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ate on the Wealthiest Americans?," 2021. 9. 23., <https://www.whitehouse.gov/cea/written-materials/2021/09/23/what-is-the-average-federal-individual-income-tax-rate-on-the-wealthiest-americans/>, 검색일자: 2023. 2. 28.

149) ITEP, "55 Corporations Paid \$0 in Federal Taxes on 2020 Profits," 2021. 4. 2., <https://itep.org/55-profitable-corporations-zero-corporate-tax/>, 검색일자: 2023. 2. 28.

150)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27조 7,600억원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대통령예산안¹⁵¹⁾을 발표함^{152), 153), 154)}

- ▶ 연방의회가 예산안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음

▣ 부자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개인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 상위 0.01% 억만장자(1억달러¹⁵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납세자의 자산증가분에 대해 최소 25%를 부과하는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 도입을 제안함
- ▶ 연소득 40만달러¹⁵⁶⁾ 이상인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함
 -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함
 -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를 3.8%에서 5%로 인상함
- ▶ 100만달러¹⁵⁷⁾ 이상인 투자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gains tax)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이익배당금인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료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르면 성과보수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 37%가 아닌, 자본이득세율

151) 미국의 연방예산 편성 과정은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 상·하원의 예산결의안 채택 → 상·하원의 예산법안 의결 →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며 매년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됨(자료: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미국 의회의 2023회계연도 예산법안」 의결 내용, 2022. 12. 28., <http://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Id=10074670&menuNo=200082&pageIndex=6>, 검색일자: 2023. 3. 14.)

152)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4,” 2023. 3. 9.,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4/>, 검색일자: 2023. 3. 14.

153) IBFD, “President Unveils USD 6.8 Trillion Budget, Wants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o Pay Higher Taxes,” 2023. 3.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0_us_3.html, 검색일자: 2023. 3. 14.

154) *Bloomberg Tax*, “Capital-Gains Tax Nears 45% in Biden’s Plan to Target Ultra-Rich,” 2023. 3. 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4A4SIC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Y2gvcmlldWx0cy82ZGh1ODE0YTMyNmEzY2Y3ODIzZDEyMjI0MTRmZSjdXQ-1cf8d8e3e78101dc45a27c83541e578364fc711b&bna_news_filter=daily-tax-report&criteria_id=6db5814a326a3cf7823d1229a52f14fe&search32=pgZKQShBmVRi8BCUJvvhsw%3D%3D6hsOZ_AgeMqI8xoaD6_-t7r06TJ03Cu6yDQewvVfFaOJK4EX0WJacnPzmGOnsBx-yoApPLIymKORxRXtsTs47o-8iJXJjywnJV_Pw6iKzGDIIIfyUR8NtnDcLUWrmx3JfdostOQnl_gHZXfZYCYQB0ijaiUmES1yo7mR5GZJGqMgtBxBWnrIpHilxQJis, 검색일자: 2023. 3. 14.

155)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300억원임

156)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5억 2,000만원임

157)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원임

20%를 적용할 수 있음

- ▶ 현재 자녀 1인당 2,000달러¹⁵⁸⁾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최고 3,600달러¹⁵⁹⁾로 인상하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자 함

▣ 기업에 대한 증세, 국제조세제도 개편 등 법인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의 인상을 제안함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제정된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에 대한 개별 소비세 세율을 1%에서 4%로 인상을 제안함
- ▶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함
 - 적격사업자산투자(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QBAI)의 면제를 제외함
 - Section 250에 따른 GILTI 공제를 50%에서 25%로 인하함
- ▶ 미국의 국제조세제도 세계개편을 제안함
 -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공제를 폐지함
 - 혼성단체(hybrid entities) 매각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를 제한함

라.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3월 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발표함^{160), 161), 162)}

158)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0만원임

159)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8만원임

160) FEDERAL REGISTER, "Section 30D New Clean Vehicle Credit," 2023. 4. 1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17/2023-06822/section-30d-new-clean-vehicle-credit>, 검색일자: 2023. 4. 17.

161) IRS, "IRS issues guidance and upda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lated to the new clean vehicle critical mineral and battery components," 2023. 3. 31.,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and-updates-frequently-asked-questions-related-to-the-new-clean-vehicle-critical-mineral-and-battery-components>, 검색일자: 2023. 4. 24.

162) IBFD, "US Treasury Department and IRS Propose Regulations on Critical Minerals and Battery Components Requirement of the New Clean Vehicle Tax Credit," 2023. 4.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4_us_5.html, 검색일자: 2023. 4. 17.

- ▶ 신규 구매한 친환경차(new clean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으로 2023년 4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등재 후 4월 18일부터 적용됨
-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차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되어야 함
 - 2023년은 40% 이상이고, 매년 증가하여 2026년 이후 80%에 도달할 예정임
 - ▶ 미국 등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되어야 함
 - 북미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영토로 명시함
 - 차량식별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나 차량에 부착된 라벨(information label)로 최종 조립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¹⁶³⁾
- ▣ 요건을 갖춘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고소득 납세자는 제외됨^{164), 165)}
 - ▶ 핵심 광물(가공)과 배터리 부품(최종 조립) 요건을 모두 갖춘 친환경차를 구매한 경우 7,500달러¹⁶⁶⁾, 하나의 요건만 갖춘 친환경차를 구매한 경우 3,750달러¹⁶⁷⁾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의 소득세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환급 및 이월이 불가함
 - ▶ 조정 후 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 AGI)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AGI가 배우자 합산신고의 경우 30만달러,¹⁶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22만 5,000달러,¹⁶⁹⁾ 이외 15만달러¹⁷⁰⁾ 이상의 납세자는 동 세제혜택에서 제외됨

163) www.FuelEconomy.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 IRS Fact Sheet 2023-08

164) IRS, "Credits for New Clean Vehicles Purchased in 2023 or After," 2023. 4. 17.,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clean-vehicles-purchased-in-2023-or-after>, 검색일자: 2023. 4. 20.

165) 미국 「내국세법」(Title 26) § 30D - Clean vehicle credit

166)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만 5,000원임

167)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6만 8,750원임

168)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756만원임

169)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817만원임

170)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878만원임

마. 국내 콘텐츠 보너스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5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인 ‘국내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를 발표함^{171), 172), 173)}

 - ▶ 이 지침은 2023년 5월 12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시설을 건립하는 발전업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30%와 별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 미국에서 제조, 채굴 또는 생산하는 제조부품과 철강제품을 시설 건립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모듈, 인버터 등 제조부품(manufactured product)은 40% 이상 미국산을 사용해야 함
 - 철강제품은 100% 미국산을 사용해야 함
 - ▶ 2025년 이전 건립을 시작하는 경우 제조부품은 40% 이상 미국산을 사용해야 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55% 이상 미국산을 사용해야 함

바. 정부부채 한도 합의에 따른 국세청 예산 일부 감축

[조세동향 23-06호]

- ▶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6월 3일, 2025년 1월 1일까지 정부부채 한도(Debt Ceiling) 적용을 유예(suspend)하고 정부지출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2023 국가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에 서명함^{174), 175)}

17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partment Releases Guidance to Boost American Clean Energy Manufacturing,” 2023. 5. 1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77>, 검색일자: 2023. 5. 15.

172) *Bloomberg Tax*, “IRS Notice: Domestic Content Bonus Credit Initial Guidance, Intent to Propose Regulations (IRC §45),” 2023. 5. 1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881030d2ffa9cafffbe2bb0003?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3. 5. 15.

173) IBFD, “IRS and Treasury Issue Notice on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for Bonus Credit,” 2023.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5_us_1.html, 검색일자: 2023. 5. 15.

174) THE WHITE HOUSE, “Press Release: Bills Signed: H.R. 346, H.R. 3746,” 2023. 6. 3., <https://www>.

- ▶ 정부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보전과 정부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부채에 대해 ‘법적 한도’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2025년 1월 1일까지 약 2년간 유예함¹⁷⁶⁾
 - ▶ 정부부채 한도 유예를 위해 연방정부는 2년간 재정지출을 삭감하기로 함
- ▣ 이 합의안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편성된 국세청 확대개편 예산 800억 달러¹⁷⁷⁾ 중 약 14억달러¹⁷⁸⁾가 환수될 예정임
- ▶ 연방정부는 국세청 운영지원, 시스템 현대화, 납세서비스 개선, 고소득자 대상 세무 조사 강화 등을 위해 10년간 800억달러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¹⁷⁹⁾ 이 중 일부 삭감할 예정임

사. 저소득커뮤니티 에너지프로젝트 추가 세액공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6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5월 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저소득커뮤니티 에너지프로젝트 추가 세액공제(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함^{180), 181), 182)}

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3/06/03/press-release-bills-signed-h-r-346-h-r-3746/, 검색일자: 2023. 6. 15.

- 175) IBFD, “President Biden Signs Debt Ceiling Bill, Avoiding Catastrophic Default,” 2023. 6.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05_us_2.html, 검색일자: 2023. 6. 15.
- 176) 2023년 1월 19일 정부부채가 법적 한도 31,38조달러에 도달해 국채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 재무부는 관련 기금들의 재투자 중지 등 다수 긴급조치를 시행했고 긴급조치를 통해 소진된 재원으로 보유현금이 고갈되어 연방정부가 지출능력을 상실하는 6월(X-date)이 도래하기 전 정부부채 디폴트를 방지를 위한 합의가 필요함(자료: 국제금융센터(KCIF), 「미국 정부부채 한도 논란 및 전망」, 2023. 2. 14., https://www.kcif.or.kr/annual/reportView?rpt_no=32822, 검색일자: 2023. 6. 23.
- 177) 2023년 6월 26일 현재 기준 104조 5,040억원임
- 178) 2023년 6월 26일 현재 기준 1조 8,288억 2,000만원임
- 179) IBFD, “Biden Signs Inflation Reduction Act with 15% Corporate Minimum Tax, Other Tax Measures,” 2022. 8.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8-17_us_2%23tns_2022-08-17_us_2, 검색일자: 2023. 6. 15.
- 180) Federal Register, “Additional Guidance on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Program,” 2023. 6. 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6/01/2023-11718/additional-guidance-on-low-income-communities-bonus-credit-program>, 검색일자: 2023. 6. 15.
- 181) IBFD, “IRS and Treasury Department Propose Low-Income Bonus Energy Investment Credit Regulations,” 2023.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01_us_1.html, 검색일자: 2023. 6. 15.

- ▶ 이 세액공제는 소외된 저소득커뮤니티에 청정에너지 투자를 유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정에너지 형평성(Equity) 도모를 목적으로 함
- ▣ 태양광, 풍력시설의 투자를 저소득커뮤니티에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30%에 추가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 저소득커뮤니티는 저소득지역(low-income community), 원주민 토지(Indian land), 저소득 주거용 건물(low-income residential building), 저소득 경제혜택 프로젝트(low-income economic benefit project)를 의미함
 - 저소득 주거용 건물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용 임대건물을 의미함
 - 저소득 경제혜택 프로젝트는 해당 청정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총산출량 중 최소 50% 이상 저소득 가구에 분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 추가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음
 - 청정에너지 투자를 저소득커뮤니티에 하는 경우 10%
 - 5MW 이하인 저소득 주거용 건물 프로젝트 등의 경우 20%

2 캐나다

가. 재무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조치 발표

[조세동향 23-01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2년 12월 21일,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를 위해 2022년 가을 경제성명서의 주요 조치가 담긴 Bill-32의 시행을 발표함¹⁸²⁾
 - ▶ 소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기존 15%에서 9%로 인하함
 - ▶ 은행 및 생명보험사 그룹의 10억캐나다달러¹⁸⁴⁾ 이상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일회

182) DOE,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Historic Investments to Support America's Energy and Industrial Communities," 2023. 2. 13., <https://www.energy.gov/articl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historic-investments-support-americas-energy-and>, 검색일자: 2023. 6. 15.

183) IBFD, "Canada Enacts Inflationary Relief: Cuts Taxes for Small Businesses, Eliminates Federal Student Loan Interest, Imposes New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1_ca_2.html, 검색일자: 2023. 1. 17.

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함

- ▶ 은행 및 생명보험사 그룹의 1억캐나다달러¹⁸⁵⁾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5% 인상함
- ▶ 2023년 중반부터 비과세 첫 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신설됨
 -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계좌납입액 중 최대 4만캐나다달러¹⁸⁶⁾에 대해 비과세할 예정임
- ▶ 2023년 1월부터 최대 7,500캐나다달러¹⁸⁷⁾를 공제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개조 공제가 신설됨
- ▶ 2023년부터 부동산을 12개월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100%에 대해 양도세를 적용하게 됨
 - 다만 특정 예외적인 사건(사망, 이혼)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전액 과세 원칙의 적용이 면제됨
 - 캐나다는 부동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해 오고 있었음

나.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UHT) 면제 지침

[조세동향 23-03호]

- ▣ 캐나다 국세청은 2023년 2월 7일, UHT(Underused Housing Tax)의 면제 조항 지침을 발표함¹⁸⁸⁾
 -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실(vacant)이거나 사용률

184)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39억 3,000만원임

185)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3억 9,300만원임

186)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5만 7,200원임

187)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2만 9,700원임

188) *Bloomberg Tax*, "Canada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Exemptions From Underused Housing Tax," 2023. 2. 1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SFIVR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vVzdWx0cy8xOGY0YjE4ZjZmNWFiZTMwMzI2OTI3NDA2ZDNmNmMzNSJdXQ-cab3d386049dda3f5d902f295bbe571e2b458f4d&criteria_id=18f4b18f6f5abe30326927406d3f6c35&search32=3MRQ9mf2hy5puoRkt-0MkQ%3D%3DoRVILFlZbXZ_aHnS9cjPEyOHfek4hoSi_HFfxj-IS4cVUcACfzhRKxaouxtKw9Ckghw8XeBkwwEb65brCqpdPW8IsNFJ0cGsg4cO5Dy6Z-xCymFoCtAroz5U3I1HK0MdKXByQyItGIO5l138OSGS3Y72w4zGFs4rYtnjfRqAGmKZU2V4M33Bwp88ogn2isbF, 검색일자: 2023. 3. 14.

이 낮은(underused) 경우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인 UHT를 부과하고, 이는 캐나다 전역에 적용됨¹⁸⁹⁾

- ▶ UHT 면제 조항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연중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은 면제함¹⁹⁰⁾
 - 재해, 계절, 개조 등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을 뜻함
 - ▶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면제함¹⁹¹⁾
 - 지난 9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거주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기본거주지(primary places of residence)에 대하여 면제함¹⁹²⁾
- ▶ UHT 면제 대상이더라도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유주택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년 3월 28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을 발표함¹⁹³⁾
- ▶ 부자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개인 및 법인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194), 195), 196)}

189) 주택가액(property value)의 1%를 부과함(자료: OECD, *Tax Policy Reform 2022*, 2022. 9. 21., p. 115., <https://www.oecd.org/ctp/tax-policy-reforms-26173433.htm>, 검색일자: 2023. 3. 14.)

190) CRA, "Exemptions for Residential Properties That Cannot be Used Year-round,"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9/exemptions-residential-properties-cannot-used-year-round.html>, 검색일자: 2023. 3. 14.

191) CRA, "Exemption for New Owners,"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11/exemption-new-owners.html>, 검색일자: 2023. 3. 14.

192) CRA, "Exemption for Primary Place of Residence,"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6/exemption-primary-place-residence.html>, 검색일자: 2023. 3. 14.

193)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releases Budget 2023,"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government-of-canada-releases-budget-2023.html>, 검색일자: 2023. 4. 17.

194)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making-life-more-affordable.html>, 검색일자: 2023. 4. 25.

- ▶ 고소득자의 최저한세율(AMT rate)을 15%에서 20.5%로 인상함
 - ▶ 주식양도차익 면제(Capital Gain Exemption)¹⁹⁷⁾ 조건을 강화함
 - ▶ 저소득층에게 상품용역세(GST)를 환급하는 방식(Grocery Rebate)으로 식료품비를 보조함
 - 성인 1인당 최대 153캐나다달러, 어린이 1인당 최대 81캐나다달러임
 - ▶ 종업원주식신탁제도(employee ownership trust: EOT)를 개정함
 - EOT 관련 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하여 준비금(capital gain reserve)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EOT 관련 미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하여 21년마다 실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치과치료정책(Canadian Dental Care Plan)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캐나다 정부와 공유함
- ▣ 청정에너지 및 기술 부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198), 199)}
-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유틸리티, 원주민 공동체 등이 에너지 저장시스템, 송전장비 등에 투자한 자본비용에 15% 세액공제함
 - ▶ (청정기술제조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을 제조하고 중요 광물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투자비용에 30% 세액공제함
 - ▶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15~40% 세액공제함

195) GOVERNMENT OF CANADA, "Stronger Public Health Care,"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ement-finance/news/2023/03/stronger-public-health-care.html>, 검색일자: 2023. 4. 25.

196) IBFD, "Canada's Budget 2023: Personal Tax Measures Increase Alternative Minimum Taxes on High Earners, Restrict Benefits for Intergenerational Share Transfers,"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31_ca_2.html, 검색일자: 2023. 4. 17.

197)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부모 소유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을 자녀의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세대 간 사업 이전) 주식의 양도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임(자료: IBFD, "Rare Private Member Bill Passes Both Houses of Parliament and Receives Royal Assent, Facilitat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and Shares of Family Farm and Fishing Corporations," 2021. 7.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12_ca_1%23tns_2021-07-12_ca_1, 검색일자: 2023. 4. 25.)

198) GOVERNMENT OF CANADA, "A Made-in-Canada Plan: Affordable Energy, Good Jobs, and a Growing Clean Economy,"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ement-finance/news/2023/03/a-made-in-canada-plan-affordable-energy-good-jobs-and-a-growing-clean-economy.html>, 검색일자: 2023. 4. 25.

199) IBFD, "Canada's Budget 2023: Business Tax Measures Support Green Economy,"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3-31_ca_1%23tns_2023-03-31_ca_1, 검색일자: 2023. 4. 17.

- ▶ (법인세율 인하) 무공해 청정기술 제조업체에 법인세 인하를 연장함
- ▾ 국제조세 부분에서는 Pillar 1, Pillar 2의 이행을 중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²⁰⁰⁾
 - ▶ (Pillar 1)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의 수정된 입법 초안을 발표할 계획임
 - 2021년 12월 발표한 입법 초안에 따르면 OECD 협정에 따른 다자간 협약²⁰¹⁾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DST를 부과할 수 있음²⁰²⁾
 - ▶ (Pillar 2)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을 도입하고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을 시행할 계획임

라.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시행 관련 법안 발의

[조세동향 23-05호]

- ▾ 캐나다 하원(The Canadian House of Commons)은 2023년 4월 20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 중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C-47을 발의함^{203), 204)}

200) IBFD, “Canada’s Budget 2023: International Tax Measures Advance Adoption of Pillar One, Pillar Two,”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3-31_ca_4%23tns_2023-03-31_ca_4, 검색일자: 2023. 4. 17.

201) 2021년 10월 Pillar 1 관련 합의에서 2022년에 신속하게 다자간 협약을 수립하고, 2022년 중반까지 서명 절차를 거친 후에 각 국가가 다자간 협약의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일정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부터 다자간 협약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함(자료: OECD,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1. 10.)

2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캐나다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법안 추진』, 2022. 1. 14.,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623>, 검색일자: 2023. 4. 25.

203) Parliament of Canada, “BILL C-47,” 2023. 4. 20.,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1/bill/C-47/first-reading>, 검색일자: 2023. 5. 15.

204) *Bloomberg Tax*, “Canada Lower House Considers Bill to Implement Budget Tax Measures Tabled in March,” 2023. 5. 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2AH849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lvdWw0cy82YjQwZGZlODY2NzI3ZDQ3M2I5ZThkNDliMDQ5ZWZlYSJldXQ--e44182d74ad844c685b5c8795c258550a2d8e33a&criteria_id=6b40dfe866727d473b9e8d49b049eaca&search32=VgztsRxFuX4a14hqROFjcg%3D%3DyxpvcwC4xEtm5rqVeH0pngcLTwqawgwkmZs8GmYcZyVAONivPB8jmaxtusFAH0YVB9PBjVzruX0QiFTbwBn22PRpLCZ6Zje374jEOROy_TizCsULKPSM_7366Ii5rDpsSFbnH-8Utlcfy_5czu6q2v0erL-sJK_POi0m8bvLjN6fSdfQ-wfv1uRseVX47OQ, 검색일자: 2023. 5. 15.

▣ 조세와 관련한 법안은 다음과 같음

- ▶ 세무사가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소득신고서에 전자신고의무를 부여함
- ▶ 기술노동자의 도구 구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deduction for tradespeople's tools) 한도를 500달러²⁰⁵⁾에서 1,000달러²⁰⁶⁾로 상향 조정함
- ▶ 캐나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처분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 BCST(Band Class Settlement Trust) 신탁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을 면제함
 - 2023년 1월 18일 체결한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 관련 분쟁합의서(the Settlement Agreement)에 따른 소득을 의미함
- ▶ 디지털화폐 채굴(digital currency mining)에 대하여 GST/HST 과세 제외함
-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와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함
- ▶ 치과치료정책(Canadian Dental Care Plan)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캐나다 정부와 공유함
- ▶ OECD 지침에 따른 디지털플랫폼 보고규칙을 구현함

205) 2023년 5월 24일 기준 48만 7,330원임

206) 2023년 5월 24일 기준 97만 4,820원임

II 유럽

1 영국

가. 이전가격 관련 자료 보관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조세동향 23-01호]

- ▣ 영국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 이전가격 관련 자료 보관(Transfer Pricing Records Regulations 2023)’ 규정안(draft)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음²⁰⁷⁾, ²⁰⁸⁾

 - ▶ 규정안에 따라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은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보관해야 함
- ▣ 그뿐만 아니라 이번 규정안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은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에 수반된 각 절차들을 포함하는 요약 감사 추적(Summary Audit Trail: SAT)을 구비해야 함

 - ▶ 요약 감사 추적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을 것임
- ▣ 의견수렴 절차는 2023년 1월 31일에 종료 예정임

207) HMRC, “Draft regulations: The Transfer Pricing Records Regulations 2023,” 2022. 12. 21.,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raft-regulations-the-transfer-pricing-records-regulations-2023>, 검색일자: 2023. 1. 16.

208)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Publishes Draft Transfer Pricing Record-Keeping Legislation, Seeks Public Input,” 2022. 1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uk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나. 강제보고규정 의회 통과

[조세동향 23-02호]

- ▾ 2023년 1월 17일,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이 영국 의회를 통과함²⁰⁹⁾

 - ▶ 이에 따라 영국의 MDR 규정(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Disclosable Arrangements) Regulations 2023)이 2023년 3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DAC6 규정을 대체하게 됨
- ▾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체결되는 약정은 DAC6 규정이 아닌 MDR 규정에 따라 영국 국세청(HMRC)에 보고되어야 함²¹⁰⁾

 - ▶ 역외 약정(cross-border arrangement)이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²¹¹⁾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이거나 불투명한 역외구조(Opaque Offshore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되어야 함
 - ▶ 단, 해당 약정이 이미 보고된 적이 있거나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는 경우 보고의무에서 면제됨
 - ▶ 보고 대상 약정이 이용가능하거나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함

다. 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23년 3월 15일, 2023년 예산안(Spring Budget 2023)을 발표함^{212), 213)}

209) HM Revenue & Customs, "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 Policy Paper, 2023. 1.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ndatory-disclosure-rules/mandatory-disclosure-rules-mdr>, 검색일자: 2023. 2. 20.

210)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Clarifies Mandatory Reporting of Cross-Border Arrangements," 2023. 2.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6_uk_1.html, 검색일자: 2023. 2. 20.

211)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이란 OECD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임

212)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Policy Paper,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3>, 검색일자: 2023. 3. 16.

- ▶ 이번 예산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투자비용 즉시공제 제도 도입, 연금 면세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법인세율을 2023년 4월 1일부터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함²¹⁴⁾
 - ▶ 25%의 법인세율은 순이익(profits)이 25만파운드²¹⁵⁾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 정부는 실제 25%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힘
 - 순이익 5만파운드²¹⁶⁾ 이하의 기업에는 19% 법인세율을 적용함
 - 순이익 5만파운드 초과~25만파운드 이하의 기업에는 감면 조치를 두기로 함
 - ▶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함
- ▣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를 도입하여, 적격 플랜트 및 기계설비(qualifying plant and machinery)에 신규 투자할 경우 당해 연도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함^{217), 218)}
 - ▶ 이에 따라 기존 적용하던 ‘슈퍼공제(Super-deduction)’ 제도는 2023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며, 이를 2023년 4월 1일부터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로 대체함
 - 슈퍼공제(Super-deduction) 제도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신규 플랜트 또는 기계설비 도입 시 해당 비용의 13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임
 - ▶ 즉시공제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할 예정이나, 영국 정부는 향후 이를 영구적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 또한, 특례공제율군(Special rate pool)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에 적용하는 50% 초년

213) IBFD, “United Kingdom - Confirmation of Corporate Profits Tax Hike, Abolition of Lifetime Allowance Headline 2023 Spring Budget,” 2023.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5_uk_3.html, 검색일자: 2023. 3. 16.

214) GOV.UK., “Spring Budget 2023 speech,”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budget-2023-speech>, 검색일자: 2023. 3. 20.

215)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900만원임

216)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80만원임

217) GOV.UK., “Spring Budget 2023 - Full expensing,”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ull-expensing/spring-budget-2023-full-expensing>, 검색일자: 2023. 3. 20.

218)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Introduces Full Expensing Capital Allowances, Notes Other Business Tax Changes as Part of 2023 Spring Budget,” 2023. 3.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6_uk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도 공제(50% first-year allowance)는 3년 연장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 2023년 4월 6일부터 개인의 연간 연금적립액 면세기준(Pension contribution annual allowance)을 4만파운드²¹⁹⁾에서 6만파운드²²⁰⁾로 상향 조정함
 - ▶ 경제활동인구, 특히 전문직의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에 따라 개인은 기존 4만파운드에서 6만파운드까지 개인의 연금펀드에 면세로 불입할 수 있게 됨
- ▶ 유류세(Fuel duty)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예정이며, 주세(Alcohol duty)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인상 예정임

라. 탄소국경제도 의견수렴 절차 진행

[조세동향 23-04호]

- ▶ 영국은 2023년 3월 3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221), 222)}
 - ▶ CBAM 적용 대상 산업의 기업 및 관련 제품 수입업체뿐 아니라 학계, 비정부조직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 이번 의견수렴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진행 예정임
- ▶ CBAM은 영국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경우 초과분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형식으로 부과하게 됨²²³⁾
 - ▶ 영국 정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CBAM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자 함
 - 영국 정부에 따르면 CBA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시멘트, 화학제품,

219)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87만원임

220)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81만원임

221)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Consults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3. 4.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3_uk_1.html, 검색일자: 2023. 4. 17.

222) GOV.UK., "Addressing carbon leakage risk to support decarbonisation,"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ddressing-carbon-leakage-risk-to-support-decarbonisation>, 검색일자: 2023. 4. 17.

223) Paez, Sarah, "U.K. Government Consults on Introducing a CBAM," *Tax Notes International*, Vol. 110, 2023. 4. 3., p. 114.

- 유리, 철강, 비철금속(nonferrous metals), 종이 및 펄프, 정제(refining), 비료(fertilizer), 발전(power generation)이 있음
- 또한 현행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이 아닌 농업 또는 목재와 같은 분야가 포함될 경우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 영국 정부는 CBAM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 영국은 2026년 CBAM의 초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산업용 탄소 배출의 3분의 2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90% 감축을 목표로 함
- ▣ 한편, EU는 지난 2022년 12월,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임²²⁴⁾
- ▶ EU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임

2 독일

가. 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 감면 협의 체결

[조세동향 23-01호]

-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12월 29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독일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 변경에 따라 독일-스위스 간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의 원천징수세 세액을 경감하는 새로운 절차에 합의하였음^{225), 226), 227)}

2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1호」, 2023, p. 20.

225)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_n/Internationales_Steuerrecht/Staatenbezogene_Informationen/Laender_A_Z/Schweiz/2022-12-29-konsultationsvereinbarung-betreffend-das-verfahren-zur-entlastung-von-im-abzugswege-einbehaltenen-deutschen-steuern.html, 검색일자: 2023. 1. 30.

226)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5_de_2.html, 검색일자: 2023. 1. 31.

227) 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auf dem Gebiete der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Vermögen (DBA Schweiz): 독일-스위스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 분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 ▶ 2022년 12월 19일 독일과 스위스는 독일 원천징수세 경감을 위해 독일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사용료(저작권료 등)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청하여 환급 또는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²²⁸⁾ 상황을 통해 원천징수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함
- ▶ 독일의 원천징수세 공제신청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상환신청 및 공제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협약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²²⁹⁾

나. 「2022 연간세법」 최종 승인

[조세동향 23-01호]

- ▣ 독일 연방의회(Bundesrat)는 2022년 12월 16일 「연간세법(Jahrsteuergesetz)」²³⁰⁾을 승인하여 2023년부터 연금의 세액공제, 특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률 인상 관련 법률이 적용됨²³¹⁾
- ▶ 2023년부터 법정연금(Rürup) 가입자 중 연금납입액(연금소득) 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연금 수령자의 연금 지급 시에만 과세됨^{232), 233)}
 - 연방재무부는 연금의 이중과세 방지 조치로 인해, 2023년 약 32억유로, 2024년에는 18억유로의 세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함²³⁴⁾
- ▶ (태양광 발전기 면세) 2023년부터 민간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출력이 최대 30kWp인 발전 시스템의 매입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²³⁵⁾
- ▶ (주거용 건물 감가상각)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정액 감가상각률이 기존

228) Germany - Switzerland Income and Capital Tax Treaty § 28

229) 독일 연방국세청, <https://www.bzst.de/DE/Unternehmen/Abzugsteuern/Abzugsteuerentlastung/abzugsteuerentlastung.html#js-toc-entry4>, 검색일자: 2023. 1. 30.

230) 「연간세법(Jahrsteuergesetz)」이란 법률을 개정하는 독일의 독특한 입법 형식으로, 유사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조항법률(Artikelgesetz)의 일종임

231) 독일 연방재무부(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1. 17.

232) 독일 연방재무부(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Rentenbesteuerung/rentenbeitraege-ab-2023-voll-absetzbar.html>, 검색일자: 2023. 01. 17.

233) 「연간세법(Einkommensteuergesetz(EStG))」 § 10

234) 2023년 2월 6일 기준 약 4조 3,046억원, 약 2조 4,213억원임

235) 독일 연방재무부(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Einkommensteuer/20211029-gewinnerzielungsabsicht-bei-kleinen-photovoltaikanlagen-und-vergleichbaren-blockheizkraftwerken.html, 검색일자: 2023. 1. 17.

2%에서 3%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감가상각률은 2023년 1월 1일 완공된 건물부터 적용함^{236), 237)}

다.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동향 23-02호]

- 2022년 2월 14일 연방재무부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UStAE」) 개정을 발표함^{238), 239)}

 - ▶ 새로 개정된 법령안에는 공법에 따른 기관 또는 체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UStG)」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
 - 관련 조항(제18조)의 ‘복지시설(Wohlfahrtseinrichtungen)’의 명칭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밀접한 서비스(Eng mit der Sozialfürsorge und der sozialen Sicherheit verbundene Leistungen)’로 개정하며 면제 범위를 확장 및 구체화함
 - ▶ 「부가가치세법(UStG)」의 ‘사회보장과 밀접한 서비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 및 기념물 보존, 스포츠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식사배달 서비스(Menüservices)²⁴⁰⁾’, 법률 서비스, 기타 일반적인 관리 서비스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장소에서 필요로 인해 정액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노숙인을 위한 보호소 운영 등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에 해당함

236) 「연간세법(Einkommensteuergesetz(EStG))」 § 7 Absetzung für Abnutzung oder Substanzverringering
 237) 독일 연방재무부(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1. 31.
 238) 독일 연방재무부, “Umsatzsteuerbefreiung für eng mit der Sozialfürsorge und der sozialen Sicherheit verbundene Leistungen,” 2023. 2. 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2023-02-14-umsatzsteuer-befreiung-fuer-eng-mit-der-sozialfuersorge-und-der-sozialen-sicherheit-verbundene-leistungen.html, 검색일자: 2023. 2. 21.
 239)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UStG))」, §4 Steuerbefreiungen bei Liefer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검색일자: 2023. 2. 27.
 240) 식사배달 서비스(Menüservices)는 노인 및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식사배달 서비스임

라. 연구기관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설립

[조세동향 23-02호]

- ▣ 2023년 2월 7일 연방재무부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통일된 규정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UStAE」) 조정을 발표함²⁴¹⁾

 - ▶ (배경) 2021년 11월 30일, 연방감사원은 연구기관이 상업적 및 비상업적 부분에 따라 어느 정도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공제를 일관적이지 않게 평가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의 통일화를 요구함²⁴²⁾
 - ▶ 이에 2023년 2월 7일, 연방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UStAE)」에 연구기관의 기업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연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 (매입세액 공제) 기존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비상업적 부분)을 별도로 정하여 과세하는 대신, 총사업비용을 입증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기업적 영역) 연구기관 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정해진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비상업적으로 인정하는 등 상업적 영역과 비상업적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도입함

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세대책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2023년 2월 27일 독일 재무부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조세대책(Steuerliche Maßnahmen)을 발표함^{243), 244)}

241) 독일 연방재무부, “BMF-Schreiben vom 7. Februar 2023 zur Gewährung von Forschungszulage nach dem 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Forschungszulagengesetz - FZulG),” 2023. 2. 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Forschungszulagen/2023-02-07-gewaehrung-von-forschungszulage-nach-dem-gesetz-zur-steuerlichen-foerderung-von-forschung-und-entwicklung.html, 검색일자: 2023. 2. 20.

242) Bundesrechnungshof, “Steuerausfälle verhindern - Vorsteuerabzug bei Forschungseinrichtungen endlich einheitlich regeln,” 2021. 11. 30., <https://www.bundesrechnungshof.de/SharedDocs/Downloads/DE/Berichte/2021/einheitliche-regelung-vorsteuerabzug-forschungseinrichtungen-volltext.html>, 검색일자: 2023. 3. 6.

243) Bundesfinanzministerium(BMF), “Steuer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Opfer des Erdbebens

- ▶ 이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조세대책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조치에만 적용함
 - 국내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의 모금된 기부금 증빙서류(비과세 증빙)를 간소화하고, 비영리단체 또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음
 - (후원비용)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기관 및 법인의 후원비용은 사업비 공제가 가능함
 - (소득세) 지진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시 최대 600유로까지²⁴⁵⁾ 면세되고, 해당자의 소득 및 상황 등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초과분도 예외적으로 면세할 수 있음
 - (부가세) 지진 피해자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의 경우 매입세액²⁴⁶⁾을 공제함
 - (증여세) 지진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 자선 목적으로 증여 시 해당 증여세를 면세함

바. 「미래금융법」(자본시장 강화·자금조달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독일 재무부는 2023년 4월 3일, 미래 확보를 위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법안(「미래금융법(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을 발표함^{247), 248)}
- ▶ 연방내각은 2022년 7월 27일, 연방정부의 ‘스타트업 전략(Start-up Strategie)’을 채택

in der Türkei und in Syrien,” 2023. 2.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Abgabenordnung/2023-02-27-steuerliche-massnahmen-zur-unterstuetzung-der-opfer-des-erdbebens-in-der-tuerkei-und-in-syrien.html, 검색일자: 2023. 3. 17.

244) IBFD, “Ministry of Finance Notes Tax Measures to Support Victims of Earthquake in Türkiye and Syria,” 2023. 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8_de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245) 2023년 3월 20일 기준 83만 7,852원임

246) 해당 매입세액은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UStG))」 § 15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함

247)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ntwurf eines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 (Zukunftsfinanzierungsgesetz - ZuFinG),” 2023. 4.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VII/20_Legislaturperiode/2023-04-12-ZuFinG/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248)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Zukunft finanzieren,” 2023. 4.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Start-ups/zukunf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하며 린드너(Lindner) 연방재무장관이 「미래금융법(ZuFinG)」의 도입과 주요 요점을 발표하였음²⁴⁹⁾

- ▶ 2023년 4월 3일 법안 초안을 발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함²⁵⁰⁾
- ▶ 발표된 초안의 세제 측면 주요 내용은 종업원 주식 면세혜택 확대 및 대체투자펀드(AIF) 운용의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가 있음²⁵¹⁾
 - 「소득세법」 개정) 종업원 주식 소유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1,440유로²⁵²⁾에서 5,000유로²⁵³⁾로 인상함
 - 500명 미만 종업원 및 연간 매출액 1억유로 이하인 기업에 주식 과세이연을 연장하여 해당 조항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투자법」 개정) 기존의 유럽연합 공모 펀드기준(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에 준하는 대체투자펀드에만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면제혜택²⁵⁴⁾의 범위를 확대하여 독일 「투자법(Kapitalanlagegesetz-buchs)」 내 모든 대체투자펀드의 운용으로 면세혜택을 확장할 계획임²⁵⁵⁾
- ▶ 세제 측면을 제외한 해당 법안의 기타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기업공개(IPO) 규제요건 변경, 성장기업·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기명주식 도입 등이 있음
 - 기업공개(IPO) 최소 자본금을 125만유로²⁵⁶⁾에서 100만유로²⁵⁷⁾로 낮춤
 - 성장기업 및 스타트업은 복수의결권(Mehrstimmrechten) 주식을 허용하여 소수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이 보완될 예정임
 - 전자증권을 통한 주식 발행과 가상자산(Kryptowerten)의 이동성을 검토함

249)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Start-up Fahrplan steht: Kabinett beschließt erste umfassende Start-up-Strategie," 2022. 7.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27-start-up-fahrplan-steht.html>, 검색일자: 2023. 4. 25.

250) 독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 (Zukunftsfinanzierungsgesetz - ZuFinG)," 2023. 4. 12., <https://www.bmj.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Zukunf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251)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ZuFinG)(「미래금융법」 초안)," 2023. 4. 12.

252) 2023년 5월 3일 기준 212만 5,987원임

253) 2023년 4월 26일 기준 733만 7,450원임

254) 「부가가치세법(UstG)(Umsatzsteuergesetz) § 4 Steuerbefreiungen bei Liefer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255) 타 EU 회원국들(룩셈부르크 등)이 모든 대체투자펀드(AIF)의 운용을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래금융법」의 도입으로 독일 법률을 다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256) 2023년 4월 26일 기준 18억 3,743만원임

257) 2023년 4월 27일 기준 14억 6,973만원임

사. EU 국가별 소득세 정보공개 지침 도입을 위한 법안 승인

[조세동향 23-05호]

- ▶ 독일 연방의회(Bundstag)는 2023년 5월 10일 유럽연합의 소득세 정보공개 관련 지침 시행을 위한 소득세 정보공개(국가별 정보공개, Offenlegung von Ertragssteuerinformationen) 법안을 통과시켰²⁵⁸⁾

 - ▶ 2022년 12월 7일 연방내각(Bundeskabinett)은 소득세 정보공개(국가별 공개 보고)에 관한 법률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²⁵⁹⁾
 - ▶ 위 지침²⁶⁰⁾은 유럽연합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일정 규모의 자회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정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매출액 7억 5,000만유로²⁶¹⁾ 이상(최근 회계연도 연속)인 경우 특정 소득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비유럽연합 회사가 법률을 준수하는 소득세 정보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가 유럽연합에 하나 이상의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공개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 ▶ 2023년 6월 22일까지 독일 내 법률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득세 정보 보고의무는 2024년 6월 2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임
 - ▶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25만유로²⁶²⁾의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 예정임

258)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Zukunft finanzieren," 2023. 4.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Start-ups/zukunf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25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Kabinett beschließt Gesetzentwurf zur Veröffentlichung länderbezogener Ertragsteuerinformationen von multinationalen umsatzstarken Unternehmen und Konzernen," 2022. 12. 7., https://www.bmj.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1207_Ertragssteuer.html, 검색일자: 2023. 5. 17.

260)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1/2101 im Hinblick auf die Offenlegung von Ertragsteuerinformationen durch bestimmte Unternehmen und Zweigniederlassungen sowie zur Änderung des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es und des Pflichtversicherungsgesetzes」

261) 2023년 5월 17일 기준 1조 920억 9,000만원임

262) 2023년 5월 23일 기준 3억 5,560만 7,500원임

3 프랑스

가. DAC7 관련 시행령 입법 및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1호]

- ▣ 프랑스는 2022년 12월 28일, DAC7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세일반법」 제 1649terA조의 구체적인 절차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 ▶ 시행령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를 위한 절차 내용을 규정함²⁶³⁾
 -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된 제3자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함
 - 보고 대상은 플랫폼 운영자의 신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각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의 신원(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EU 회원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추가 정보) 등임
 -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 프랑스는 EU DAC7을 「조세일반법」 제1649terA조로 입법하였음²⁶⁴⁾
 - DAC7은 EU 과세행정협력지침(2021/514)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정보 보고의무를 다루고 있음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침을 내국 법령으로 입법할 의무가 있었음
 - 「조세일반법」 제1649terA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1일, 플랫폼 운영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 관련 지침을 발표함²⁶⁵⁾

263) Légifrance, “Décret n° 2022-1661 du 26 décembre 2022 relatif aux obligations déclaratives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s de mise en relation par voie électroniqu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820108>, 검색일자: 2023. 1. 25.; IBFD, “France Issues Details on DAC7 Declaration,” 2022. 1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8_fr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264) EUR-Lex, “Council Directive (EU) 2021/514 of 22 March 2021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21L0514>, 검색일자: 2023. 1. 25.

265) BOFIP, “INT - Accords et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 - Obligations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de mise en relation par voie électroniqu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742-PGP.html/identifiant=BOI-INT-AEA-30-20230111>, 검색일자: 2023. 1. 18.; IBFD, “Tax Authorities Publish Guidelines on DAC7 Rules,” 2023. 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

- ▶ 지침은 DAC7 규정의 범위, 플랫폼 운영자들의 보고에 적용되는 적법 절차, 플랫폼 운영자들의 보고에 적용되는 의무, 보고 절차를 명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음
- ▶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회원국을 프랑스 과세관청에 통지하고, 프랑스 내에서 이뤄진 영업 활동을 등록하기 위하여 특정 EU 회원국의 플랫폼 운영자들은 특정한 형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일 이전의 거래 및 2023년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경우, 기존의 「조세일반법」 제242bis조의 보고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함

나.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프랑스 국세청은 2023년 5월 3일, 신규 혁신기업(jeunes entreprises innovantes)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및 대상 범위 요건 등 세법 개정 관련 행정원칙을 담은 지침을 발표함²⁶⁶⁾
 - ▶ 지침은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²⁶⁷⁾
 -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기존 신규 혁신기업의 해당 요건은 운영기간 11년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8년 적용으로 개정함
 - ▶ 신규 혁신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은 운영기간의 개정을 제외하고 동일하며, 신규 혁신기업은 연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 면제됨
 - 신규 혁신기업의 요건은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매출이 5,000만유로²⁶⁸⁾ 또는

023-01-12_fr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266) Bloomberg Tax, "France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Extension, Amendment of Tax Exemptions for Young, Innovative Companies," 2023. 5. 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FCSPiP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VzdWx0cy8yZjRlNGU2YTJvMDdmNDJlMTg1NDdjOTgyN2IzODBkZSjdXQ--e7cdae50ecf9277a86a9c88785b503b9ec529b6f&criteria_id=2f4e4e6a5c07f42e18547c9827b380de, 검색일자: 2023. 5. 15.

267) bofip, "03/05/2023 : BIC - IF -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 et jeunes entreprises universitaires - Prorogation des exonérations fiscales et réduction de la condition relative à l'âge de l'entreprise (loi n° 2022- 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art. 33),"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851-1-PGP.html/ACTU-2023-00046>, 검색일자: 2023. 5. 19.

268) 2023년 5월 31일 기준 월화 환산 시 약 708억 8,700만원임

- 총자산이 4,300만유로²⁶⁹⁾ 이하이며, 운영기간은 8년 이하로, 기존 기업구조 재편 또는 집중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적어도 비용의 15%는 R&D에 투자하여야 할 것 등임²⁷⁰⁾
- 신규 혁신기업이 설립 후 첫 수익을 낸 연도에는 수익의 100%를 면제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50% 면제함

다. 조세회피 대응 신규 조치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프랑스 공공회계부(Ministère Chargé des Comptes Publics)는 2023년 5월 9일,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5개년 계획임
 - ▶ 조세회피 대응 신규 조치로 이전가격 문서 제출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무형자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부과제척 기간 연장, 조세회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²⁷¹⁾
 - 이전가격 문서 제공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현재 4억유로²⁷²⁾인데, 그 기준을 낮추어 의무 부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개정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무형자산의 국외 이전은 기존 3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개정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조세회피 납세자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도입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모든 세액공제를 거부함
 -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조세회피를 다루는 인력을 확충하며, 특별 세무조사팀을 구성하고, 국제적 조세 투명성 행동에 협력함²⁷³⁾

269)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9억 6,280만원임

270) 프랑스 「조세기본법」 Article 44 sexies-0 A

271) IBFD, "France Announces New Measures to Fight International Tax Fraud," 2023.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5_fr_1.html, 검색일자: 2023. 5. 17.

272) 2023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50억 2,800만원임

273) Ministère chargé des comptes publics, "Gabriel Attal annonce une série de mesures de lutte contre la fraude fiscale et douanière, premier volet de la feuille de route gouvernementale de lutte contre toutes les fraudes aux finances publiques," 2023. 5. 9., <https://presse.economie.gouv.fr/09052023-gabriel-attal-annonce-une-serie-de-mesures-de-lutte-contre-la-fraude-fiscale-et-douaniere-premier-volet-de-la-feuille-de-route-gouvernementale-de-lutte-contre-toutes-les-fraudes-aux-finances/>, 검색일자: 2023. 5. 17.

- 2027년까지 고액자산 개인 납세자와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를 25% 증가시키고, 개인 세무조사를 위한 데이터마이닝의 사용을 확대함
- 조세회피 방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은 15% 증가한 1,500명, 조세경찰은 2배로 증가한 40명으로 2025년부터 확충함
- 특별 세무조사팀을 구성하여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 또는 신탁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심각한 조세회피 사건을 다루도록 함
-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모든 과세관청이 전 세계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OECD의 국제적 행동에 협력함

라. 일시적 초과이익세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6호]

- ▣ 프랑스 국세청은 2023년 5월 15일, 에너지 영역의 기업에 적용되는 일시적 초과이익세(부담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²⁷⁴⁾
 - ▶ 프랑스는 매출의 최소 75%가 원유·천연가스·석탄 및 정유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시적 초과이익세를 부과함
 - 프랑스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일시적 초과이익세를 EU 지침(2022/1854)²⁷⁵⁾에 따라 도입함
 - ▶ 지침은 세액 산출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함
 - 과세표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첫 회계연도의 과세 소득과 기준 금액²⁷⁶⁾ 사이의 차액(양수)이며, 33%의 세율로 부과됨
 - 법인세 납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법인세와 동일한 징수 절차 및 과태료 등이 적용됨

274) bofip, "IS - Contributions et impositions liées à l'IS - Contribution temporaire de solidarité,"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940-PGP.html/identifiant=BOI-IS-AUT-50-20230515>, 검색일자: 2023. 6. 9.; IBFD, "Tax Authorities Publish Guidelines on Temporary Windfall Contribution for Energy Sector," 2023. 5.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7_fr_1.html, 검색일자: 2023. 6. 9.

275) IBFD, "Energy Ministers Agree on Proposed Solidarity Contribution on Surplus Profits of Fossil Fuel Sector," 2022. 9.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30_e2_1%23tns_2022-09-30_e2_1, 검색일자: 2023. 6. 9.

276) 기준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회계연도 동안의 과세소득을 합한 금액) × 1/4 ×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체 기간에서 4개 회계연도의 비율) × 120%임

4 이탈리아

가. 미결 조세 채무 및 소송 해결을 위한 절차 도입

[조세동향 23-02호]

-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23년 1월, 「예산법」을 통해 납세자의 미결 조세 채무 및 소송 해결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함^{277), 278)}
- ▣ 납세자는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위반 사항이나 세금신고서를 시정 및 정정할 수 있음

 - ▶ 2023년 3월 31일부터 가산세액이나 이자, 벌금 등을 납부(일시불 혹은 최대 8분기 분할 납부)하여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
 - ▶ 또한 적격 납세자가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기준 및 납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회계연도에 대해 각 200 유로를 납부(일시불 혹은 최대 2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 특정 조건에 따라 경감된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납부세액과 이자, 과태료에 대한 분할 납부가 허용됨

 - ▶ 2019년 및 2020년, 2021년 회계연도에 세금 신고 자동 확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조세 채무와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과태료율이 최소 수준인 3%로 감면되고 관련 납부액에 20분기 분할 납부가 허용됨
 - ▶ 또한 항소 대기 중인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통지된 평가통지서, 조정통지서 및 세금 회수 조치에 대해 최소 과태료의 1/18로 감면된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납부액에 20분기의 분할 납부가 허용됨

277) IBFD, "Italy - Tax Authorities Clarify Newly Introduced Settlement Procedures for Pending Tax Liabilities and Litigations," 2023. 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2-02_it_1, 검색 일자: 2023. 2. 20.

278)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3: Italy Introduces Settlement Procedures for Pending Tax Liabilities and Litigations," 2023.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18_it_6, 검색 일자: 2023. 2. 20.

- ▶ 2023년 4월 30일까지 절차를 신청한 적격 납세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미납 세금을 연체이자, 과태료 또는 징수 수수료 없이 청산할 수 있음
 - 이때 납세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미납 세금 납부(일시불 혹은 18분기 분할 납부)를 해야 함

- ▣ 납세자가 분쟁가액과 법원의 수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계류 중인 조세 소송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 ▶ 조세 소송의 합의를 위해 요구되는 금액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90%
 - 1심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고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40%
 - 2심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15%
 - 납세자가 1심, 2심 모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금액의 5%
 - ▶ 소송 절차 중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음
 - ▶ 이 절차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류 중인 각 소송에 세부 요청을 제출한 뒤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20분기 분할 납부가 허용됨
 - 이때 세무당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분쟁에 대한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 ▣ 기한 내에 사법적인 해결 혹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특정 과거 기한에 징수가 요청되었던 1,000유로 이하의 조세 채무가 소멸됨
 - ▶ 현재 계류 중인 조세 소송이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종결되는 경우, 과태료가 대상 금액의 1/18인 최소 수준으로 감면됨
 - 1심 및 2심에서 계류 중인 조세 소송이 사법적으로 종결되는 경우
 -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조세 소송이 세무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
 - ▶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대리기관에 징수가 요청되었던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조세 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함

- ▶ 상기한 절차들은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및 국가 지원 회수액과 관련된 EU의 자체 자원에 대한 조세 채무 및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코로나19 관련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조세동향 23-03호]

- ▶ 이탈리아 세관당국은 2023년 2월 14일, 「2021 예산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코로나19 관련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지침을 갱신하였음²⁷⁹⁾
 - ▶ 이탈리아는 2021년 1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하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진단장비에 0%의 부가세율 적용을 도입한 바 있음²⁸⁰⁾
 - ▶ 2023년 1월부터는 수입되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진단장비에 더 이상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갱신한 지침에 따르면 수입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갱신한 지침에 따르면 수입 코로나19 진단장비에 대하여 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5 스페인

가. 「2023년 예산법」 제정

[조세동향 23-01호]

- ▶ 스페인은 2022년 12월 23일, 「2023년 예산법」을 제정하여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 사항을 도입함

279) ADM, "Riduzione aliquota Iva per le cessioni e le importazioni di beni necessari per il contenimento e la gestione dell'emergenza epidemiologica da Covid-19," 2023. 2. 14., <https://www.adm.gov.it/portale/documents/20182/99339237/20230214-082541RUCircolare+5+firma+DC.pdf/72065518-e522-066f-004c-fa66504cd998?t=1676461763293>, 검색일자: 2023. 3. 17.

280)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Introduces Zero VAT Rate on Supplies of Vaccines and Diagnostic Equipment Related to COVID-19 Pandemic," 2021.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over/static/tns_2021-01-18_it_4%23tns_2021-01-18_it_4, 검색일자: 2023. 3. 17.

- ▾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공제혜택과 모성수당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²⁸¹⁾

 - ▶ 복수의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기준액이 기존 1만 4,000유로에서 1만 5,000유로로 인상됨
 - ▶ 또한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을 순근로소득 1만 6,825유로 미만에서 1만 9,747.5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확대함
 - ▶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관련 저작물의 소득은 기존 15%에서 7%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은 기존 19%에서 15%로 세율을 인하함
 -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7%의 추가 감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 객관적 추정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영업자의 순소득공제는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직접 추정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입증 곤란한 비용의 공제율을 5%에서 7%로 확대함
 - ▶ 출산을 하였거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나, 30일 이상 사회보장 프로그램 (Security Social)에 등록되어 있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여성으로 모성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
 - 기존에는 해당 사회보장 프로그램 또는 상호공제조합에 등록된 여성에만 모성수당이 지급됨
 - ▶ 연금저축과 관련한 소득의 경우 20만유로에서 30만유로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26%에서 27%로 인상하고, 30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구간을 도입함

- ▾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만유로 미만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3%로 인하함²⁸²⁾

 - ▶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현재 25%이나, 신생 기업 및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81) IBFD, "Spain - Budget 2023: Spain Slashes CIT for Small Corporations, Amends PIT Rates," Allowances (03 Jan.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3_es_1, 검색일자: 2023. 1. 17.

282) 상동

- ▶ 또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2,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최저한세가 적용됨²⁸³⁾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제 및 대리납부 적용 대상, 대손금 관련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함²⁸⁴⁾
 - ▶ 운송, 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고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된 종결 조항 적용 대상이 비과세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 및 운송 수단 관련 고용으로 제한됨
 - 상기 언급한 무형의 서비스에는 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상표, 광고, 컨설턴트, 엔지니어, 변호사 등의 서비스 양도 등이 포함됨
 -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이 폐기물 및 고철 플라스틱 및 섬유 재료를 다루는 기업가 및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공급물까지 확장되며, 다음과 같은 공급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 대상 외의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가 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 혹은 알선
 - 부가가치세 적용 영역에 포함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품 공급
 - 부가가치세 적용 영역에 설정되지 않은 양도인, 취득자 이외의 수출업자 또는 해당 수출업자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제3자에 의한 상품의 수출
 - ▶ 대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가 다음과 같이 수정됨
 - 국외 파산 절차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 과세표준 수정을 허용함
 - 결정청구서 발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 사법 또는 공증 청구가 요구되었던 기존과 달리, 채무자에게 지불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단을 완화함
 - 최소 비과세 채권액을 300유로에서 50유로로 인하함
 - ▶ 여성 위생용품, 예방약 및 비의료용 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4%로 인하함

283) PwC, "Spain,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spain/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text=The%20general%20CIT%20rate%20in,and%20its%20type%20of%20business,> 검색일자: 2023. 2. 6.

284) IBFD, "Spain - Spain Gazettes Budget Law 2023, Limits VAT Supply of Services Rules, Amends Applicability of Reverse Charge Mechanism," 2023. 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2_es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2_es_2) 검색일자: 2023. 1. 17.

나. 암호화폐 보고의무 제정

[조세동향 23-05호]

- ▶ 스페인은 2023년 4월 4일, 2024년 1월 1일부터 특정 보고의무자에게 매년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규정을 제정하였음²⁸⁵⁾

 - ▶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2021년 승인된 「조세 사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과되었고,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통해 보고의무의 이행 시기를 정함
 - 법률에서 지정한 자는 법률이 정한 자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추후 장관령을 통해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식 및 보고 절차가 제정될 예정임

- ▶ 2021년 승인된 「조세 사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암호화폐 보고의무 이행자 등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²⁸⁶⁾

 - ▶ 암호화폐 보유 등에 관한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특정함
 - 제3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저장 및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암호화폐 및 신탁통화를 교환하거나 가상통화의 취득, 이전, 교환 또는 판매를 촉진하는 자
 - 해외에 보유한 암호화폐의 소유자
 - ▶ 법률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함
 -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통화 잔액(유로화 기준) 및 암호화폐의 취득, 전송, 교환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
 - 전송된 암호화폐의 종류 및 수
 - 암호화폐 거래 가격 및 날짜
 - 암호화폐 소유자, 거래에 관하여 승인된 자, 거래 수혜자에 관한 자료

285) IBFD, "Spain Enacts Reporting Obligations for Cryptocurrencies Effective 1 January 2024," 2023.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1_es_1.html, 검색일자: 2023. 5. 16.

286) IBFD, "General Tax Legislation: Spain Imposes New Information Obligation on Crypto Holders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21_es_5%23tns_2021-07-21_es_5, 검색일자: 2023. 5. 16.

6 아일랜드

가.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에 대한 부가세 0%로 인하

[조세동향 23-04호]

아일랜드 정부는 2023년 4월 5일, 주거용 태양광 패널의 공급 및 설치(solar panels for private dwellings)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에서 0%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함^{287), 288)}

-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9,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1,900만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 이 조치는 202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며, 영구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나. 「2023년 재정법(Finance Act 2023)」 관보 게재

[조세동향 23-06호]

아일랜드는 2023년 5월 19일, 「2023년 재정법」(Law No. 11 of 2023, Finance Act 2023)의 대통령 서명을 완료하고 관보 게재함²⁸⁹⁾

287) IBFD, "Ireland - Ireland Announces 0% VAT for Supply,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from 1 May 2023," 2023.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1_ie_1.html, 검색일자: 2023. 4. 17.

288) Government of Ireland, "Ministers McGrath and Ryan announce a zero rate of VAT for the supply and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for private dwellings from 1 May 2023," 2023. 4.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977ed-ministers-mcgrath-ryan-announce-a-zero-rate-of-vat-for-the-supply-and-installation-of-solar-panels-for-private-dwellings-from-may-1st-2023/>, 검색일자: 2023. 4. 17.

289) *Bloomberg Tax*, "Ireland Gazettes Finance Law 2023 with Measures Due to Coronavirus," 2023. 5. 2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F5SGFTS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VhcmNoIjY2gvcmlvZD90a44dd59633d80eff&criteria_id=7e74c91b014d0984e6b1e9487ae05449&search32=YCqte9rHigwpmRVXiiibuA%3D%3DKetQpuuycWYubcOtdq4SnsZ5Yiq6xYTB7j3d56RXuGTngXiYcJl4Kk79

- ▶ 가스 및 전기, 환대(hospitality) 및 관광산업에 대한 9% 부가세 경감세율 적용을 각각 10월 31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아일랜드는 지난해 2023년 예산안 발표 당시, 환대 및 관광산업에 임시적으로 적용 하였던 9% 부가세 경감세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연장하였음
- ▶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모품에 부가세 0% 적용을 유지하며 이를 1월 1일부터로 소급하여 적용함
- ▶ 이번 「재정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발효됨

7 포르투갈

가. 초과이익세 법안 승인

[조세동향 23-01호]

- ▣ 포르투갈 의회는 2022년 12월 20일 특정 부문 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²⁹⁰⁾
 - ▶ 2018~2021년 평균 연간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에너지 및 식품유통 부문 기업의 2022년 및 2023년 이익에 적용됨
 -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정유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슈퍼마켓 및 대형 할인점을 보유한 유통 부문 기업도 대상이 됨²⁹¹⁾
 - ▶ 포르투갈의 기본 법인세율은 21%이며, 초과이익세 세율은 33%로 결정됨

crHDXCp-Nzxv19um0g9t_8q_e290PsnK9e8NP-Tp56ZCtjoa4NixcgdjPu3gnhqt-z7GIabPww0PYW_iWMI_hfGKY953OncD-GGgpgmoto7_6g3w8mNyVei4idPa-tb2hl_xn9QN5w9Yh-XZjScuiyS6H2x2EBzTEbAdpdjBcDfb6y1Vow%3D, 검색일자: 2023. 6. 14.

290) William Hoke, "Portuguese Windfall Tax on Energy, Food Distribution Approved," *Tax Notes International*, 109(1), January 2, 2023, p. 120.

291) IBFD, "Portugal - Portugal Plans Windfall Tax on Energy and Retail Sectors, Prime Minister Says," October 28,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28_pt_1, 검색일자: 2023. 1. 17.

나. 생활비 상승 억제를 위해 필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3월 24일, 포르투갈인의 생활비 상승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 필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폐지를 발표함²⁹²⁾
 - ▶ 포르투갈인의 생활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조치로,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필수 식품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계획임
 - 필수 식품 목록은 44개로 지정되어 있고, 빵, 감자, 파스타, 쌀, 우유, 치즈, 계란, 여러 과일 및 채소, 올리브오일, 버터, 식용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생선 등이 포함됨
- ▶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와 협력을 맺었으며 해당 조치는 2023년 4월 중순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다. 2023년 하반기 적용되는 새로운 원천징수세율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포르투갈 국무장관은 2023년 4월 26일, 2023년 하반기(2023년 7~12월)에 포르투갈 본토 거주자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을 발표함²⁹³⁾
 - ▶ 포르투갈 세무장관은 지난 2022년 12월 5일, 영 14043-B/2022를 통해 2023년 상반기(2023년 1월~6월 30일)에 포르투갈 거주자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발표한 바 있음²⁹⁴⁾

292) 포르투갈 정부, "Apresentadas novas medidas para mitigar o aumento do custo de vida dos portugueses," 2023. 3. 24., <https://www.portugal.gov.pt/pt/gc23/comunicacao/noticia?i=apresentadas-novas-medidas-para-mitigar-o-aumento-do-custo-de-vida-dos-portugueses>, 검색일자: 2023. 4. 17.

293) DRE, "Despacho n.º 4930/2023, de 26 de abril," 2023. 4. 26., <https://dre.pt/dre/detalhe/despacho/4930-2023-212246702>, 검색일자: 2023. 5. 17.

294) DRE, "Despacho n.º 14043-A/2022, de 5 de dezembro," 2022. 12. 5., <https://dre.pt/dre/detalhe/despacho/14043-a-2022-204338597>, 검색일자: 2023. 5. 17.

〈표 2-11-1〉 2023년 상반기 미혼가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일부)

(단위: 유로¹⁾, %)

월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율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762.00	0.0	0.0	0.0	0.0	0.0	0.0
766.00	2.5	0.4	0.0	0.0	0.0	0.0
787.00	4.9	0.7	0.0	0.0	0.0	0.0
851.00	7.8	4.4	0.9	0.0	0.0	0.0
964.00	10.0	6.6	3.4	0.0	0.0	0.0
1,051.00	11.2	7.8	5.6	1.3	0.0	0.0
1,113.00	12.0	8.7	6.4	3.2	0.0	0.0
1,194.00	13.0	10.6	8.2	5.0	2.6	0.1

주: 1) 2023년 5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51원임
 자료: FINANÇAS Gabinete do Ministro, "Despacho n.º 14043-A/2022," 2022. 12. 5., <https://files.dre.pt/2s/2022/12/233000001/0000200012.pdf>, 검색일자: 2023. 5. 17.

〈표 2-11-2〉 2023년 상반기 기혼가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일부)

(단위: 유로¹⁾, %)

월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율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762.00	0.0	0.0	0.0	0.0	0.0	0.0
766.00	3.2	0.0	0.0	0.0	0.0	0.0
788.00	3.2	0.0	0.0	0.0	0.0	0.0
830.00	4.6	0.8	0.0	0.0	0.0	0.0
874.00	5.5	1.7	0.8	0.0	0.0	0.0
925.00	6.4	3.6	1.1	0.0	0.0	0.0
1,017.00	7.2	4.5	2.8	0.0	0.0	0.0
1,129.00	8.0	5.4	3.6	0.9	0.0	0.0

주: 1) 2023년 5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51원임
 자료: FINANÇAS Gabinete do Ministro, "Despacho n.º 14043-A/2022," 2022. 12. 5., <https://files.dre.pt/2s/2022/12/233000001/0000200012.pdf>, 검색일자: 2023. 5. 17.

- ▣ 하반기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은 지난 상반기 승인된 영 14043-B/2022에 실시된 원천징수율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나, 특정 조건의 경우 추가 감면이 이루어짐
 - ▶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원천징수세율에서 1%p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라.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개정 협상 타결

[조세동향 23-06호]

- ▶ 한국과 포르투갈은 2023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회담을 통해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²⁹⁵⁾
 - ▶ 1996년 한-포르투갈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제정 서명을 하여 1997년 발효된 후 장기간 경과로 변화된 경제관계·국제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협약 개정임
 - 이번에 타결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사항, OECD 모델협약 개정 내용 등 변화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임

- ▶ 이번에 타결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 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 소득 범위 확대, 국외 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 (투자소득) 양국 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 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 세율을 조정함
 - (배당) 법인 간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
 - ▶ (이자소득)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함
 - ▶ (국제운수소득)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 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을 포함시킴
 - ▶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의 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함
 - 예비적·보조적 활동 판단 강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 대리인 범위 확대 등
 - ▶ (사업소득)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 간 독립기업·정상가격

295) 기획재정부, 「한-포르투갈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보도자료, 2023. 5. 22.,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423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검색일자: 2023. 6. 16.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반영함

- ▶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던 방식에서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

8 벨기에

가. 초과이익세 시행

- ▣ 벨기에는 2022년 12월 22일, 정유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을 입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²⁹⁶⁾
 - ▶ 벨기에 2023/2024 예산안에 따라 정유기업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초과이익세를 부과함²⁹⁷⁾
 - 벨기에 내에 정제 시설이 있고 정제 영업을 하는 등록된 정유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수입한 원유의 톤당 6.9유로²⁹⁸⁾가 부과됨
 - 2022년도 경유, 가스, 휘발유의 주요 참여자(participants primaires)로 정의된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소비를 위해 출시한 제품의 입방미터당 7.8유로²⁹⁹⁾가 부과됨
 - ▶ 초과이익세는 연대기여금(contribution de solidarité) 형식으로 부과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296) belgiquelex, "16 DECEMBRE 2022. - Loi instaurant une contribution de solidarité temporaire à charge du secteur pétrolier (1),"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article_body.pl?language=fr&pub_date=2022-12-22&caller=summary&numac=2022043066, 검색일자: 2023. 1. 18.; IBFD, "Belgium Enacts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2_be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297) IBFD, "Government Council Approves Proposal to Levy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31_be_1%23tns_2022-10-31_be_1, 검색일자: 2023. 1. 25.

298)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0원임

299)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480원임

- 초과이익세의 시행은 EU의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규정 (2022/1854)’을 일부 이행하기 위한 것임³⁰⁰⁾
- 초과이익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10배 이상, 매출의 20%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부가가치세 절차 및 징수 현대화 법안 발표

[조세동향 23-02호]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2월 7일, 부가가치세 절차 및 징수 현대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⁰¹⁾

- ▶ ‘부가가치세 저축계좌(Compte-provisions TVA)’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납부액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저축계좌에 저장됨
 - 납세자는 국세청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특별한 공식 절차 없이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처분 금액은 이전 12개월 동안 신고납부액의 최고 금액 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2,100유로³⁰²⁾임
 -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 금액이 정당한지 심사 후 결정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확정적으로 결정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부터 효력이 있음

300) EUR-Lex,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22R1854>, 검색일자: 2023. 1. 25.

301) DE KAMER, BE, “PROJET DE LOI - visant à moderniser la chaîne TVA et la perception des créances fiscales et non fiscales au sein du SPF Finance,” 2023. 2. 7., <https://www.dekamer.be/flwb/pdf/55/3128/55K3128001.pdf> 검색일자: 2023. 2. 16.;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Modernize VAT Procedures, Collection,” 2023.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8_be_1.html, 검색일자: 2023. 2. 16.

302) 2023년 2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0만원임

- ▶ 서류 미제출 시 과세관청의 처분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
 - ▶ 과세관청의 환급액 지급 기한, 납부 예정액에 대한 환급액 공제 등의 내용을 신설함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되어야 하지만, 이전 6개월 동안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환급액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납부 예정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①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② 부정확한 신고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며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③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확정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³⁰³⁾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 면제금액을 확대하고, 일부 중간 소득구간의 기준 상한액을 인상함
 - 개인소득세 기본 면제금액을 1만 160유로³⁰⁴⁾에서 1만 3,500유로³⁰⁵⁾로 확대함
 - 소득세 구간 중 45%가 적용되는 구간의 상한 기준액을 4만 6,440유로³⁰⁶⁾에서 6만유로³⁰⁷⁾로 인상함

303) Vincent Van Peteghem, “Première phase de la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Eerste%20fase%20brederere%20fiscale%20hervorming%20FR.pdf>, 검색일자: 2023. 4. 3.; *Bloomberg Tax*, “Belgium MOF Announces Proposal for First Phase of Comprehensive Tax Reform,” 2023. 3. 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A7OPVAS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ite, 검색일자: 2023. 4. 3.

304)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5만원임

305)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93만원임

306)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14만원임

307)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16만원임

〈표 2-11-3〉 벨기에 개인소득세 세율구간별 순소득 기준 변동

(단위: 유로)

세율	2023년도 기준 소득	세법 개정안(2024. 1. 1. 시행 예정)
25%	15,200 이하	동일
40%	15,200 초과~26,830 이하	
45%	26,830 초과~46,440 이하	26,830 초과~60,000 미만
50%	46,440 초과	60,000 초과

주: 2023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22.73원임
 자료: Vincent Van Peteghem, "Première phase de la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Eerste%20fase%20brederere%20fiscale%20hervorming%20FR.pdf>, 검색일자: 2023. 4. 3.; IBFD, "Belgium Amends Personal Income Tax Brackets," 2023. 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8_be_1.html, 검색일자: 2023. 4. 3.

-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적격 기업이 이중 휴가수당, 연말 보험료 또는 미지급 보수를 원천징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하여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개정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감세율을 통합하고,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적용을 개정할 예정임
 - ▶ 법인세의 경우 투자 소득공제(déduction pour investissement) 제도를 개정하고, 혁신 소득공제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
 - 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지속가능한 투자 소득공제'³⁰⁸⁾를 신규 도입하면서 공제 유인 정책으로 이중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투자 소득공제'와 'R&D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함
 - 기존의 'R&D 세액공제(crédit d'impôt pour R&D)' 또한 계속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투자'의 경우 R&D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혁신 소득공제(déduction pour innovation)'의 경우 적격 지식재산권은 신규성이 있는 특허로 그 범위를 제한함
 - OECD BEPS 프로젝트의 필라2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전자화 시스템을 도입함
 - 과일, 의약품, 기저귀 등 기타 위생용품 등과 같은 기본 상품에 영세율(0%)을 적용함
 - 6%와 12%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폐지되어 기존의 적용 품목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308) 재생에너지 생산 등 친환경 관련 투자를 의미함

- 9%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통합 적용되고, 전기·천연가스·수돗물·가정 난방에 대해서만 6%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계속 적용됨
-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21%로 유지하고, 석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21%로 인상함
-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행정을 간소화함
- ▶ 화석연료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제도를 개정할 예정임
 - 화석연료에 대한 경감된 소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화석연료에 대한 특정 사용에 대해 적용하던 다양한 면제 제도 또한 개정할 계획임
 - 담배 및 담배 대체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9 룩셈부르크

가. 초과이익세 도입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03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3월 17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⁰⁹⁾
- ▶ 법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에너지 기업의 매출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90%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부담금)를 부과하도록 함
 - 수력 발전의 경우 메가와트시(megawatt-hour)당 100유로,³¹⁰⁾ 풍력, 태양열, 도시 및 산업 폐기물 분담금, 정수처리장 가스의 경우 메가와트시당 130유로,³¹¹⁾ 바이오매스 또는 폐목재로부터의 연료 및 바이오 가스의 경우 메가와트시당 180유로³¹²⁾를 넘는 에너지 기업에 적용함
 - EU 회원국이 지난 2022년 10월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하여 일시적인 부담금

309) 룩셈부르크 정부, "Projet de loi introduisant un plafond sur les recettes excédentaires issues du marché des producteurs d'électricité,"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7/195/275953.pdf>, 검색일자: 2023. 3. 20.; IBFD, "Proposal for 90% Windfall Profit Tax Submitted to Parliament," 2023.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7_lu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310)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311)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원임

312)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만원임

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EU 지침(2022/1854)에 따라 도입함

- ▶ 2022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임

나. 개인소득세 관련 에너지 패키지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04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4월 5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및 에너지 세액공제 등의 개정을 포함한 조치를 담은 에너지 패키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¹³⁾

- ▶ 개인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소득구간은 2024년 변동됨

다. 역혼성기업에 대한 소득 산정 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6호]

-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3년 6월 9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역혼성기업(Reverse hybrid entity)의 소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함³¹⁴⁾

- ▶ 지침은 룩셈부르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 도관 기업 또는 기구의 과세소득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음
 -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도관 기업 또는 기구는 특정 조건하에서 법인세 납세자로 간주되어, 룩셈부르크 또는 다른 관할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하지 않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세를 부과함

313)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IBFD, “Energy Package Presented to Parliament, Including New Personal Income Tax Table and Modified Energy Credit,” 2023.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6_lu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314)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Circulaire du directeur des contributions L.I.R. n° 168quater/1 du 9 juin 2023,” <https://impotsdirect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egi23/lir-168quater-1-du-09062023.pdf>; EY, “Luxembourg Tax Authority publishes guidance on th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of Reverse Hybrid Entities,” https://www.ey.com/en_gl/tax-alerts/luxembourg-tax-authority-publishes-guidance-on-the-computation-o, 검색일자: 2023. 6. 29.

- ▶ 역혼성기업에 일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문이 적용되며, 과세 대상 소득은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산정됨
 - 역혼성기업에 「법인세법」의 특정 조문만이 적용되며, 특히 CFC 규정, 배당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이자 제한 규정, 혼성 방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과세 대상 소득은 자본이득(배당 및 이자), 임대소득(로열티 포함), 그 외 기타소득으로,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역혼성기업의 소득은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산정되고(수익에서 관련 비용 공제) 회계연도가 아니라 역년(calender year)에 기반하여 과세됨
 - 역혼성기업의 배분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의 50%에 대하여 최소 보유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과세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파생소득에 대한 환율 적용 시 소득 산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말 시점의 환율 적용을 허용할 수 있음

〈표 2-11-4〉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변동(2023~2024)

(단위: %, 유로¹⁾)

세율	2023년	2024년	세율	2023년	2024년
0	~11,265	~11,982	26	32,289~34,233	34,347~36,417
8	11,265~13,137 ²⁾	11,982~13,971	28	34,233~36,177	36,417~38,487
9	13,137~15,009	13,971~15,960	30	36,177~38,121	38,487~40,557
10	15,009~16,881	15,960~17,949	32	38,121~40,065	40,557~42,627
11	16,881~18,753	17,949~19,938	34	40,065~42,009	42,627~44,697
12	18,754~20,625	19,938~21,927	36	42,009~43,953	44,697~46,767
14	20,625~22,569	21,927~23,997	38	43,953~45,897	46,767~48,837
16	22,569~24,513	23,997~26,067	39	54,897~100,002	48,837~106,383
18	24,514~26,457	26,067~28,137	40	100,002~150,000	106,383~159,564
20	26,457~28,401	28,137~30,207	41	150,000~200,004	159,564~212,745
22	28,401~30,345	30,207~32,277	42	200,004 초과	212,745 초과
24	30,345~32,289	32,277~34,347			

주: 1)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2) 1만 1,265유로 초과~1만 3,137유로 이하, 이하 같음

자료: Guide des Impôts, "Guide des Impôts 2023," https://www.guidedesimpots.lu/wp-content/uploads/2023/02/GDI_2023.pdf, 검색일자: 2023. 4. 25.;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 ▶ 에너지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O2)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I)와 2024년부터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두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액 산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함³¹⁵⁾
 - 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됨

〈표 2-11-5〉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및 에너지 세액공제 산출 방식 변동

(단위: 유로¹⁾)

세액공제 산출(기존)			세액공제 및 에너지 세액공제 산출(개정)		
분류	소득기준	공제액	분류	소득기준	공제액
연금수령자 ²⁾	300~935	396	연금 수령자 · 근로자 · 개인 사업자	936 ³⁾ ~40,000	144
근로자 · 개인 사업자	936~11,265	396 + (순소득 - 936) × 0.029			
	11,266~40,000	696		40,001~79,999	144 - (순소득 - 40,000) × 0.0036
	40,001~79,999	696 - (순소득 - 40,000) × 0.0174			

주: 1)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2) 세액공제 산출(기존) 방식에서 연금수령자의 소득이 300~935유로 구간인 경우 공제액이 396유로인 것을 제외하고, 연금수령자의 산출 방식은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산출 방식과 동일함

3) 연금수령자의 산출 방식은 소득기준이 최소 300유로 이상인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산출 방식과 동일함

자료: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 Art. 152ter, 154quater, 154quinquies;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 ▶ 법안은 경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onjoncture: CI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임

- 경제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됨

315)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L, I, R.)*, <https://impotsdirect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IR/LIR2023.pdf>, 검색일자: 2023. 4. 13.

〈표 2-11-6〉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경제 세액공제

(단위: 유로¹⁾)

개인사업자		근로자·연금수령자	
소득기준	공제액	소득기준	공제액
13,500~15,000 ²⁾	$(\text{순이익} - 13,500) \times 4/125$	1,125~1,250	$(\text{월 소득} - 1,125) \times (4/125)$
15,000~25,200	$(\text{순이익} - 15,000) \times 3/850 + 48$	1,250~2,100	$(\text{월 소득} - 1,250) \times (3/850) + 4$
25,200~55,200	$(\text{순이익} - 25,200) \times 37/2,500 + 84$	2,100~4,600	$(\text{월 소득} - 2,100) \times (37/2,500) + 7$
55,200~114,000	528	4,600~9,500	44
114,000~119,100	$(\text{순이익} - 114,000) \times 4/425 + 528$	9,500~9,925	$(\text{월 소득} - 9,500) \times (4/425) + 44$
119,100~170,100	576	9,925~14,175	48
170,100~179,000	$(\text{순이익} - 170,100) \times 3/356 + 576$	14,175~14,916	$(\text{월 소득} - 14,175) \times (3/356) + 48$
179,000 초과	651	14,916 초과	54.25

주: 1)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2) 1만 3,500유로 초과~1만 5,000유로 이하, 이하 같음

자료: Guide des Impôts, "Guide des Impôts 2023," https://www.guidedesimpots.lu/wp-content/uploads/2023/02/GDI_2023.pdf, 검색일자: 2023. 4. 25.;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10 그리스

가. 톤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 명시

[조세동향 23-03호]

▣ 그리스 재무부는 2023년 2월 23일, 톤세(Tonnage Tax)³¹⁶⁾ 부과 대상이 되는 해운회사의 특정 유형 소득을 명시함³¹⁷⁾

- ▶ 승객 또는 화물 운송으로 인한 소득
- ▶ 선주에 의해 승객이나 화물 운송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선박의 고용(hiring)에서 발생한 수익

316)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운항의 순톤수 및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을 말함

317) IBFD, "Greece Clarifies What Income Earned by Shipping Companies is Subject to Tonnage Tax," 2023.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4_gr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 ▶ 승객 또는 화물의 선박 운송을 목적으로 회사가 합작투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
- ▶ 선박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 단, 1) 선박이 취득 당시 톤세 과세 대상이었고, 2) 선박 취득 후 선박을 해운회사에서 해상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됨
- ▶ 슬롯용선 계약(slot charter party)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해운회사의 보조 활동에서 얻은 소득

나.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5% 배당세 부과 의결

[조세동향 23-04호]

- ▣ 그리스 국회는 2023년 3월 28일, 그리스 해운회사가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해 5%의 배당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함³¹⁸⁾
 - ▶ 그리스 국회는 그리스 국적 어선, 예인선 및 자체 준설선³¹⁹⁾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음
 - 그리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특정 해운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5%의 배당세 부과를 입법 제안한 바 있음³²⁰⁾
 - 그리스는 이번에 제정한 법안을 통해 그리스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리스 국적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외국 해운중개회사의 배당금에 부과하는 배당세와 균등하게 처리할 목적임
- ▣ 제정 법안에 따라 그리스 국적 해운회사의 주주·파트너에게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금에 5%의 배당세를 부과함
 - ▶ 배당세의 과세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분배되는 배당금에 적용됨

318) 그리스 국회, “Πλαίσιο ρύθμισης οφειλών και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και τελωνειακές ρυθμίσεις, προστασία των συντάξεων από τον πληθωρισμό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για τη στήριξη της κοινωνίας και της επιχειρηματικότητας,” 2023. 3. 28., https://www.hellenicparliament.gr/Nomothetiko-Ergo/Anaziti-si-Nomothetikou-Ergou?law_id=7a192179-1a90-4288-abb-b-afc70003b16b, 검색일자: 2023. 4. 17.

319) 준설선을 해상 운송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 시간이 준설선 총사용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20) 그리스 국회, “Πλαίσιο ρύθμισης οφειλών και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και τελωνειακές ρυθμίσεις, προστασία των συντάξεων από τον πληθωρισμό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για τη στήριξη της κοινωνίας και της επιχειρηματικότητας,” 2023. 3. 15.,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8ea6-aebdc768f4f7/12249487.pdf>, 검색일자: 2023. 4. 17.

다.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소급연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시

[조세동향 23-03호]

- ▶ 그리스는 2023년 5월 23일,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소급연금액(retroactive pension sums)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음³²¹⁾

 - ▶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소급연금액은 상속재산의 일부이므로 「소득세법」 제 60조 제4항이 적용되어 2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함
 - 소급 연금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대상이 됨
 - 만약 소급연금액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상속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수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함

11 네덜란드

가. 증여세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 발표

[조세동향 23-01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30일, 증여세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법령을 발표함³²²⁾

 - ▶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핵심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증여세 면제 규정) 현행법상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한 법령을 업데이트함

 - ▶ 법인세 과세 대상인 협회 또는 재단에 의한 청산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에 지

321) 그리스 국세청, “Φορολογική μεταχείριση αναδρομικών εισοδημάτων που καταβάλλονται στους κληρονόμους των δικαιούχων,” 2023. 5. 23., <https://www.aade.gr/egkyklio-i-kai-apofaseis/e-2036-23-05-2023>, 검색일자: 2023. 5. 25.

322) News IBFD, “Netherlands Grants Exemption From Gift Tax in Case of Accumulation With Corporate Income Tax,” 2022. 12.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30_nl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급되는 경우, 청산금이 포함된 과세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청산금이 포함된 과세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거주 주택 증여재산 공제) 거주 주택 증여재산 공제액을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임

- ▶ 자녀의 거주 주택 구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금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0만 6,671유로³²³⁾에서 2만 8,947유로³²⁴⁾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주택 구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

▣ (증여세 환급)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기부금 증여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 ▶ 기부자가 기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귀속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나. 「은행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2월 22일, 2023년 은행세 면제금액과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 대상 소득의 2022년 간주 수익률을 확정하는 법령을 발표함³²⁵⁾

▣ 은행세 면제금액을 기존 209억유로³²⁶⁾에서 235억유로³²⁷⁾로, 26억유로³²⁸⁾ 인상함

- ▶ 네덜란드 은행 및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지점은 직전 회계연도 말 대차

323)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74만원임

324)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74만원임

325) IBFD, "Netherlands Sets 2023 Tax Exempt Amount for Banks, 2022 Box 3 Deemed Returns," 2023.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5_nl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326)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조 9,074억원임

327)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조 5,035억원임

328)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조 5,961억원임

대조표상 금액에 대하여 은행세가 부과되는데, 과세 대상 금액 산정 시 공제되는 면제금액을 인상함

- 과세 대상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총액에서 적격자본(BIS 자기자본), 예금보호제도를 적용받는 예금 및 보험업의 부채와 면제금액(Doelmatigheidsvrijstelling)을 공제하여 산출됨³²⁹⁾

▶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Income from savings and investments (Income in box 3))의 과세 대상 소득 산출을 위한 간주 수익률을 확정함

▶ 네덜란드 개인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 그룹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중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의 과세 대상 소득 산출을 위한 간주 수익률을 확정함

- 3군 소득의 과세표준은 항목별 자산의 실질금액에 간주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저축소득의 경우 기존 0.01%에서 0.00%, 부채의 경우 기존 2.46%에서 2.28%의 간주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5.53%를 동일하게 적용함

다. PSP의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 이행 법안 채택

[조세동향 23-04호]

▶ 네덜란드 상원은 2023년 4월 4일, EU의 결제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 PSP)에 대한 새로운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³³⁰⁾

▶ EU의 지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PSP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 관련 법안(New rules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이 시행될 예정임

▶ 위 법안은 COUNCIL DIRECTIVE (EU) 2020/284의 PSP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에 관

329) 네덜란드 국세청, "Belastbare som bepalen,"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bankenbelasting/bankenbelasting_berekenen/belastbare_som_bepalen, 검색일자: 2023. 3. 17.

330) IBFD, "Upper House Adopts Bill to Implement Directive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2023. 4.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5_nl_1.html, 검색일자: 2023. 4. 14.

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VAT 사기 방지 목적으로 2020년 2월 18일, EU 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새로운 기록 보관 및 보고의무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³³¹⁾
- ▶ PSP는 지침에서 정의한 의무 범위에 속하는 국경 간 지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 PSP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분기별 25개 이상의 국경 간 지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록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³³²⁾

라. 증여세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5월 2일, 조세조약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발표함³³³⁾
- ▣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법 및 순서) 개정 법령을 통해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 네덜란드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또는 개인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과 순서를 명확히 함
 - ▶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세조약 또는 기타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일방적 방법에 따른 세액공제보다 우선함
 - ▶ 세액공제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크기 또는 순서에 따라 비례 배분됨
 - ▶ 비적격 외국인 투자 참여, 저과세 외국인 투자기업,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대한 세액공제는 후순위로 적용됨
 - ▶ 세액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함

331) EY, "EU introduces new VAT reporting obligations as of 1 January 2024," https://www.ey.com/en_lu/tax/eu-introduces-new-vat-reporting-obligations-as-of-1-january-2024, 검색일자: 2023. 4. 14.

332) 상동

333) IBFD, "Netherlands Updates Decree on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Under Tax Treaties and Other Regulations," 2023. 5.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03_nl_1.html, 검색일자: 2023. 5. 11.

- 조약에 따른 권리: 2012년 이전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면제, 배당금·이자·로열티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박스에 대한 세액공제
- 2001년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일방적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2012년 이전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면제, 배당금·이자·로열티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박스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에 따른 권리: 비적격 외국인 투자 참여에 대한 세액공제, 조약에 따라 이익이 면제되지 않는 저과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FC 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 스포츠 선수 및 예술가의 소득) 네덜란드 국무장관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외국 스포츠 선수 및 예술가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승인함

▶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국가 등에서 과세 대상이어야 함
- 이에 따라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이월, 비용공제, 이민 및 재이민, 일방적 방법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배당금·이자 및 로열티·특허박스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적용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회사에 귀속된 예술가 또는 스포츠 선수의 활동 소득의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액공제에도 전반적인 방법이 적용됨

▶ (조세조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소득이 누락되거나 조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 법령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가 허용됨

▶ 2023년 5월 3일부터 적용되며, 원래 조세조약은 국가별 방식이, 일방적 시행령에는 종합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시행령은 조세조약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

마. 2023년 봄 각서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4월 28일, 배당금 삭감 조치 및 상속세에 대한 사업 승계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발표하는 2023년 봄 각서(Voorjaarsnota 2023)를 발표함³³⁴⁾

- ▾ (배당금 삭감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 2024년 세금 계획에는 배당금 관련 등록일자의 법적 설정과 세무 조사관의 입증 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 ▶ 이는 배당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삭감 및 분할하는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임

- ▾ (소득 삭감 규칙) 새로운 제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법인에는 세이퍼하버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 기존의 임계값 기준으로 인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 법인의 회사분할 유인을 막고자 함
 - 현행법상 법인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는 100만유로³³⁵⁾와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의 20% 중 높은 금액임

- ▾ (상속세에서 사업승계 면제, 소득세에서 사업양도에 대한 과세 면제제도 세부 사항 변경 제안) 사업승계 면제 기준가액 및 면제율을 조정하고, 상속·증여세의 사업승계 제도 및 소득세 사업양도 이연 제도 적용을 위한 효율성 마진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 사업승계 면제 기준가액을 기존 120만유로³³⁶⁾에서 150만유로³³⁷⁾로 상향 조정하고 면제율을 기존 83%에서 70%로 13%p 낮출 것을 제안함
 - ▶ 상속·증여세의 사업승계 제도(Bedrijfsopvolgingsregeling: BOR) 및 소득세 사업양도 이연 제도 적용 시, 사업자본에 대한 5% 효율 마진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기존에는 사업자본의 최대 5%에 해당하는 투자자본이 사업자본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산만 BOR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실제 사업양도 없이 자신의 자산을 사업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이중 BOR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³³⁸⁾ 사업자산 또는 개인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BOR을 적용받을 수 있음

334) IBFD, "Spring Memorandum 2023 Announces Dividend Stripping Measures, Changes to Business Succession Exemption of Inheritance Tax," 2023.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01_nl_1.html, 검색일자: 2023. 5. 11.

335)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5,421만원임

336)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억 4,570만원임

337)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억 8,131만원임

338) Deloitte, "Tax measures announced in the Spring Memorandum," 2023. 5. 10., <https://www2.deloitte.com/nl/nl/pages/tax-news/articles/tax-measures-announced-in-the-spring-memorandum.html>, 검색일자: 2023. 5. 15.

- ▶ (부동산 주식 거래) 2023년 2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주식 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과세로 양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주식 거래 법안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법안에 과도기적 체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 폐업하는 농가가 재투자 준비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 폐업 시 재투자 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바. 업데이트된 DAC6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 보고가능한 국경 간 협정에 관한 행정협력 지침(2018/822) (DAC6)³³⁹⁾에 대한 수정된 시행 지침을 발표함³⁴⁰⁾
- ▶ (참여자) 이 지침에 따르면 참여자의 자격 여부는 특정 구조 및 해당 특징을 포함하여 사안에 따라 달라짐
 - ▶ 참여자는 이사회 결정 및 회계 또는 과세 결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함
 - 과세 결과의 예로는 그룹 내 비정상 거래로 인해 상응하는 조정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 (보조중개자) 보조중개인 및 중개인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보조중개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보고가능한 국경 간 합의의 고안, 제안, 설정, 이행을 위한 지원, 지원 또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행을 관리해야 함
 - ▶ 중개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상황과 사용가능한 정보 전문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경 간 약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함
 - ▶ 기존 구조에 대한 설명 또는 규정 준수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은 (보조)중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설명 및 규정 준수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음

339) DAC의 6차 개정 지침으로, 특정 역외거래 정보의 의무 보고 및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함

340) IBFD, "Government Publishes Updated DAC6 Guidelines to Facilitate Interpretation of Rules," 2023.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28_nl_2.html, 검색일자: 2023. 5. 11.

- 회계장부 작성, 연간 회계 준비 또는 감사,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전가격 문서 또는 벤치마크 연구의 준비 또는 업데이트, 국가보고서·마스터 파일 또는 로컬 파일의 준비 및 제출, (공급업체) 실사 보고서 또는 세금백서 작성, 상호합의 절차(MAP)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세금 감사·이의의 신청 및 항소와 관련된 서비스

▾ (비공개에 대한 법적 특권) 이 특권은 변호사나 민법공증인이 아닌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신고 대상 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변호사의 경우, 신고의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통지의무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비공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의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에 명시한 바 있는데, 사건의 상황에 따라 납세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인이 될 수 있음

▾ (폐널티) 법정 조세 특권을 발동하는 중개인이 관련된 다른 중개자에게, 또는 해당 중개인이 없는 경우 관련 납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90만유로³⁴¹⁾의 벌금이 부과됨

▾ (유익성 테스트) 유익성 테스트의 결정을 위한 세금 선납 사례 및 충족 요건 등에 대해 언급함

- ▶ 유익성 테스트의 결정을 위한 세금 선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납세자가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 외국 세금이 보전된 경우, 세금 목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경우 등
- ▶ 유익성 테스트가 충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예상되는 세금혜택이 없다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해당 혜택의 존재가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금혜택이 구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이거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경우 및 구조에 세금혜택을 얻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

341)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925만원임

사. 국회 승인을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법안 제출

[조세동향 23-06호]

- ▾ 네덜란드는 2023년 5월 31일,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최저세율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2523)) 이행 법안을 제출함³⁴²⁾

 - ▶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은 다국적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에 대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 15%를 미달하는 경우 해당 추가세액을 국내에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임
 -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은 지난 2021년 10월 30일, 로마 정상회의에서 추인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중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필라2)’를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제정함
 - ▶ EU는 회원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입법을 통해 이 지침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그에 따라 네덜란드는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임

12 덴마크

가. 2023년 화석연료 부문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 제안

[조세동향 23-04호]

-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3월 22일, 원유·천연가스·석탄 및 정유 부문 기업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연대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표함³⁴³⁾

 - ▶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 조치(COUNCIL REGULATION

342)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mplementing Minimum Taxation Directive for Parliamentary Approval,” 2023.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01_nl_1.html, 검색일자: 2023. 6. 16.

343) IBFD, “Denmark Proposes Solidarity Contribution for Fossil Fuel Sector to Apply Only in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7_dk_1.html, 검색일자: 2023. 4. 18.

(EU) 2022/1854)에 따라, 초과이익세의 성격을 가지는 연대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표함

- ▶ (과세 대상, 시기 및 산업) 2023년 과세연도 매출액 중 75% 이상이 원유 정제 및 추출·채광 또는 코크스 오븐가스 제품 생산 등의 매출액으로 구성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³⁴⁴⁾
 - ▶ 법적 확실성 원칙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2023년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적용됨
- ▶ (과세표준 및 세율) 2018~20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초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33%의 세율이 적용됨
 - ▶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에 설정된 최소 비율에 따라 33%의 요율이 적용됨

나.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인상

[조세동향 23-05호]

- ▶ 덴마크는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원천징수세에 관한 행정명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³⁴⁵⁾
 - ▶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은 주식자본의 10% 미만을 보유한 회사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임
 - ▶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회사는 배당금의 70%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인 22%의 70%에 해당하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 또한, 덴마크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외국 국가 및 그 기관에도 더 이상 덴마크 원천징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 변경 사항은 2023년 5월 1일에 발효됨

344) 덴마크 의회, “L 69 Forslag til lov om et midlertidigt solidaritetsbidrag,” <https://www.ft.dk/samling/2022/lovforslag/l69/index.htm>, 검색일자: 2023. 4. 18.

345) IBFD, “Denmark Increases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from Tax-Free Portfolio Shares,” 2023. 5.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1_dk_1.html, 검색일자: 2023. 5. 15.

13 핀란드

가.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동향 23-01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 추가세액공제에 관한 법률(Law 1298/2022)」을 관보에 게재함³⁴⁶⁾

 - ▶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와 전기 대비 초과 발생액에 대한 특별 추가세액공제로 구분됨
 - 일반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중 최대 50만유로³⁴⁷⁾를 한도로 당기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당기 공제금액이 5,000유로³⁴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특별 추가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 최대 50만유로³⁴⁹⁾를 한도로 전기 대비 실제 초과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의 4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 세액공제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인건비 또는 용역 형태의 연구개발 비용에도 적용 가능함
 - ▶ 다만, 납세자가 2021년부터 2027년 사이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하여 임시 추가세액공제를 기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 추가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음
 - ▶ 일반 추가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특별 추가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나. MLI 유보 철회 및 자본이득 대상 소득 유형 확대 법안 비준

[조세동향 23-02호]

- ▣ 핀란드 대통령은 2023년 2월 17일, ‘BEPS 방지 다자협약(MLI)’ 제9조 제6항 제a호에

346) News IBFD, “Finland Enacts New R&D Incentives,” 2023. 1.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3_fi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347)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085만원임

348)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0만원임

349)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085만원임

따라 적용한 유보를 철회하는 법안을 비준함³⁵⁰⁾

- ▶ 핀란드는 기존에 MLI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보하였으나, 이를 철회하는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MLI 제9조 제4항을 적용받게 되며,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발효됨³⁵¹⁾
 - MLI 제9조 제6항 제a호에 따르면 각국은 MLI 제9조 제1항(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 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함
 - MLI 제9조 제4항은 적용 조세조약(Covered Tax Agreement)의 목적상 체결 관할 당국의 거주자에게 과세가능한 자본이득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법안은 「소득세법(Tuloverolaki: TVL)」 섹션 10을 개정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유형을 재규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부동산 간접 보유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도 이에 포함됨
 -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
 - 양도일 이전 365일의 기간 중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지분을 통해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가치의 50% 이상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유사지분의 양도

14 노르웨이

가. 필라2 규정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조세동향 23-06호]

- ▾ 노르웨이는 2023년 6월 6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2 규정을 「내국세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함³⁵²⁾
 - ▶ 이 제안에는 조세법 및 조세행정법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350) News IBFD, "President Ratifies Law Withdrawing MLI Reservation and Extending Income from Finland to Include Capital Gains on Disposal of Indirect Holding of Real Estate," 2023. 2.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7_fi_1.html, 검색일자: 2023. 2. 20.

351)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2016.

352) IBFD, "Norway Consults on Draft Pillar Two Rules," 2023.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08_no_1.html, 검색일자: 2023. 6. 16.

2024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 필라2 규정은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이 모든 관할권에서 15%의 실효세율로 과세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제출된 협의안은 노르웨이에 필라2 규정 도입에 관한 것임³⁵³⁾
 - 필라2 규정 도입 시 OECD가 발표한 모델규정과 일관된 규칙을 구현해야 하는 점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노르웨이 법률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

▾ 의견수렴 절차는 2023년 8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임

나. 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채택

[조세동향 23-06호]

- ▾ 노르웨이 의회는 2023년 5월 31일, 양식업에 대한 자원임대세(grunnrenteskatt på havbruk) 부과 법안(Prop. 78 LS (2022-2023)을 채택함³⁵⁴⁾
 - ▶ 해당 세금은 연어와 송어 등 천연자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연어세 (Salmon Tax)라고도 불리는데, 연어 양식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해안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함
 - ▶ 연간 이익이 7천만크로네³⁵⁵⁾ 이상인 업체에만 자원임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5%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됨
 - 소규모 양식업자에게 자원임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이익 기준을 둠
 - ▶ 해당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353) 노르웨이 정부, "Høring - innføring av regler om global minimumsbeskatning i norsk rett (pilar 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horing-innforing-av-regler-om-global-minimumsbeskatning-i-norsk-rett-pilar-2/id2983249/?expand=horingsbrev>, 검색일자: 2023. 6. 16.

354) IBFD, "Parliaments Adopts 'Salmon Tax,'" 2023.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6-01_no_1.html, 검색일자: 2023. 6. 16.

355) 2023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84억 9,170만원임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2023년 예산안 제출

[조세동향 23-01호]

- ▣ 일본 여당은 국회에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함³⁵⁶⁾

 - ▶ 해당 예산안은 물가 안정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실현 등과 같은 정부의 장단기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
 - ▶ 이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환경의 개발, 공급망 강화,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함
- ▣ 창업,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며 대규모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R&D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함

 - ▶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억엔³⁵⁷⁾ 한도로 비과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주식 양도차익이 창업이나 창업 전 기간의 투자에 사용될 때 비과세가 적용됨
 - 그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면제 대상이 확대됨
 - ▶ 대규모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 25% 세액공제 한도를 연구개발비 증감률에 따라 20~30%로 바꾸는 제도가 도입되며, 개방형 혁신 R&D 스타트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 및 계약연구를 장려할 예정임
 -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정한 경력을 가진 연구원을 채용하는 법인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가 신설됨

356) IBFD, "Budget 2023: Japan to Introduce New Tax Incentive for Start-ups, Minimum Tax on High Income Earn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9_jp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357)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8억 9,160만원임

- ▶ 국제 과세와 관련하여 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의 필라2에 따른 소득 포함 규칙(IIR)이 시행될 예정임
- ▶ 개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소득 수준이 극도로 높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최저한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개인들이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NISA와 관련한 비과세를 확대함
 - ▶ NISA에서 파생한 배당금과 자본이득의 세금면제 한도는 할부투자 유형의 경우 1,800만엔³⁵⁸⁾(기존 800만엔³⁵⁹⁾), 성장투자 유형의 경우 1,200만엔³⁶⁰⁾(기존 600만엔³⁶¹⁾)으로 증가하며, 비과세 적용 기간이 영구화됨³⁶²⁾
 - 관련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 ▶ 소득세에 1%의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건 특별 소득세율이 1% 인하되고 전체 재건 자원 확보를 위한 과세기간이 연장됨
- ▶ 법인세 금액에 4~4.5%의 가산세가 새로 부과되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에서 500만엔³⁶³⁾의 공제를 허용함
- ▶ 담뱃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톤수세의 현행 조세감면은 2023년 말까지 변동이 없으며,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세금감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나. 새로운 고물가 대책 추진

[조세동향 23-03호]

- ▶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고물가 대책으로 LPG에 대한 보조 및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358)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002만 4,400원임

359)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56만 6,400원임

360)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34만 9,600원임

361)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67만 4,800원임

362) 기존 비과세 적용 기한은 성장형의 경우 5년, 적립형의 경우 20년이었음

363)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22만 9,000원임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필요한 재원의 지출을 2023년 3월 22일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본부장: 기시다 총리)에서 결정함³⁶⁴⁾

- ▾ 해당 지원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에 총 1.2조 엔³⁶⁵⁾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교부금의 ‘권장사업’에 LP나 공장용 특별 고압전력 부담 경감, 사료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낙농가 지원 등을 명기함³⁶⁶⁾
- ▾ 교부금의 5,000억엔³⁶⁷⁾은 특별범위로 하여 주민세 비과세 등 저소득 세대에 일률 3만 엔³⁶⁸⁾을 급부하며, 교부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육아 가구에 어린이 1인당 5만엔³⁶⁹⁾을 급부할 방침임
 - ▶ 지자체 교부금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으로 급여액을 3만엔보다 줄이는 대신, 대상 세대를 넓히는 등의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함

2 중국

가.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감면정책 발표

[조세동향 23-01호]

- ▾ 중국 재정부와 세무국은 2023년 1월 9일,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감면 등에 관한 정책을 재정부 및 세무국의 공고 2023 제1호에 발표함³⁷⁰⁾

364)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物価高対策に2兆円決定、低所得子育て世帯への給付やLPガス負担軽減など」, 2023. 3. 22.,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30322-OYT1T50089/>, 검색일자: 2023. 3. 28.

365)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조 9, 247억 2,398만 8,000원임

366) 내각관방(内閣官房) -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第8回) 議事次第」, 2023. 3. 22.,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3. 3. 28.

367)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9,694억 3,650만원임

368)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만 8,174원임

369)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만 6,957원임

370) IBFD, “China Clarifies Exemption and Reduction of Value Added Tax for Small-scale Taxpayers in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1_cn_1.html, 검색일자: 2023. 1. 17.

- ▶ 증치세 면제 대상, 징수율 감면, 매입세액 추가공제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소규모 납세자³⁷¹⁾란 연간 과세매출액이 500만위안³⁷²⁾ 이하인 자로,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3%이지만 해당 정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또는 1%의 징수율을 적용함
 - ▶ 월매출 10만위안³⁷³⁾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에게 증치세를 면제함
 - ▶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매출액에 대하여 1%의 세율을 적용함
 - ▶ 매입세액 추가공제 정책의 적용을 받는 생산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납세자에 대하여 생산서비스 납세자는 5%, 생활서비스 납세자는 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추가공제 적용 요건은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4가지 업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

나. 주식 관련 개인소득세 혜택 연장

[조세동향 23-02호]

- ▣ 중국은 2023년 1월 16일,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有关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3년 제2호)를 발표함^{374), 375)}
 - ▶ 해당 우대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상장주식의 인센티브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함³⁷⁶⁾
 - ▶ 스톡옵션(stock options), 주식평가보상(stock appreciation), 제한부 주식(restricted shares) 등에서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 과세하되

371) 국세청, 『2023 재중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3. 6., p. 89., 검색일자: 2023. 1. 26.

372) 2023년 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9억 975만원임

373) 2023년 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826만 7천원임

374) 중국 세무국,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实施有关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 공고)」, 2023. 1. 16.,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183687/content.html>, 검색일자: 2023. 2. 22.

375) IBFD, "China Further Extends Two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to 31 December 2023," 2023.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8_cn_1.html, 검색일자: 2023. 2. 22.

376) IBFD, "China (People's Rep.)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5.1. Stock op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n_s_1.3.%23ita_cn_s_1.3., 검색일자: 2023. 3. 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 ▶ 또한 중국 내 개인투자자가 중국 및 홍콩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함³⁷⁷⁾
 - ▶ 후강통(沪港通,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거래)이나 선강통(深港通, 선전과 홍콩 거래소 간 교차거래)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을 면제함

다. 토지사용세 감면 및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공제 확대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중국 정부는 물류기업의 지정 상품 보관 장소에 대한 도시 토지사용세 50% 감면 예정을 발표함³⁷⁸⁾
 -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기업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토지에 대한 보관시설 관련 도시 토지사용세가 50% 감면될 예정임
 - 물류기업은 창고 보관 및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고 등록된 기업으로 정의됨
 - ▶ 감면 기준이 되는 보관 상품에는 곡물, 면화, 기름, 설탕, 과일, 육류, 해산물, 비료, 석탄, 원유, 철 또는 비철 금속, 플라스틱,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되며 사용되는 토지가 감면 대상이 되려면 시설면적이 6,000㎡를 넘어야 함
-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함³⁷⁹⁾
 - ▶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R&D) 활동이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100%를 공제하는 것으로 기존 75%에서 확대 적용할 것을 발표함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대규모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발표일로부터 2023년 공제분에 소급하여 적용되고, 별도 만료 날짜를 설정하지 않음

377) IBFD, “China(People’s Rep.)-Individual Taxation-1.Individual Income Tax-1.6. Capital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cn_s_1.3.%23gthb_cn_s_1.6., 검색일자: 2023. 3. 2.

378) IBFD, “China Halves Urban Land Use Tax for Storage of Designated Commodities,” 2023.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1_cn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379) IBFD, “China Extends Super-Deduc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2023. 3.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29_cn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3 인도

가. 2023/24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2호]

- ▾ 2023년 2월 1일,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연합 예산 2023/24를 발표함³⁸⁰⁾
- ▾ 해당 예산안에 의해 개인 과세와 관련 세율 정책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세율 및 면제 한도, 환급 한도가 변경되고, 표준 공제와 퇴직금 관련 정책이 변경됨
 - ▶ 『재정법 2020』에 의해 도입된 new regime이 개인 및 HUF에 대해 기본 제도가 되어 과세구간이 7개에서 5개로 줄어들고, 소득세 면제 한도는 25만루피³⁸¹⁾에서 30만루피³⁸²⁾로, 소득세 환급 한도는 50만루피³⁸³⁾에서 70만루피³⁸⁴⁾로 증가함
 - 새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5,000만루피³⁸⁵⁾ 이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 부가세율(surcharge)은 37%에서 25%로 감소함
 - ▶ 표준 공제가 급여 및 연금 수급자 납세자에게 확장됨
 - ▶ 공무원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면제 한도가 250만루피³⁸⁶⁾로 늘어남

380) IBFD, "India to Further Simplify Individual Income Tax Regime, Increase Tax Exempt Limit in Union Budget 2023," 2023. 2.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1_in_1.html, 검색일자: 2023. 2. 15.

381)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만 3,771원

382)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5만 6,525원임

383)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2만 6,215원임

384)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9만 6,701원임

385)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9,224만 7,729원임

386)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3만 1,077원임

〈표 2-III-1〉 기존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25만루피 이하	비과세
25만루피 초과~50만루피 이하	5%
50만루피 초과~75만루피 이하	10%
75만루피 초과~100만루피 이하	15%
100만루피 초과~125만루피 이하	20%
125만루피 초과~150만루피 이하	25%
150만루피 초과	30%

자료: Mehrotra, H. C. and S. 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61st edition, A.Y. 2020-21, Sahitya Bhawan Publications, 2019, p. 482

〈표 2-III-2〉 2023년 개정된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30만루피 이하	비과세
30만루피 초과~60만루피 이하	5%
60만루피 초과~90만루피 이하	10%
90만루피 초과~120만루피 이하	15%
120만루피 초과~150만루피 이하	20%
150만루피 초과	30%

자료: HDFC BANK, "Comparison Of New Tax Regime Vs Old Tax Regime," <https://www.hdfcbank.com/personal/resources/learning-centre/pay/difference-between-new-tax-regime-vs-old-tax-regime>, 검색일자: 2023. 3. 7.

〈표 2-III-3〉 개인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세(%)	
	개정 전	개정 후
500만 루피 미만	0%	0%
500만루피 이상~1,000만루피 미만	10%	10%
1,000만루피 이상~2,000만루피 미만	15%	15%
2,000만루피 이상~5,000만루피 미만	25%	25%
5,000만루피 이상	37%	

자료: Mehrotra, H. C. and S. 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61st edition, A.Y. 2020-21, Sahitya Bhawan Publications, 2019, p. 481 및 저자 수정

▣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혜택이 2024년 3월 31일까지 설립되는 신규

- ▶ 협동조합으로 확대되며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1년 연장됨
- ▶ 협동조합의 경우 15%의 법인세 혜택이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조를 시작하는 신규 협동조합으로 확대됨
- ▶ 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일은 1년 연장됨
- ▾ 간접세와 관련하여 휴대폰 생산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도입 및 연장되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상됨
 - ▶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투입물 수입 면제와 같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감면이 시행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연장됨
 - ▶ 실버 바 및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상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강화 및 황재세 조정

[조세동향 23-05호]

- ▾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는 2023년 8월 1일부터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 대한 전자송장(GST E-invoicing)의 발행 매출 기준을 5,000만루피³⁸⁷⁾ 이상으로 강화함을 발표함³⁸⁸⁾
- ▶ 현재 B2B 거래에 대한 전자송장 발행의무가 있는 기업의 매출 기준은 1억루피³⁸⁹⁾ 이상이며, 2020년 매출 50억루피³⁹⁰⁾ 이상의 기업에 전자송장 발급의무 기준을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해당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³⁹¹⁾

387)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1,500만원임

388) IBFD, "India Reduces Turnover Threshold for GST E-invoicing to INR 50 Million," 2023. 5.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2_in_1.html, 검색일자: 2023. 5. 15.

389)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억 3,000만원임

390)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5억원임

391) cleartax, "GST E-Invoicing API : Who can get APIs of e-Invoices, Pre-requisites and Best Practices," 2023. 4. 25., <https://cleartax.in/s/gst-e-invoicing-api?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3. 5. 15.

〈표 2-III-4〉 전자송장 발행의무 매출액 및 적용 일자 변천

	이전 회계연도 매출액	적용 일자
1	50억루피 이상	2020년 10월 1일
2	10억~50억루피	2021년 1월 1일
3	5억루피 이상	2021년 4월 1일
4	2억루피 이상	2022년 4월 1일
5	1억루피 이상	2022년 10월 1일

자료: cleartax, "GST E-Invoicing API : Who can get APIs of e-Invoices, Pre-requisites and Best Practices," 2023. 4. 25., <https://cleartax.in/s/gst-e-invoicing-api?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3. 5. 15.

- ▣ 인도는 석유(Petroleum)에 대한 횡재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디젤에 부과하던 횡재세를 절반으로 인하함³⁹²⁾

 - ▶ 인도는 석유(Petroleum) 생산에 대한 횡재세를 톤당 3,500루피³⁹³⁾에서 무세(NIL)로 인하했으며, 디젤 생산에 대한 횡재세를 리터당 1루피³⁹⁴⁾에서 리터당 0.5루피³⁹⁵⁾로 인하함
- ▣ 인도는 2022년 6월 횡재세를 부과한 이후 국제 유가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였으며, 해당 석유연료 관련 횡재세 완화는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함

4 인도네시아

가. 「소득세법」 시행 개정 규정 발표

[조세동향 23-02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행 규정을 발표함³⁹⁶⁾

392) IBFD, "India Removes Windfall Tax on Petroleum, Halves for Diesel," 2023. 4.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9_in_1.html, 검색일자: 2023. 5. 15.

393)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 6,805원임

394)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23원임

395) 2023년 5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2원임

396) IBFD, "Indonesia Issues Implementing Regulation for Amendments to Income Tax Law," 2023. 1. 19.,

- ▶ 「소득세법」 시행 개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지침 및 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규칙, 공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칙을 포함함

 - ▶ 외국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 면제 소득, 소득공제, 감가상각 등과 관련한 과세 지침을 추가함
- ▶ 또한 해당 시행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 생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및 관련 종사자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등과 관련한 세금 인센티브를 종료함

나. 신수도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인도네시아의 미래 수도인 누산타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면허 부여, 사업 용이성, 기업 투자 시설에 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2023년 정부 규정 제12호(GR 12/2023)를 발표함³⁹⁷⁾

 - ▶ 해당 규정은 기업이 수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큰 확실성, 기회 및 참여를 제공하여 개발이 고르게 분배되고 인도네시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본 투자액이 100억루피아³⁹⁸⁾ 이상인 국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사업 부문 및 투자 시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상이함

 - ▶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경우 최대 30년, 경제 분야의 경우 최대 20년, 기타 사업 부문의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 누산타라 지역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35년까지 투자한 경우 최대 25년간, 2036년부터 2045년까지 투자한 경우 최대 20년간 금융 부문 활동에 대해 80~100%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함

 - ▶ 누산타라 및 파트너 지역의 건설, 개발 및 경제 활동 투자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9_id_1.html, 검색일자: 2023. 2. 15.
 397) IBFD, "Indonesia Announces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s in New Capital City," 2023. 3.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3_id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398)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6,073만 8,542원임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에서 은행, 보험 및 샤리아 금융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 납세자 및 영구 시설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함

- ▶ 금융 부문 자본시장, 파생금융 및 탄소 교환, 국제 상품 거래·교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소득, 기타 금융 서비스를 위해 누산타라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85%를 감면함
- ▶ 금융기관에 처음 자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비거주자가 받거나 벌어들인 누산타라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함

- ▣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누산타라에 설립하거나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비거주자 및 누산타라의 기업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얻은 소득을 통해 누산타라에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국내 납세자의 경우, 2045년까지 최대 10년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100%를, 이후 다음 10년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다. 전기자동차 판매 부가가치세 인하

[조세동향 23-04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4륜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 및 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도입함³⁹⁹⁾
- ▣ 해당 인센티브는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배터리 기반 전기 모터 자동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배터리 구동 전기 모터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통해 현지에서 제조한 부품이 40% 이상인 4륜 배터리 구동 전기 모터 자동차 및 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1%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10%는 정부에서 부담함
- ▣ 현지에서 제조한 부품이 20~40%인 배터리 구동 전기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6%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나머지 5%의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부담함
- ▣ 해당 인센티브와 관련된 2023년 재무부 규정 제38호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399) IBFD, "Indonesia Reduces VAT on Sale of Electric Vehicles," 2023. 4.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4_id_1.html, 검색일자: 2023. 4. 12.

5 홍콩

가. 홍콩 입법회는 가족 소유 투자 지주회사(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s)의 이윤세 면제 법안 통과를 발표함

[조세동향 23-06호]

- ▾ 홍콩 정부는 가족 소유 투자 지주회사(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s)의 이윤세 면제 법안을 발표함⁴⁰⁰⁾
 - ▶ 2023년 5월 10일 홍콩 입법회는 홍콩 내 단일 가족 사무소(Single Family Offices)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족 소유 투자 지주회사(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s)의 이윤세 면제 특혜 법안 통과를 발표함
 - ▶ 세금감면 혜택은 관련 자산이 최소 자산 기준인 2억 4천만홍콩달러⁴⁰¹⁾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법안은 2023년 5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6 호주

가. 거액 연금잔액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호주 총리는 2023년 2월 28일 300만호주달러⁴⁰²⁾ 이상의 연금잔액 보유자에 대해 세금 인상을 발표함⁴⁰³⁾
 - ▶ 최근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퇴직금 계좌 보유자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일부 감

400) IBFD, "Hong Kong Passes Tax Concessions for 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s," 2023. 5.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1_hk_1.html, 검색일자: 2023. 6. 16.

401) 2023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1억원임

402)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 610만원임

403) Hoke, William, "Australian PM Proposes Tax Hike On Large Superannuation Balances," *Tax Notes International*, 109(10), 2023.

면할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해 왔음

- 2023년 2월 22일 정부 관계자들이 연금 관련 중대한 개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였으나, 당시 총리는 퇴직연금에서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큰 변경도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

▶ 이 제안은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의 99.5%가 이와 관련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세금감면액의 39%가 소득 상위 10%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300만호주달러 이상의 연금잔액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 세율이 승인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과소자본 규정 관련 법안 업데이트

[조세동향 23-04호]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3월 16일, OECD의 모범 사례 지침에 따라 과소자본 규칙(thin capitalization rules)을 변경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404), 405)}

▶ 부채공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국내 과세표준에 대한 위험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10월 발표한 2022/23 예산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함

▶ 신규 과소자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자본에 대한 이자공제액을 제한하고 이자 비용의 평가 방식 및 허용 범위 등을 변경함

▶ 납세자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세이프 하버 조항의 이자공제를 EBITDA(이자·과세·상각 전 수입)의 30%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세이프 하버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이 영구적으로 소멸되나, 변경된 규정하에서는 최대 15년간 이월이 허용됨

▶ 공제 비용을 기존 주주 및 채권의 자금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gearing test)⁴⁰⁶⁾에서

404) Australian Government - The Treasury, "Multinational Tax Integrity - strengthening Australia's interest limitation (thin capitalisation) rules,"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3-370776>, 검색일자: 2023. 4. 18.

405) IBFD, "Australia - Australia Releases Draft Legislation to Update Thin Capitalization Rules," 2023. 3.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3-21_au_2, 검색일자: 2023. 4. 18.

406) 회사 자본을 주주 및 채권 자금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자료: Investopia, "Gearing Ratios: Definition,

전체 수익 대비 이자 비용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체함

- ▶ 또한 관련 기업 및 당사자의 부채에 대한 이자공제까지 허용하던 기존과 달리, 변경안에서는 호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된 제3자의 정상 가격 부채에 대한 이자공제만을 허용함
- ▶ 기존과 달리 국외 비포트폴리오 투자의 면제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공제 대상의 정의 및 이와 관련한 요구 조건 등에도 변경 사항이 존재함

- ▶ 공인예금수취기관(ADI)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 과소자본 규칙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부채액이 정상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 부채공제의 정의를 확장하여 경제적으로 이자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금액들을 포함 시킴

다. 무형자산 지급액 비공제 관련 공개초안 발표

[조세동향 23-04호]

-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3월,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저세율 국가의 무형자산 관련 지급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의 공개초안을 발표함⁴⁰⁷⁾
 - ▶ 법인세 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관련 지급액이 그 대상이 되며, 2023년 7월부터 발효됨
 - ▶ 이와 같은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필수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호주 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 및 과세 기반을 보장하고자 함
- ▣ 다만, 추후 OECD의 필라2 조치가 발효된다면 이 무형자산 비공제 조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중복 과세의 성격을 지닐 수 있음⁴⁰⁸⁾

Types of Ratios, and How To Calculat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g/gearingratio.asp>, 검색일자: 2023. 4. 18.)

407) Australian Government - The Treasury, “Multinational tax integrity - denying deductions for payments relating to intangible assets connected with low corporate tax jurisdictions,” <https://treasury.gov.au/c/consultation/c2023-382169>, 검색일자: 2023. 4. 18.

- ▶ 법안 내 OECD 필라2 조치에 근거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될 때 이 조치가 해제된다는 언급이 없어 중복 과세 가능성이 존재함
- ▶ 글로벌 최저한세 15%는 EU 전역과 영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2024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는 아직 이와 관련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음

▾ 이 공개초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라. 2023/2024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5월 9일 2023/2024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⁴⁰⁹⁾ ⁴¹⁰⁾
 - ▶ 이번 예산에서는 OECD 필라2와 관련한 주요 내용의 이행과 함께 석유 자원에 대한 임대세 변경과 중소기업 대상의 공제혜택, 개인을 위한 메디케어 구제 및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제안함
-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함께 일반 회피방지 규칙(General Anti Abuse Rule: GAAR)을 확대하고, 일부 공제혜택을 추가함
 - ▶ 연간 글로벌 수익이 7억 5,000만유로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OECD 필라2의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함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s),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한 이윤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rofit Rules) 이 함께 적용됨
 - OECD의 국내 최저한세(QDMTT) 또한 2024년부터 적용됨

408) *Bloomberg Tax*, "Australia's Proposed Intangibles Tax At Odds With Global Rul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55R1DPC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YyY2gvc mVzdWx0cy85ZTRkZjIyNDE0YjYyNjNhMGFjMjRkNjA4ODc3MTA2NyJdXQ--969f1c2775a0648326c5718b62746ed17c7be80c&criteria_id=9e4df22414b6263a0ac24d6088771067, 검색일자: 2023. 4. 18.

409) 호주 연방정부, *Budget Paper No. 2: Budget Measures 2023-24*, 2023. 5. 9., <https://budget.gov.au/content/bp2/index.htm>, 검색일자: 2023. 5. 15.

410) IBFD, "Australia - Budget 2023/24: Australia to Implement Pillar Two Minimum Tax, Provide Relief for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es," 2023. 5.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5-10_au_1, 검색일자: 2023. 5. 15.

- ▶ 일반 회피방지 규칙(GAAR)을 확대하여 2024년 7월부터 적용함⁴¹¹⁾
 -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인하 조치의 주요 목적은 국외 소득세 절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호주 내국세에 세무상 혜택을 주는 제도에까지 일반 회피방지 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함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적용 대상 제도가 그 날짜 이전에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 중소기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호주달러 미만의 적격 자산에 대한 비용 전체를 즉시 공제할 수 있음
 - 이때 차량 전기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적격 자산 비용의 2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 ▶ 2023년 5월 9일 이후 건설이 시작되는 임대용 개발(Build-to-Rent) 프로젝트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를 연간 2.5%에서 4%로 확대함
 - 이에 더하여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 MIT)에 납입한 적격 금액에 대한 최종 원천징수세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함
- ▶ 2025년 7월 1일부터 청정건물 관리투자신탁 원천징수 감면 대상을 데이터 센터 및 창고까지 확대함
 - 아울러 기존 및 신규 청정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호주 녹색건물 심의회(Green Building Council Australia)의 별 6개 등급 또는 호주 건축환경평가시스템(National Australian Architecture Rating System)의 별 6개 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 이 밖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득연도부터 일반 보험사들이 AASB17보험계약⁴¹²⁾에 근거하여 감사받은 재무보고 정보를 세금 산정의 기초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할 예정임
- ▶ 개인 과세와 관련하여 연금에 대한 세율과 저소득층 소득액 기준을 인상함
 - ▶ 2025년 7월 1일부터 300만호주달러 이상의 연금잔액 보유자들의 퇴직연금 잔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여, 기존의 우대 조치가 축소됨

411) 호주 연방정부, *Budget Paper No. 2: Budget Measures 2023-24*, 2023. 5. 9., p. 29., <https://budget.gov.au/content/bp2/index.htm>, 검색일자: 2023. 5. 31.

412)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이 정하는 보험계약의 인정, 계산, 설명 및 표시에 대한 원칙으로, 재무제표 사용자가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재무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유사한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함(APRA, "New accounting standard - AASB17 Insurance contracts," <https://www.apra.gov.au/new-accounting-standard-%E2%80%93-aasb-17-insurance-contracts>, 검색일자: 2023. 5. 22.)

- ▶ 저소득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에서 면제됨
- 아울러 저소득층의 소득액 기준은 <표 2-III-5>와 같이 인상되었으며,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자에게 혜택이 제공됨

<표 2-III-5> 호주 메디케어 저소득층 소득액 기준 변경 사항

구분		2022/2023	2023/2024
단독가구	일반	23,365 ²⁾	24,276 ³⁾
	노인	36,925 ⁴⁾	38,365 ⁵⁾
부부합산	일반	39,402 ⁶⁾	40,939 ⁷⁾
	노인 및 연금수령자	51,401 ⁸⁾	53,406 ⁹⁾
	부양자녀 ¹⁾	3,619 ¹⁰⁾	3,760 ¹¹⁾

- 주: 1) 아동 및 학생 부양 자녀 1인당 추가되는 금액임
 2)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6만 6천원임
 3)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84만 9천원임
 4)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71만 2천원임
 5)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94만 8,629.3임
 6)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83만 9천원임
 7)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15만 9천원임
 8)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14만 4천원임
 9)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86만 6천원임
 10)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0만 8천원임
 11) 2023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2만 9천원임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Paper No. 2: Budget Measures 2023-24*, p. 22., <https://budget.gov.au/content/bp2/index.htm>, 검색일자: 2023. 5. 31.

- ▣ 이밖에 석유 자원 임대세 및 소비세 등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존재함
 - ▶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석유 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의 공제 상한액을 해당 소득연도 내 각 사업의 이자와 관련하여 평가 가능한 수입의 90%로 제한함
 - 이때 상한선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비용은 정부 장기채권 금리를 적용하여 이월 가능함
 - ▶ 2025년 4월 1일부터 GST와 관련한 전기차에 대한 부가적인 세금면제 혜택 대상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함
 - ▶ 2023년 9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 및 관세는 일반 물가연동제에 더해 3년 동안 매년 5%p씩 추가로 인상됨

마. 급여신고제 면제 관련 법률 문서 시행

[조세동향 23-06호]

- ▶ 호주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급여신고제(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 면제와 관련한 법률 문서 "Taxation Administration (STP Reporting Exemption for Withholding Payer Number Holders) Instrument 2023"을 시행함⁴¹³⁾

 - ▶ 호주는 2019년 7월부터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에 급여신고제(STP) 시스템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⁴¹⁴⁾
 - 급여신고제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직원 급여 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을 간소화하는 제도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직원의 급여 지급 시 급여액과 종량세 방식의 원천징수 정보, 연금 정보가 자동으로 보고됨
 - ▶ 이번 조치를 통해 호주 사업자 번호(ABN) 없이, 종량세 방식의 원천징수 목적의 원천징수 납부번호(Withholding Payer Number)만이 등록된 법인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STP 보고의무에서 면제됨

7 싱가포르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3-03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5년 필라2 시행 계획을 발표함⁴¹⁵⁾

413)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Taxation Administration (Single Touch Payroll Reporting Exemption for Withholding Payer Number Holders) Instrument 2023,"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3L00778>, 검색일자: 2023. 6. 19.

414) Australian Taxation Office, "What STP is," <https://www.ato.gov.au/business/single-touch-payroll/what-is-stp->, 검색일자: 2023. 6. 22.

415) IBFD, "Budget 2023: Singapore Propose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from 2025, New Incentives for Innovation," 2023. 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4_sg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프로젝트의 Pillar Two Global Anti-Base Erosion(GloBE) 규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국적 그룹(MNE, large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적용할 예정임
- ▶ 연매출 7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의 국제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함
- ▣ EIS(Enterprise Innovation Scheme) 도입으로 싱가포르 정부 2023 예산안에 R&D,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출 공제가 확대됨⁴¹⁶⁾
 - ▶ 매출이 연 5억싱가포르달러⁴¹⁷⁾ 미만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는 R&D, 지식재산권(IP) 등록 및 라이선싱, 승인된 교육 과정 이행 등은 각 활동에 대한 적격 지출의 400%로 강화할 예정임(기존 비율 250%, 활동당 연 40만싱가포르달러⁴¹⁸⁾ 한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각 해에 발생하는 적격 지식재산권(IP) 등록 비용 중 첫 발생하는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내용임
 - 2024년 이전 공제는 기존 법령인 교육비의 100%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임⁴¹⁹⁾
 - ▶ 특정 싱가포르 교육기관과 함께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5만싱가포르달러⁴²⁰⁾ 한도 내에서 적격 지출의 400% 공제 가능함
 - ▶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익이 없는 기업의 경우, 총 적격 지출의 20%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⁴²¹⁾ 한도로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며 이는 비과세될 예정임
- ▣ 국제화를 위한 이중과세 공제(the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zation)가 강화됨⁴²²⁾

416)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417)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880억 6,000만원임

418)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억 9,096만원임

41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Enterprise Innovation Scheme(EIS)," 2023. 2. 14., [https://www.iras.gov.sg/schemes/disbursement-schemes/enterprise-innovation-scheme-\(eis\)#5-innovation-projects-carried-out-with-polytechnics--the-ite-or-other-qualified-partners](https://www.iras.gov.sg/schemes/disbursement-schemes/enterprise-innovation-scheme-(eis)#5-innovation-projects-carried-out-with-polytechnics--the-ite-or-other-qualified-partners), 검색일자: 2023. 3. 28.

420) 2023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886만 500원임

421)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954만 3,400원임

422) IIBFD, "Budget 2023: Singapore Propose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from 2025, New Incentives for Innovation,"

- ▶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DTDi(the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캠페인 시작 비용 공제를 도입할 예정임
 - 위 사항은 2023년 2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캠페인 시작 비용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은 국가별로 최대 1년 동안만 승인될 예정임

▣ 담배소비세, 자동차 한계 추가등록비, 부동산 인지세 등 간접세를 인상함

- ▶ 2023년 2월 14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⁴²³⁾
 - 세율 인상으로 매년 1억싱가포르달러⁴²⁴⁾의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 중이라 발표함
- ▶ 고급 자동차에 대한 한계 추가등록비(Additional Registration Fee)를 인상함⁴²⁵⁾
 - 새로운 추가등록비 구조는 2023년 2월부터 두 번째 자격증 입찰 행사(Certificates of Entitlement)에서 획득하여 등록된 모든 신규 및 수입 중고차 및 화물 견용 차량에 적용될 예정임
 - COE(Certificates of Entitlement)에 입찰할 필요가 없는 택시, 클래식 자동차 등의 경우 2023년 2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부터 개정된 세율구간이 적용될 예정임
- ▶ 고가 주거 및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Buyer's Stamp Duty)를 인상함⁴²⁶⁾
 - 개정된 세율은 202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될 예정임

2023. 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4_sg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423)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Booklet,"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resources/budget-booklet>, 검색일자: 2023. 3. 17.

424)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977억 1,700만원임

425)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426)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표 2-III-6〉 싱가포르 자동차 한계 추가등록비 최고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단위: 싱가포르달러⁴²⁷⁾)

기존		개정	
공개시장가치 (Open Market Value)	한계 추가 등록비 (Additional Registration Fee)	공개시장가치 (Open Market Value)	한계 추가등록비 (Additional Registration Fee)
2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00%	2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00%
20,000 초과~ 5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40%	20,000 초과~ 4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40%
50,000 초과~ 8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80%	40,000 초과~ 6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190%
80,000 초과	공개시장가치의 220%	60,000 초과~ 80,000 이하	공개시장가치의 250%
		80,000 초과	공개시장가치의 320%

자료: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표 2-III-7〉 싱가포르 고가 주거 및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 세율 최고 구간 신설

(단위: 싱가포르달러⁴²⁸⁾)

구분	부동산 구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중 높은 금액	구매자 인지세 세율(Buyer's Stamp Duty)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존	180,000 이하	1%	1%
	180,000 초과~360,000 이하	2%	2%
	360,000 초과~1,000,000 이하	3%	3%
	1,000,000 초과~1,500,000 이하	4%	4%
신설	1,500,000 초과~3,000,000 이하	5%	5%
	3,000,000 초과	6%	

자료: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인상 발표

[조세동향 23-05호]

▣ 싱가포르 정부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인상할 것을 발표함⁴²⁹⁾

427) 2023년 3월 28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977.14원임

428) 2023년 3월 28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977.14원임

429)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site, "Measures For A Sustainable Property Market," 2023. 4. 26.,

- ▶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소유주의 거주 목적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자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세율을 인상할 것을 발표함
- ▶ 2021년 12월과 2022년 9월 부동산 시장 대책 시행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보았으나 2023년 1분기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싱가포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소득 대비 물가상승의 지속 위험 조짐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세율 인상임

〈표 2-III-8〉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구매자 인지세 세율 인상

구 분		기존	개정
싱가포르 시민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0%	0%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17%	20%
	세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25%	30%
싱가포르 영주권자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5%	5%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25%	30%
	세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30%	35%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30%	60%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법인		35%	65%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주택개발자		35%	35%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탁자		35%	65%

자료: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site, "Measures For A Sustainable Property Market," 2023. 4. 26.,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ress-releases/measures-for-a-sustainable-property-market>, 검색일자: 2023. 5. 10.

8 뉴질랜드

가. 유류세 인하 3월 말까지 연장 후 종료 예정

[조세동향 23-01호]

- ▶ 2022년 12월 19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ress-releases/measures-for-a-sustainable-property-market>, 검색일자: 2023. 5. 10.

인하 조치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⁴³⁰⁾

- ▶ 뉴질랜드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1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였음
- ▶ 다만 3월 한 달 동안의 인하율은 리터당 25센트⁴³¹⁾에서 리터당 12.5센트⁴³²⁾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임
- ▶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3년 3월 31일 종료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는 인하 전으로 돌아갈 예정임

▣ 지난 2022년 뉴질랜드 정부는 여러 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음⁴³³⁾

- ▶ 2022년 3월 14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6월 15일까지 유류세를 리터당 25센트 감면하는 조치를 처음 시행하였음
- ▶ 이어 2022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2년 8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2022년 7월에는 이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여전히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으므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였으나,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힘⁴³⁴⁾

- ▶ 또한 4월 1일부터 대부분의 복지수당(가족, 학생, 노인)이 인상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였음

▣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1월 말까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13억달러⁴³⁵⁾를 지출하게 되며, 이번 연장으로 추가 1억 1,600만달러⁴³⁶⁾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430) IBFD, "New Zealand - Government Ends Transport Tax Relief Measures," 2022. 1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nz_2.html, 검색일자: 2023. 1. 17.

431)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8원임

432)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원임

4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2-07호」, 2022, p. 15.

434) 뉴질랜드 정부, "Govt extending cost of living support," 2022. 12. 14., <https://www.beehive.govt.nz/release/govt-extending-cost-living-support>, 검색일자: 2023. 1. 17.

435)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298억원임

436)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9억원임

나. 2022-23 조세법안 변경 사항 의회 제출

[조세동향 23-01호]

- ▶ 뉴질랜드 재정지출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 변경 사항이 다수 반영된 2022-23 조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⁴³⁷⁾

 - ▶ 2022-23 조세법안은 2022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번 변경 법안에 반영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디지털 플랫폼 관련 OECD가 제안한 모델 규칙의 이행에 대한 일부 규칙의 구현을 연기하거나 세부 사항을 추가함

 - ▶ OECD 모델 규칙 중 파트2 디지털 플랫폼의 보고 규칙(국제 거래 이행체계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선택적 모듈)은 법안 제정 3년 후 의회 명령에 의해 발효될 예정임
 - 해당 규칙은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 관련 보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법안 제정 후 발효 전까지 플랫폼 운영자와 협력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임
 - ▶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4분기 판매자 정보 보고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7일로 연장함
 - ▶ 외화 금액 추정 및 변환과 관련한 준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OECD가 규정하는 대상 판매자 제외 한도액인 2,000유로를 뉴질랜드달러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요건 불충분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국경 이동 근로자(cross-border employee)와 관련한 과세 규정이 일부 변경됨

 - ▶ 복리후생 관련 세금과 고용주 연금 기여금에 대해 뉴질랜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나,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로 제공함

437) IBFD, “New Zealand - Finance and Expenditure Committee Reports Back to Parliament on Tax Bill with Numerous Changes,” 2023. 3.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3-06_nz_1, 검색일자: 2023. 3. 20.

- 이때 고용주는 고용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세금 준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됨
 - ▶ 국경 이동 근로자의 국외 연금 기여금의 과세에 대해 고용주가 복리후생 과세 방식이나 원천징수에 따른 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복리후생 혜택을 직원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함
 - ▶ 기존의 비거주 계약자 세금(non-resident contractors' tax: NRCT)의 보고 요건 및 관련 개정안 조항을 제거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이 밖에도 국경 이동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납세의무 준수를 위해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됨
- ▣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GST 과세와 관련하여서도 변경 및 추가된 조항들이 존재함
- ▶ 온라인 마켓을 통해 12개월 동안 50만뉴질랜드달러⁴³⁸⁾ 이상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업체는 마켓 운영자의 신고의무와 관계없이 GST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숙박업체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마켓에서 연간 각 2,000박 이상의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숙박업체가 그룹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룹 수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GST 등록자가 과세 상품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세후 1만뉴질랜드달러⁴³⁹⁾ 이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관련 법률 초안 공개

[조세동향 23-06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5월 18일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추가하는 법률 초안을 공개함⁴⁴⁰⁾

438)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454만원임

439) 2023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6만원임

440) *Bloomberg Tax*, "New Zealand Global Minimum Tax Bill Draft Released," 2023. 5. 19.,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ew-zealand-global-minimum-tax-bill-draft-released>, 검색일자: 2023. 5. 23.

- ▶ 이 초안에 근거하여 OECD의 모델 규칙에 적용되는 모든 변경 사항을 따르고자 함
 - ▶ 모델 규칙을 법률 규정으로 모두 반영하는 작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 개정이 아닌 간단하고 업데이트 가능한 참조를 통해 규칙을 추가함
- ▾ 4년 중 2년간 연간 수입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됨
- ▶ 15%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s: IIR)과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rofit Rules: UTPR)을 포함함
 - ▶ 이 법안의 발효일은 정부가 충분한 국가들이 모델 규칙을 채택했다고 판단한 이후 정해질 예정임
 - 다만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1월 이전까지,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5년 1월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음

IV 국제기구

1 OECD

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행정지침 발표

[조세동향 23-02호]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3년 2월 2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 과제 -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모델규정(필라2) 행정지침’을 발표함⁴⁴¹⁾
 - ▶ 2022년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은 추후 이행 관할국이 합의된 행정지침에 따라 GloBE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포괄적 이행체계는 행정지침을 발표함
 - 지침의 내용은 추후 기존 주석서를 대체하여 발간될 ‘수정 주석서(Commentary)’에 포함될 예정이며, 포괄적 이행체계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 행정지침은 BEPS 프로젝트 필라2와 관련하여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GloBE 모델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함
 - GloBE 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화 기준 및 간주 연결 기준(deemed consolidation test)의 내용을 다루고, 국부펀드와 최종 모기업의 정의 규정, 제외 기업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함
 - GloBE 소득 산정 및 조세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되는 그룹 내 거래, 제외 자본 손익, 제외 배당, 피지배 외국법인(CFC)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룸
 - 보험투자기업에 대하여 과세분배 방식 선택 규정을 적용하고, 중간 모기업 및 부분 소유 모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보험투자기업을 제외함

441) OECD, “International tax reform: OECD releases technical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3. 2. 2.,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tax-reform-oecd-releases-technical-guidance-for-implementation-of-the-global-minimum-tax.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2-02-23&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2. 16.

- 경과 특례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자산 이전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장부가액 및 이연법인세 등을 다룸
-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과 관련하여 기존 주석서의 정의 규정을 범위, IIR과 UTPR의 적용, GloBE 소득·결손의 산정, 조정 대상 조세, 추가세액, 행정, 경과 규정 등을 다룬 전반적인 내용으로 대체함

나.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및 APA 지침 발간

[조세동향 23-01호]

- ▶ OECD는 2023년 2월 1일,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 지침’을 발간함⁴⁴²⁾
 - ▶ OECD 조세행정포럼은 조세 확실성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침을 발간하였으며,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및 조세행정포럼의 모든 회원국이 승인함
 - ▶ 지침은 법적·절차적 관점 모두를 다루며 과세관청 및 납세자에게 절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련의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국의 실무에 기초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함⁴⁴³⁾
 -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을 다루는 기초, 다자간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적 측면, 다자간 절차의 예시, 전형적인 다자간 절차의 이상적 기한의 주제를 다룸

다. 채굴 영역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의견수렴 문서 발표

[조세동향 23-06호]

- ▶ OECD는 2023년 5월 10일, 채굴·광물·금속 및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정부 간 포럼

442) OECD, “Manual on the Handling of 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nd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https://www.oecd.org/tax/dispute/manual-on-the-handling-of-multilateral-mutual-agreement-procedures-and-advance-pricing-arrangements-f0cad7f3-en.htm>, 검색일자: 2023. 3. 9.

443) EY, “OECD publishes Manual on Handling of 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nd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2023. 2. 23.,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publishes-manual-on-handling-of-multilateral-mutual-agreement-procedures-and-advance-pricing-arrangements, 검색일자: 2023. 3. 9.

(Intergovernmental Forum on Mining, Minerals, Met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GF)에서 채굴 관련 영역의 세원 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를 발표함⁴⁴⁴⁾

- ▶ OECD는 의견수렴을 위한 문서인 ‘광물 가격의 결정: 이전가격 프레임워크’에서 다국적기업이 채굴 활동을 진행하는 자원 국가를 위하여 방안을 제안함
- ▶ 광물 가격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적용의 이점과 경제적 관련 요소 등을 언급함
- ▣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사용 가능한 간소화된 방식 및 가격 결정 방법을 제안함
 - ▶ 광물 가격과 관련한 간소화된 행정적 접근과 세이프 하버를 제안함
 - 행정적 접근의 잠재적 방안으로 정부가 특정 광물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 권고 방법을 공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행 준수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등에 소모되는 행정 자원 등을 아낄 수 있음
 - 세이프 하버를 도입하여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부가 정한 이전가격 방법을 적용한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상세한 조사가 면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세무조사 자원이 부족하고 광물 자원이 많은 국가에게 유용할 것임
 - ▶ 나아가 선택 가능한 정책적 대안으로 ‘6번째 가격법(the 6th method)’ 또는 ‘행정 가격(administrative pricing)’을 제안함
 - 몇몇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광물 판매와 관련하여 6번째 가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가장 큰 이점은 다른 산정 방법에 비하여 더 적은 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임
 - 행정 가격이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원유 및 가스 영역에서 사용되고, 이 방법은 정부가 결정한 가격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산정 가격이 부정확하다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음

444) OECD, “Determining the Price of Minerals: A transfer pricing framework,” <https://www.oecd.org/tax/global/oecd-igf-public-consultation-document-determining-the-price-of-minerals-a-transfer-pricing-framework.pdf>, 검색일자: 2023. 6. 9.; IBFD, “OECD Seeks Public Comments on Two Transfer Pricing Toolkits on Mining,” 2023. 5.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0_o2_1.html, 검색일자: 2023. 6. 9.

라. 2023 조세협력 경과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3-06호]

- ▶ OECD는 2023년 5월 11일, G7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2023년도 「21세기의 조세 협력에 대한 경과보고서(2023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발표함⁴⁴⁵⁾

 - ▶ 보고서는 2022년도 경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의 이행 현황을 점검함
 - 디지털 경제의 두 개의 필라 해결책과 관련하여 필라1의 Amount A와 관련하여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국가들의 이행 상황을 살펴봄
 -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기술 기반 해결책 및 개인소득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사용 등을 다루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식별함
 - ▶ OECD는 G7 국가에 금융, 전문가, 정치적 대화를 포함한 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필라2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 현재의 두 개의 필라 접근 방식은 특히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으로 필라2 이행 지원은 긴급한 사항임
 - OECD는 개도국의 필라2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9개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GloBE 과세표준과 각 국가의 법인세 체계의 비교, 세제혜택의 분석,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이해 및 국가가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등을 지원할 예정임

445) OECD, "2023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 2023. 5., https://read.oecd-ilibrary.org/taxation/2023-progress-report-on-tax-co-operation-for-the-21st-century_d29d0872-en#page1, 검색일자: 2023. 6. 9.; EY, "G7 Finance Ministers welcome OECD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 and reiterate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of Pillars One and Two," https://www.ey.com/en_gl/tax-alerts/g7-finance-ministers-welcome-oecd-progress-report-on-tax-coopera, 검색일자: 2023. 6. 9.

2 EU

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잠정 합의

[조세동향 23-01호]

- ▾ EU는 2022년 12월 12일,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 함^{446), 447), 448)}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ETS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EEA 국가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임
 - ▶ CBAM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는 'Fit for 5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EU 탄소 배출 규제 기준과의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물리게 됨
- ▾ 이번 합의로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이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개시하여 본격 시행은 3~4년 후로 계획함

 - ▶ 2030년까지 모든 EU ETS 대상 산업에 적용을 목표로 함

446) European Council, "EU climate action: provisional agreement reached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022. 12.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3/eu-climate-action-provisional-agreement-reached-on-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 검색일자: 2023. 1. 16.

447) Tax Notes International, *EU Member States Reach Required Majority on CBAM Deal*, Volume 109, 2023, p. 93.

448) IBFD, "European Union - EU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Agreement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2. 12.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13_e2_2.html, 검색일자: 2023. 1. 16.

- ▶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가상자산 발행은 라이선스 취득자에 한해 허용함
-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함
 - 백서에는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 및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을 명시해야 함
- ▶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됨
 -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함
 - 규제당국은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도 있음
-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EU 국가 내의 과세당국에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 또한 공유하기로 함

라. 가상화폐 자산정보 공개 위한 DAC8 지침 승인

[조세동향 23-06호]

- ▣ EU 재무장관 이사회(ECOFIN)는 2023년 5월 16일,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DAC8(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 지침을 승인함⁴⁵³⁾
- ▶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Xh7sHAC0dvZQGF6O3N4UcZQIj-QDj3QGqXFvNQKuK5H5sEcvh1wDYqjDXzaD1fwX8V-4g4BjqZa49L9eVfFnZeFn7Z8ZMJQ1YnzQ6DWao03hVeNsSW8_OK9utfUNg58sqM5ebLSCy7aJxlH472eAu1btSMsmWVdBf fQCM4xRWIgr80644ulYs86jlhjrklzXaWFnwItA_1MnrwrrP8ne9VQdn-HrcPlJFnOZjhh0W1Dc6LF3p7Bejm aD2hDwY5zzvTMWu92JZXhK6KYbAkCMthYTBrttNsLKVMANmMm-9mVUPfybVnJDpMAQijpNAJzNCaV W2VBPnpFg-dL4h_ssGSDkJ-RHeASku_vuLRY6XBEN1ZIHd-plHXDbV2J6-D8dULPx5yTPmWoCRB1o2 Zcuh2hzWTsaZ_er83zsaABQDWP-aX7QEcn63SeNHA3ncCkOEu, 검색일자: 2023. 5. 18.

452) IBFD, “European Union - Cryptoassets in the Spotlight: Council Agrees on DAC8, Adopts MiCA, Makes Transfers Traceable,” 2023. 5.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6_e2_1.html, 검색일자: 2023. 5. 23.

453) IBFD, “European Union - Cryptoassets in the Spotlight: Council Agrees on DAC8, Adopts MiCA, Makes Transfers Traceable,” 2023. 5.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5-16_e2_1.html, 검색일자: 2023. 6. 14.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임

- ▶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율 법안인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 시행을 확정할 바 있으며⁴⁵⁴⁾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미카」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함
- ▶ DAC8은 2026년 발효될 예정임

4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5호」, 2023, p. 25.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1호

2023년 7월 28일 인쇄
2023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범신사

ISBN 979-11-6655-218-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